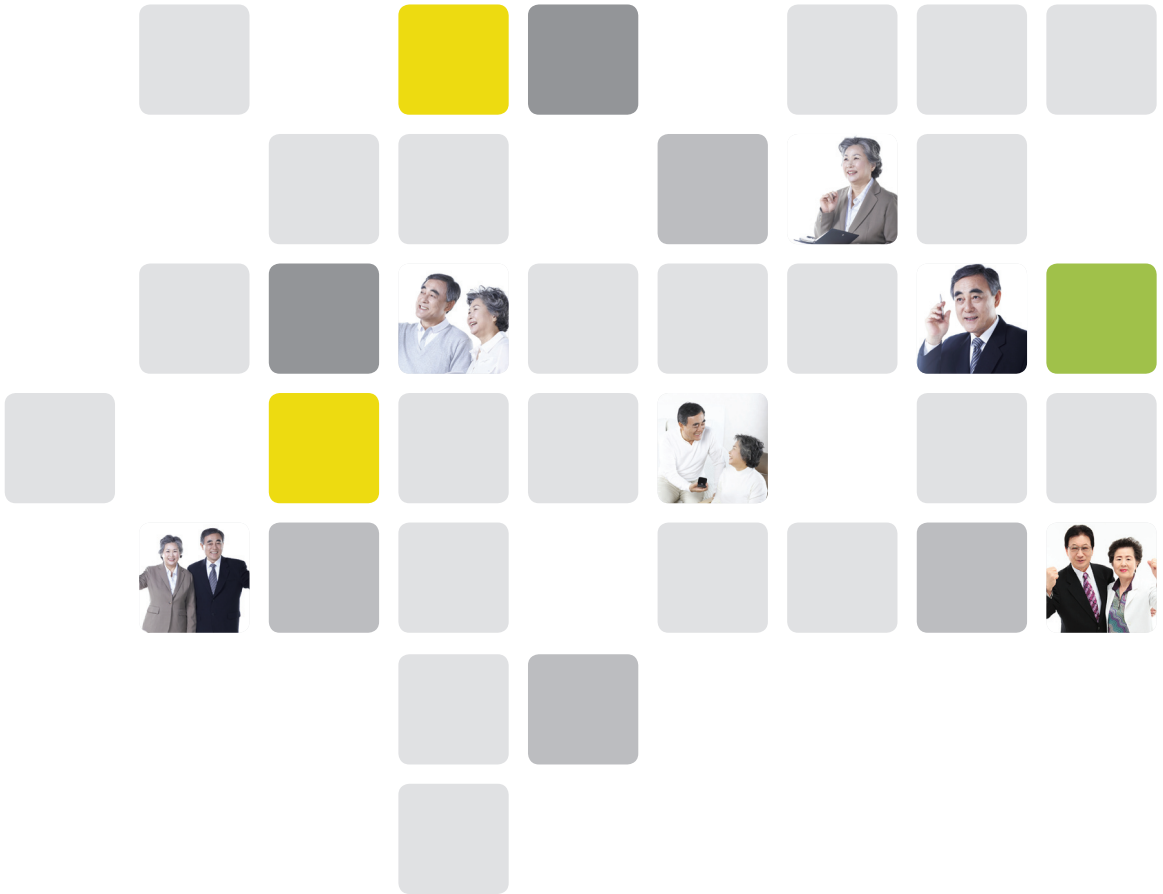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42-01

노인 인권 논문집

국가인권위원회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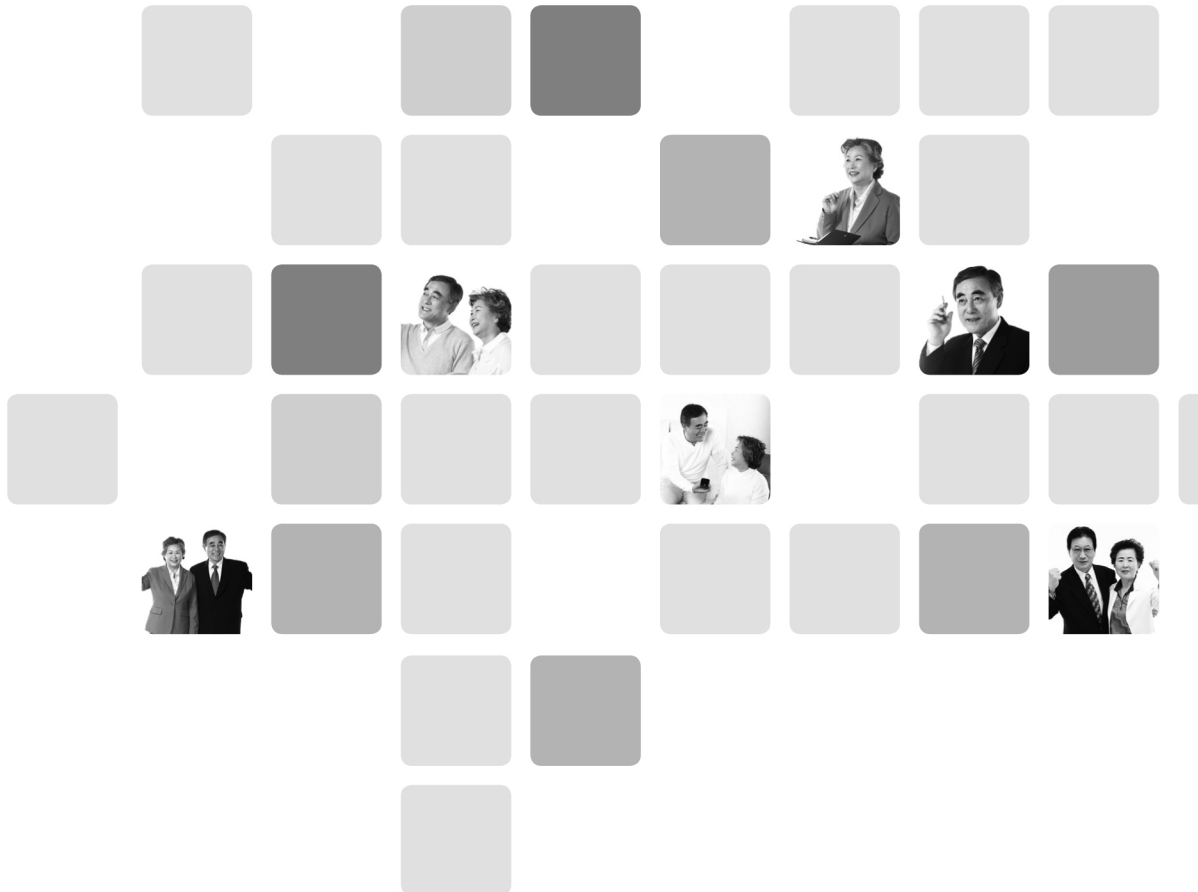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42-01



노인 인권 논문집

국가인권위원회 편



노인 인권 논문집

국가인권위원회 편

목 차

사회 고령화와 노인 인권 / 최재천

저출산의 늪	7
노동인구의 감소와 연금제도	11
수명 연장과 새로운 세대 개념	16
인생 이모작과 정년제도의 불합리함	21
노인 인권과 세대 갈등	26
골든 에이지를 위한 대학	30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노인 인권	35

노년 삶을 억압하는 한국 사회의 삶의 양식 / 박경숙

머리말	43
한국 사회에서 노년이 부정되는 주요 메카니즘들	55
소득, 노동, 돌봄, 사회참여 및 정체성에서 권리 보장의 실태와 권리인식	67
결 론	119

인권 관점에서 바라 본 노인학대와 사회적 책임 / 우국희

머리말	129
인권과 노인인권	132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38
노인학대 영역에서의 인권 관련 쟁점	147
노인인권 : 한 인간의 서사적 삶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라	157

노인인권(사회권)에 대한 다차원적 비교연구 / 백승호

서 론 163
인권에 대한 재해석 165
연구의 범위와 자료 168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인권 171
결 론 185

노인돌봄의 제도화와 노인 인권 : 자유주의적 권리의 형성과 한계 / 양난주

들어가며 191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변화 193
한국 노인복지에서 노인의 권리성 201
노인돌봄의 제도화와 노인 권리의 성격 변화 209
마치며 219

노인인권정책 수립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 : 정책가적 관점에서 / 신영전

노인인권과 노인인권정책 227
노인인권정책 수립과 관련한 질문들 231
소결 :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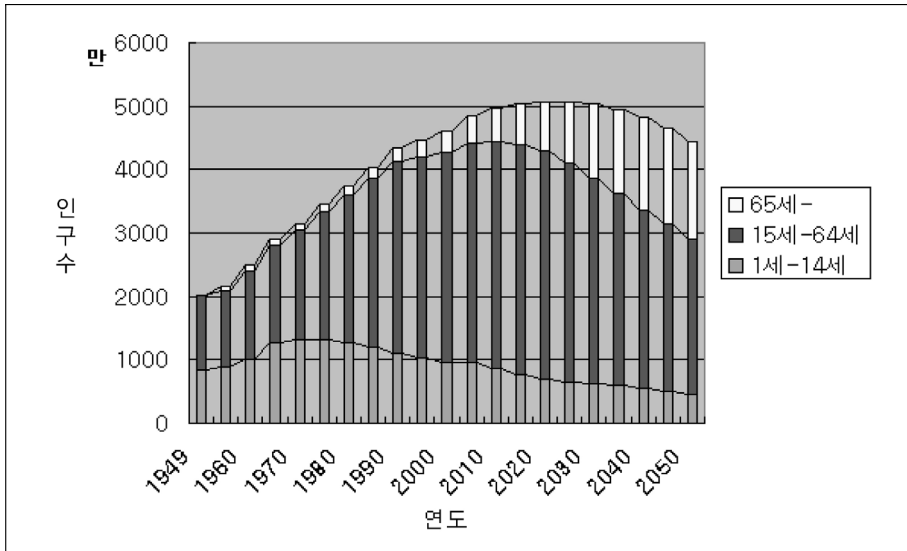
사회 고령화와 노인 인권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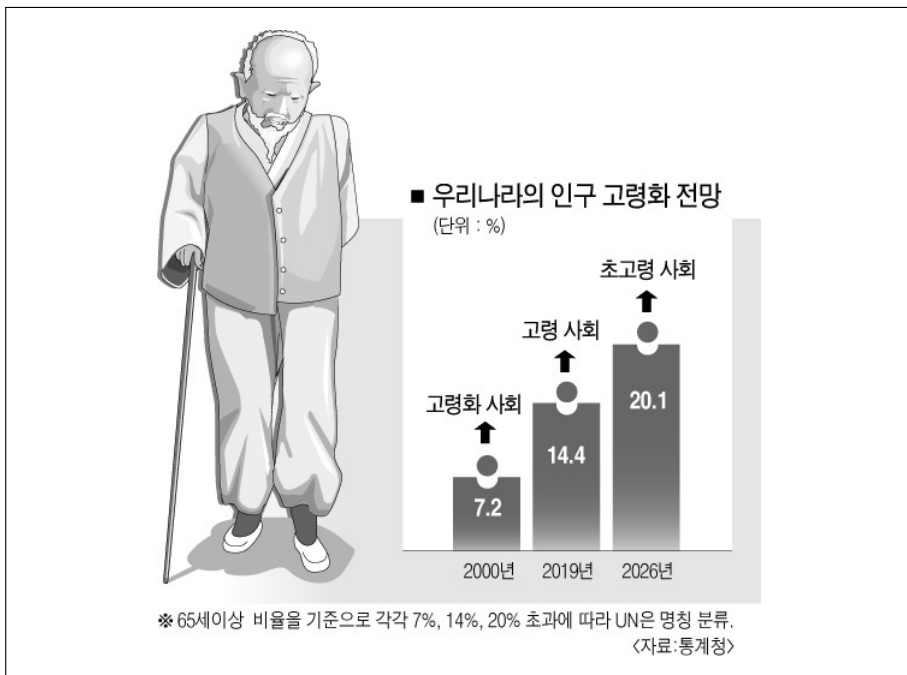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그의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Next Society)』(2002b)에서 미래사회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 할 수 없이 간단 명료하지만 그만큼 더 강력한 드러커의 경고에 나는 최근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2020년 초고령사회’라는 부제를 달아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최재천, 2005)라는 책을 출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능해 보았다. 이 글은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의 내용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그에 새로운 정보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를 출간한 2005년 당시 우리 통계청은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15세 미만 어린이들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림 1). 즉 2020년과 2026년에 각각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2).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출산율이 적어도 2004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내놓은 것이다. 2005년 출산율이 1.08로 홍콩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 중 최저를 기록했으며 그 후 그리 호전되는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걸 고려하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나는 2020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된다 해도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나의 겁 없는 추측대로 그 후 통계청은 그 시기를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인구 분포 변화 추이 (2005년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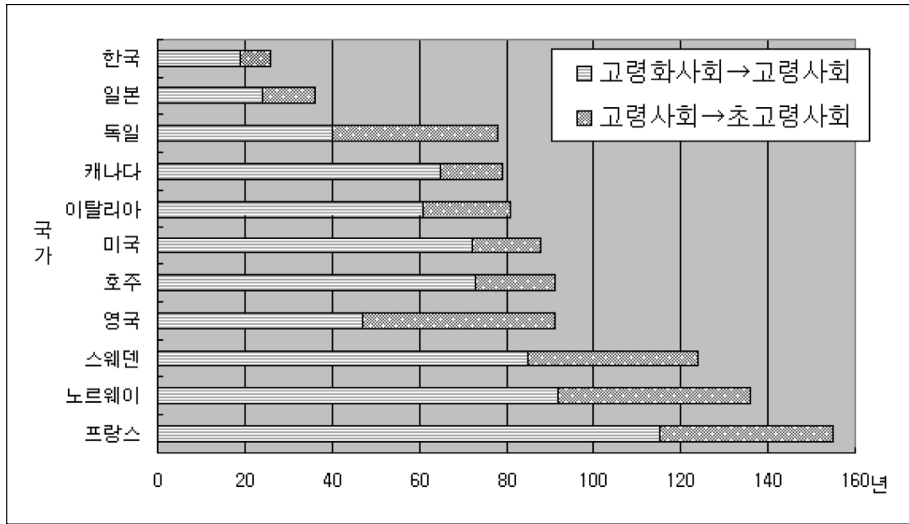


[출처: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최재천, 2005)]

<그림 2> 우리나라의 사회 고령화 전망 (2004년 예측)

그런가 하면 2010년 1월 17일 ‘성별, 사망원인별, 연령별로 조정한 인구 예측’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의학의 발달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4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를 출간하며 2020년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용감한 예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시계는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느낌의 미학이 강조되는 풍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빨리 빨리”의 조급함을 느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그림 3). 불과 십 수년 전만 해도 우리는 우리 일간지에서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읽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제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가장 양호한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를 벤치마킹 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프랑스의 고령화가 100여 년 이상 걸려 완만하게 벌어진 현상이라 프랑스 정부는 그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참으로 많은 정책을 시도해 보았다.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볼 때 그들 자신도 어느 정책이 성공해서 출산율이 상승하게 되었는지 찾아내기 어려워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시한 그 수많은 정책들이 어느 순간부터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상태가 호전된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프랑스가 수십 년에 걸쳐 시도한 그 많은 정책들을 우리는 단 몇 년 안에 압축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제 성장도 압축 성장을 이뤘으니 이제 고령화 정책도 압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최재천, 2005)]

<그림 3> 세계 각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2020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가? 여성의 평균수명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생 80시대를 맞았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수명은 78.5세로 세계 193개국 중 23위이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현재 75세이지만 2020년이 되면 거의 80에 육박할 것이고 여성들은 인생 90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바야흐로 인생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의 1명은 100세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다. 인생 100세 시대는 그 동안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오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원했던 일이 재앙이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모순이다.

사회 고령화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관점이 가장 많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부양자에 비해 피부양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가는 구도로는 국가의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연금제도의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안이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임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년제도를 없앨 것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내가 처음 그런 주장을 할 때만 해도 너무 앞선다는 비판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둘째,

사회 갈등의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남녀간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지만 최근 호주제 폐지 등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사회 고령화로 야기될 세대 갈등 또는 노소 갈등은 남녀 갈등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소모적인 분쟁에 이르기 전에 현명한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회 고령화를 드디어 인권의 관점에서 다룰 때가 되었다. 개인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사회가 제도적으로 원천봉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 엄연한 인권 유린이다. 다행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드디어 노인 인권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나는 인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찌감치 목청을 돋운 덕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사회 고령화야말로 통섭적(統攝的)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그 동안 함께 토론한 전문가들에게 참으로 많은 걸 배웠다. 우리들의 논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저출산의 늪

피터 드러커의 진단대로 사회 고령화를 불러오는 한 요인은 출산율 저하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웃지 못할 정책 코미디를 목격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무자비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여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킨 대표적인 나라이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을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무작정 깔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 “작은 섬나라 놈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일본은 그리 작은 나라가 아니다. 아열대에서 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많은 섬들로 이뤄진 이를 테면 ‘동양의 칠레’와 같은 나라이다. 일본은 또한 인구 대국이다. 그래서 평소 앞잡아보는 마음에 막연히 우리도 언젠가는 1억 이상의 인구를 갖게 되는 줄 알았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경 최대 인구 규모를 갖게 될 텐데 1억의 절반도 채 못 채워보고 그 때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 한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계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그저 넉넉잡고 350년만 기다리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을 것이고 태어나는 사람은 몇 안 되니 그들도 마저 죽고 나면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는 외로워요”로 돌변했다. 아직도 살아 계시는 최고령 할머니들은 젊었을 때 자식을 평균 여섯 명이나 낳던 세대이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의 여성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 그들의 손녀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된 것이다. 이른바 ‘냄비 현상’도 이쯤 되면 가히 엽기적인 수준이다. 가장 아이를 많이 낳던 세대와 가장 적게 낳는 세대가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이다.

저출산의 충격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친 느낌이다.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그런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3년 봄 2002년 출산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는 줄지에 저출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2001년에는 정상적이던 출산율이 1년 만에 심각한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에는 평균 6.0이었다가 1984년에 인구유지 출산율 즉 대체출산율인 2.1을 기록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드디어 2002년에는 1.17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후 2003년에는 1.19, 2004년에는 1.16, 그리고 드디어 2005년에는 1.08이라는 가공할 수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다음 2006년의 1.12를 거쳐 ‘황금돼지’의 신화 덕택에 2007년 1.25, 2008년 1.19로 약간 상승세를 타더니 2009년의 출산율은 잠정적으로 1.15를 기록하며 또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끝모를 추락이 언제 소수점을 찍을 것인지가 문제일 뿐이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저출산-고령화’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만일 우리 정부가 그 심각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세종시와 4대강 문제 때문에 접어두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9년은 다윈 탄생 200주년이자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중 『종의 기원』에 보면 수학에는 영 재능이 없었던 다윈이 그의 『종의 기원』에서 단 한 번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며” 풀어낸 계산문제가 하나 있다.

코끼리는 대개 30세가 되어야 번식을 시작하여 100세 정도에 멈추는데 암컷 한 마리가 평균 여섯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만일 코끼리 한 쌍이 750년 동안 번식을 한다면 거의 1천9백만 마리의 코끼리가 태어날 것이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생태학을 정량적인 학문으로 승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불세출의 천재 생태학자 로버트 맥아더(Robert MacArthur)는 훨씬 더 극적인 계산을 선보였다.

만일 2분마다 세포분열을 하는 박테리아가 있다고 가정하자. [일단 태어난 박테리아는 아무도 죽지 않으며 자원도 무한정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36시간이면 박테리아의 살이 지구의 표면을 한 자 가량 뒤덮을 것이다. 그 후 한 시간이면 우리 모두의 키를 넘길 것이고, 몇 천년 후면 어느 생물이라도 그 무게가 우주의 무게와 맞먹을 것이며 그 부피는 저 우주를 향해 빛의 속도로 팽창할 것이다.

내가 번역한 『벌들의 화두』(2008)이라는 책에는 곤충학자 하워드(L. O. Howard)가 1911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 『집파리-질병전파자들(The House Fly-Disease Carrier)』에서 소개한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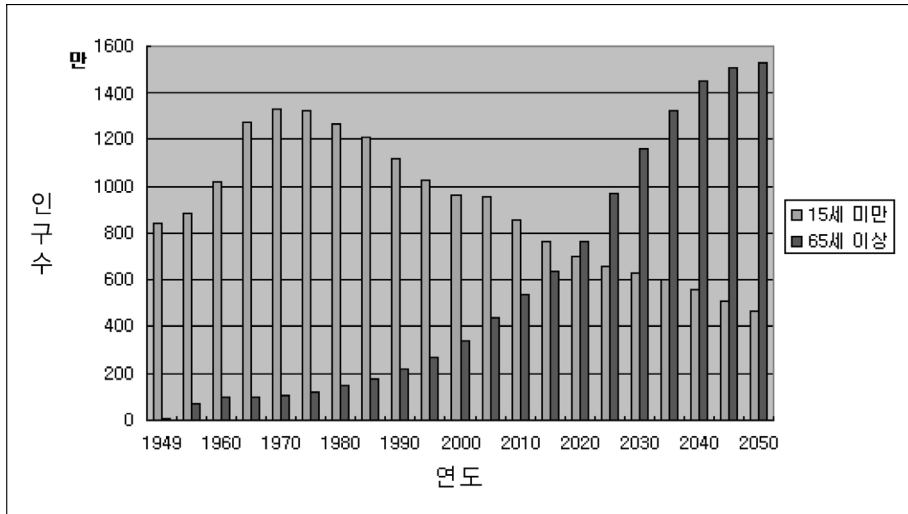
4월 15일에 번식을 시작한 워싱턴의 암컷 파리 한 마리가 9월 10일이면 5,598,720,000,000 마리의 성체 집단을 생성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물의 번식력은 실로 엄청나다. 모름지기 생물이란 이 세상에 번식을 하기 위해 태어나는 법이거늘 자연계에는 스스로 번식을 자제하는 기이한 생물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 서식하는 인간들이 가장 유별나다. 인구학자들은 한결같이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았다. 나는 출산율을 올리는 일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

기처럼 쉽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도 엄연히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생물은 번식의 여건만 마련되면 본능적으로 자식을 낳는다. 아무리 지능이 발달한 동물이라고 해도 나는 우리 인간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낳기만 하면 나라가 길러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낳지 못하게 규제를 한다 해도 숨어서라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지금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정신과 검진을 받거나 적어도 IQ 검사라도 받아야 할 지경이다.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경제 관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될 전략이다. 다행히 이런 계산을 너무 치밀하게 하지 않는 몇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주기 때문에 현재 출산율이 그나마 소수점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최근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해가 언제였냐고 묻는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2002년이라고 답한다. 일본과 함께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경기를 치렀던 2002년만큼 신명 나던 해도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축구팀이 세계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올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사회적 부가가치 면에서도 2002년 월드컵은 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건이었다. 그 때 우리가 IT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며 시내 대규모 전광판을 통해 전세계를 상대로 우리를 알린 구호가 있었다. 바로 ‘역동적인 대한민국(Dynamic Korea)’이었다. 그러나 2020년 무렵이면 거리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넘쳐날 텐데(그림 4), 그 때 아무리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외치려 한들 과연 그 역동성이 제대로 표현될지 의심스럽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죽어가는 대한민국(Dying Korea)’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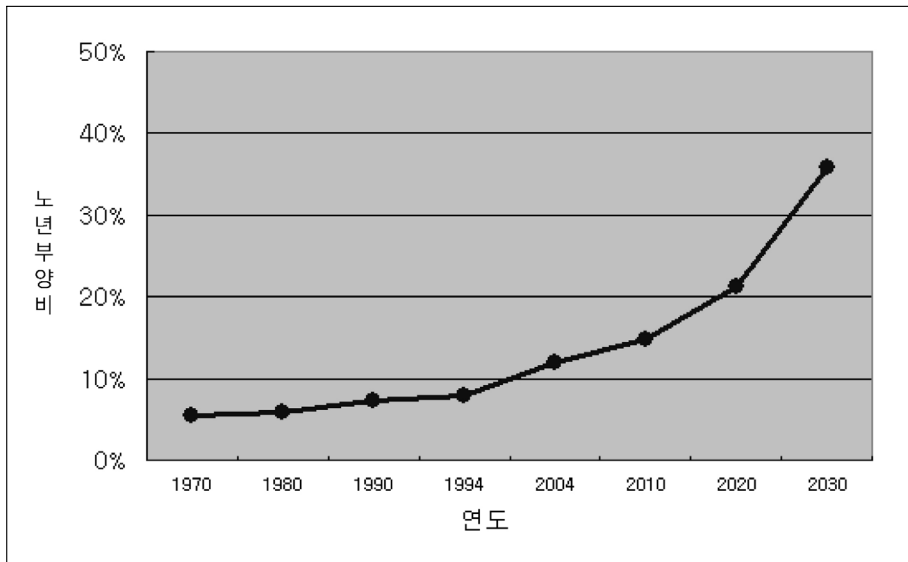
[출처: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최재천, 2005)]

<그림 4>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교

노동인구의 감소와 연금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가 문제의 핵심은 아닐 수 있다. 만일 그들을 먹여 살릴 노동인구가 충분히 늘기만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구조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2020년이 되어 드디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보다 커지게 되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는 11.4%였던 것이 2020년에는 23.1%, 2040년에는 55.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에는 거의 9명의 젊은이들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명 그리고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202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부담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산출하여 발표하는 노년부양비 즉 65세 이상 노인 1명당 15-64세 인구 비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2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35%를 넘어설 전망이다. 입은 느는데 손은 빠르게 줄어들

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 노년부양비가 12.6%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그 수가 8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년부양비도 거의 두 배인 21.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출처: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최재천, 2005)]

<그림 5> 노년부양비 추이 (2005년 예측)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최근 박유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15년에는 661만 명, 2020년에는 831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1,354만 명으로 정부 예측을 훨씬 웃돌 것이란다. 노동인구가 부양해야 할 규모가 기존의 예측보다 각각 23만 명, 61만 명, 173만 명이나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라서 연금제도와 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성 교수는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정부의 안이한 분석에서 찾고 있다. 현대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망 원인을 연령, 성별, 계절, 질병 등 요인에 따라 변화 추세를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의 분석은 이러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덜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부양지수(PSR)는 6.65로 노동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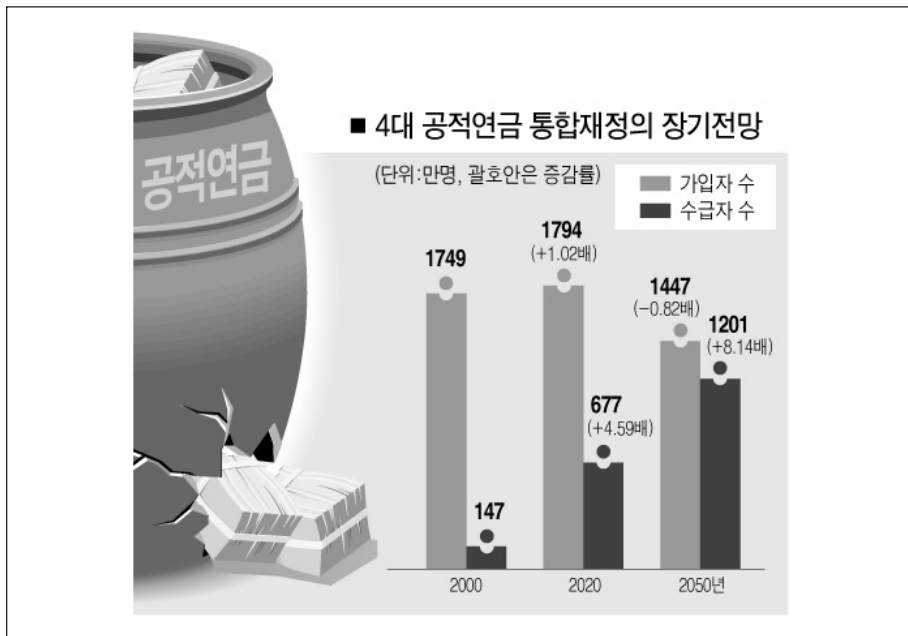
황이지만, 2015년에는 노동인구 5.67명, 2020년에는 4.61명, 그리고 2030년에는 2.6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박유성 교수는 만일 출산율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현재 수준에 머물게 될 경우 2030년에는 노동인구 2.3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예측과 박유성 교수의 예측간의 차이는 불과 0.3명 정도이지만 국가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 차이를 유발한다.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박유성 교수의 예측대로 1,354만 명 이상에 도달한다면 이들을 부양할 노동인구는 정부의 예측보다 약 400만 명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 한다.

2004년 봄에는 한 누리꾼이 올린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상담원의 ‘양심 고백’ 메아리를 타고 드디어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불리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다. 인구학자 폴 윌리스(Paul Wallace)는 그의 저서 『연진(Agequake, 1999)』에서 연금이란 원래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인류 역사상 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바로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였다. 비스마르크 스스로 회고한 대로 연금제도는 원래 국민에게 늙고 병들었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어 국민을 “다루기 쉽게” 만들려고 고안한 제도였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1883년 당시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70세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그의 정치적인 계산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언뜻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인간은 참으로 긍정적인 동물이다.

또한 비스마르크는 연금제도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디나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 제도라는 말이다. 나는 종종 주변의 연금 전문가들에게 연금제도가 과연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제도인가 묻는다. 아무도 내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들이 국민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모순이었던지도 모른다. 게다가 인구감소라는 돌발변수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게 틀림없어 보인다.

나는 연금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 자료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이미 지뢰의 뇌관을 밟은 상태인 듯 보인다(그림 6). 그저 밟을 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고령화 쇼크」의 저자 박동석은 2004년 12월 21일에 열린 과학독서아카데미 강연에서 이 상태를 2020년까지 끌고 간다면 공무원연금의 연간 적자규모는 무려 9.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이야말로 고령화의 불똥이 가장 직접적으로 튈 제도이다. 박동석 등은 「고령화 쇼크」에서 노인 1인 진료비가 일반인 1인 진료비의 3~4배인 것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총 의료비 지출이 2000년에 비해 4.8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금 빠끔빠끔 담뱃불이 그 불씨를 연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박유성 교수의 분석은 이보다 더 비관적이다. 머지않아 폐암 판정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 6> 우리나라 4대 공적 연금 통합재정의 장기 전망

우리와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비슷한 나라인 일본은 지금 세계 최고령 국가이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1970년대부터 대체출산율 미만으로 떨어진 출산율 감소이다. 고령화에 관한 한 일본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령 인구 비율이 8.7%인 시점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본도 고령화 비율이 9%를 넘는 1980년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대비에 들어갔다. 1980년 초 여러 정부 조직들이 각각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고령화를 대비한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곧 이어 수상 주재로 ‘장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비공식 ‘준각료회의(sub-cabinet)’를 구성하여 1986년에는 장기적인 정책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04년 10월 29일에 열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주최 국제학회에 참가하여 발표한 일본루터대학(Japan Lutheran College)의 다이사쿠 마에다(Daisaku Maeda) 교수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 빈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정책 개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일본도 너무 늦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2.1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착수했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84년부터 준비했어야 했다. 하기가 2010년 현재에도 이렇다 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데 더 말해 무엇 하라? 일본의 경우 1990년에 공표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발달을 위한 10년 골드 플랜’이 4년 후인 1994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다가 1999년 ‘골드 플랜 21’로 거듭나며 노인들을 위한 공공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4년의 ‘엔젤 플랜(Angel Plan)’과 1999년의 ‘새 엔젤 플랜(New Angel Plan)’은 출산율 증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1989년 당시 ‘골드 플랜’을 위해 10년 동안 약 6조 엔(약 6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나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거대 토목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규모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들이 편하게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고 훌륭한 의료시설이 노인들 가까이 있도록 도시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령사회를 위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토목기술은 개발하기만 하면 앞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사갈 효자 수출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평생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재교육하

는 교육 제도와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10년 전에 6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수명 연장과 새로운 세대 개념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를 집필하며 나는 생물학자들이 그 동안 자연에서 여러 다양한 생물들이 얼마나 오래 살며 언제까지 번식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가능한 한 전부 검토해 보았다. 자연계의 대부분의 생물에게는 번식기와 번식후기가 따로 없다. 대체로 번식을 멈추면 서둘러 삶을 마감한다. 침팬지 사회에 가끔 할머니들이 나타난다. 당신은 더 이상 새끼 낳는 걸 멈추고 딸의 자식 즉 손주를 돌본다. 고래가 번식을 멈추고도 잠시 더 삶을 영위하는 걸로 관찰되었다. 이 같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자연계를 통틀어 자식 낳기를 멈추고도 수십 년을 그야말로 음식만 축내며 사라지지 않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 인간은 참으로 신기한 진화를 하고 있다.

자연계의 대부분의 동물들에서 번식이 끝남과 동시에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조정되어 있는 데 비해 우리 인간은 왜 번식수명보다 평균수명이 이렇게 길게 진화한 것일까? 번식도 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언뜻 보아 전혀 적응적이지 않아 보인다. 우리 인간처럼 번식을 멈추고도 수십 년을 더 사는 동물은 자연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참으로 별난 동물이다. 생물이라면 모름지기 번식을 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이건만,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산아제한을 하고 있다. 35억년 생명의 역사에서 자기 스스로 출산율을 낮추는 생물은 일찍이 없었다. 현대생물학적 용어로 다시 설명하면, 생물은 무생물과 달리 자신의 DNA를 보다 많이 전파하기 위하여 DNA에 의해 만들어진 ‘생존기계’에 불과한데(도킨스, 2001) 인간은 이제 그 기본 ‘임무’마저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물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캐스퍼리(Rachel Caspari) 교수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이상희(Sang-Hee Lee) 교

수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 사회의 고령화는 적어도 3만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이들은 4종의 근대인류 화석들의 치아 마모의 정도를 분석하여 다른 영장류들에 비해 인류는 오래 전부터 확실하게 수명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이 분석한 4종의 인류 모두에서 이 같은 인구 고령화 현상은 고루 발견되었지만 특별히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크로마뇽인은 함께 살던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무려 다섯 배의 고령자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그와 함께 전체 인구의 규모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약 3만년 전 현생 인류는 다른 영장류나 인류에 비해 두드러지게 수명이 길어지며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번식을 멈추고 손자들을 돌보며 자손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른바 번식후세대가 급증한 시기는 또한 인간이 동굴 벽화를 그리고 장신구를 사용하며 장례 의식을 시작한 시기와 때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번식기가 지난 후에도 장수하게 된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인류의 문화 발달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에서 우리 인생을 자식을 낳아 기르는 ‘번식기(reproductive period)’와 자식을 떠나 보내고 사는 ‘번식후기(post-reproductive period)’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예전에 어르신들에게 환갑 잔치를 해드리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번식후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바야흐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즈음의 우리 삶은 번식후기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번식기에 거의 맞먹는 정도에 이르렀다. 노화생물학자 스티븐 어스태드(Steven Austad)는 그의 저서 『인간은 왜 늙는가』(2005)에서 조만간 인간의 수명이 150세로 늘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한 술 더 떠 2150년 전에 150년을 살게 되는 인간이 등장한다는 사뭇 구체적인 예언을 내놓았다. 그의 이 같은 대담한 예언은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다. 그는 노화생물학자들이 머지않아 노화의 비밀을 캐낼 것이고 그 비밀을 이용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멈출 약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최대수명은 120세 정도를 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선택에 의해 조율된 수명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진화생물학자들의 견해이며 나도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과학은 그 동안 불가

능할 것이라는 일들을 수없이 가능한 일로 바꿔놓았다.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약물만 복용하면 수명을 20년, 3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절대로 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인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몇 토막 즉 세대(generation 또는 age group)로 구분하여 보기를 즐겨 한다. 그러나 세대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루살이나 개구리 사회에서는 세대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일이 비교적 쉬워 보인다. 물 속에서 사는 유충이나 올챙이 시절과 물 밖에서 성체로 사는 시절이 너무도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연속적인 성장을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세대를 구분하려는 의도 자체가 애당초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곤충이나 양서류의 변태(metamorphosis)에 가장 근접하는 사춘기(puberty)를 제외하면 인간은 일생 동안 그리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유전학자 스티브 존스(Steve Jones)는 호르몬 분비에 따라 특히 남성의 일생을 일곱 시기로 나눈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수정과 태아 시기를 거쳐 제3기인 출생 시기를 맞고, 사춘기를 지나 제5기인 성년기를 살며, 여성이 완경을 하는 시기를 지나면 남녀는 서로 상대의 호르몬을 전보다 훨씬 많이 분비하게 되다 결국 생식이 완전히 멈춘 제7기에 이른다(Jones, 2003).

공자는 우리 삶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정의했다. 논어는 “40에 의혹이 사라지고(不惑), 50에 천명을 알게 되고(知天命), 60에는 귀가 순해지며(耳順), 70에는 멋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不踰矩)”고 적고 있다. 유태인들의 생활규범인 『탈무드』에도 남자의 일생을 20세 전만 5, 10, 13, 15, 18세 등으로 세분할 뿐 대체로 10년 단위로 나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같은 10년 구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10진법에 따른 구분일 뿐 별다른 생물학적 의미는 없어 보인다.

최근 들어 유럽인들은 인간의 삶을 대개 네 시기로 나눈다. 정치사학자 피터 래슬릿(Peter Laslett)은 인간의 삶을 의존에서 시작하여 성장과 성취의 시기를 거쳐 또다시 의존으로 돌아와 죽음을 맞는 네 시기로 나눈다. 그에 따르면, 제1시기는 의존(dependence), 사회화(socialization), 그리고 미성숙(immaturity)과 교육(education)의 시기이고, 제2시기는 독립(dependence), 성장(maturity)과 책임(responsibility)의 시기이며 돈을 벌고(earning) 저축하는(saving) 시기

이다. 그는 또 제3시기를 개인적인 성취(personal fulfillment)의 시기로 정의하고, 제4시기는 또다시 의존(final dependence), 그리고 노쇠(decrepitude)와 죽음(death)의 시기라고 설명한다 (Laslett, 1991).

그러나 최근 래슬릿과 마찬가지로 제3시기(the third age), 즉 마흔 이후 30년을 강조하는 책을 펴낸 사회학자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생을 넷으로 나눈다. 그에 따르면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제1연령기'는 배움을 통한 1차 성장의 시기이다. '제2연령기'는 제1연령기에서 이룩한 1차 성장을 바탕으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체 생활을 한다. 20대와 30대가 이 연령기에 해당한다. 40대에서 70대 중후반에 이르는 '제3연령기'는 고령화로 인하여 생겨난 우리 생애 중 가장 긴 시기이다. 새로운 성장 즉 2차 성장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노화'의 단계인 '제4연령기'를 거치며 우리는 생을 마감한다 (새들러, 2006).

흥미롭게도 이 같은 4단계 구분은 힌두교의 구분과 매우 흡사하다.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기본적으로 100년으로 보고 인생을 25년 단위(아슈라마)로 상당히 정확하게 4등분한다. 첫 아슈라마는 '학습기(브라흐마차르야)'로서 힌두교도들도 학생의 신분으로 삶을 시작한다. 그 다음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낳아 기르는 의무를 행하는 '가정생활기(그리하스타)'이며, 세 번째 아슈라마는 '은둔기(바나프라스타)'로서 사회생활을 마무리하고 절대금욕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순례기(산야사)'에 들어서면 살면서 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삶에 접어든다 (랄, 2005).

하지만 거듭 강조하건대 이 같은 세대 구분들은 대체로 상당히 주관적이거나 사회적인 기준에 의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 차원에서 볼 때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다분히 주관적인 나이(subjective age) 개념에 따른 구분들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번식기는 과연 언제까지인가? 출산에 관한 한 인간 여성은 매우 독특한 진화를 했다. 인간 여성은 아예 정해진 숫자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양쪽 난소에 약 200만 개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곤 사춘기를 거치며 이들 중 약 40만 개만 추리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이 40만 개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약 35년 동안 4주를 주기로 하여 일정한

수의 난모세포들을 발육시켜 그 중에서 대개 한 개의 난자만 배란토록 하여 임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의 모든 여성들은 50세 남짓하여 가지고 태어난 난모세포를 다 사용한다. 이를 우리는 흔히 ‘폐경(閉經)’이라고 부른다. 물론 ‘폐경’은 ‘달을 폐’를 쓰고 있지만 어감상 ‘폐할 폐(廢)’의 느낌이 들어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의미에서 ‘완경(完經)’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예전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길어졌으니 40만 개의 난모세포라도 좀 아껴 써서 오랫동안 배란을 해도 괜찮을 듯 싶건만 예나 지금이나 완경 시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만 유지하고 원만한 성생활을 즐기면 80대에도 정자를 생산할 수 있다. 2005년 유명한 라틴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아버지가 90세에 42세의 아내로 하여금 둘째 아이를 배게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런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2001년 타계한 ‘희랍인 조르바’의 배우 앤서니 퀸은 1996년 47살 연하의 부인에게서 13번째 자식인 늑동이 딸을 얻었다. 그의 나이 81세였다.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2003년 69세의 나이에 35세인 부인으로부터 딸을 낳았다. ‘토크쇼의 제왕’이라 불리는 CNN의 래리 킹도 67세였던 2002년에 23살 연하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 우리 주변에는 부인이 완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남성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일부의 남성들에게나 벌어질 뿐 대부분의 남성들은 부인의 완경과 함께 자식 낳기를 멈춘다. 따라서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경우 번식기는 여성의 생물학적 리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인간의 번식기, 즉 자식을 낳아 기르는 기간은 첫 50여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내가 제안하는 ‘두 인생 체제’의 번식기와 번식후기는 생물학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시기들이다. 자식이 집을 떠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거의 30년의 번식후기를 살고 있다. 이제 곧 인생 100세 시대를 맞으면 우리는 자식도 없이 사는 번식후기를 번식기 만큼이나 길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 중 대부분은 번식기보다 훨씬 더 긴 번식후기를 살게 될 것이다. 만일

어스태드가 예측하는 대로 노화를 방지해주는 약물이 개발되어 우리들 대부분이 정말 150세까지 살게 된다면, 정작 번식기는 50년을 살고 번식후기를 100년 동안 살아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인생 이모작과 정년제도의 불합리함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조기퇴직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38세면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는 ‘삼팔선’이나 4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는 ‘사오정’이라는 유행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로 나타났다. 56세가 되도록 퇴직을 하지 않으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도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62세가 되어도 퇴직을 하지 않으면 오적이라는 ‘육이오’는 그 의미가 무색하도록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나이는 68.1세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후 얻은 직업에서 버는 근로소득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업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계 선진국 모두가 한결같이 정년시기를 조정하려는 엄청난 일을 시도하고 있다. 정년 시기를 늦추려면 당장 청년실업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정부는 몇 년 전 오히려 교원 정년을 62세로 낮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근래 프랑스 정치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상 중의 한 사람이자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문 지성인이었던 미테랑도 고령화에 관한 한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1983년 실업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일본이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안이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펼 것이다. 실패학의 개념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나머지 1998년 프랑스 정부는 또 다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 세상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의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프랑스는 이미 2000년 현재 근로자 두 명이 퇴직자 한 명을 부양하고 있다. 2020년에는 근로자와 퇴직

자의 비율이 1대1이 되며 그로 인한 연금재정의 적자 규모가 5백억 유로(약 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뒤늦은 대처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던 프랑스는 드디어 2003년 7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노조와의 투쟁이 엄청났다. 나는 정년 시기를 조정하는 일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 OECD는 정년을 70세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李瀾)은 이미 당시의 연령과 벼슬 자리의 수 등을 고려하여 70세에 정년을 맞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평균수명이 40도 채 안 되던 시절의 얘기다. 피터 드러커(2002)는 미국 정부가 공적연금제도를 채택한 1936년 당시 연금수령연령으로 잡은 65세를 당시의 평균연령과 현재의 평균연령을 비교하여 계산한 79세로 정년 시기를 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는 2004년 12월 17일 여성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75세를 ‘노동정년’으로 조정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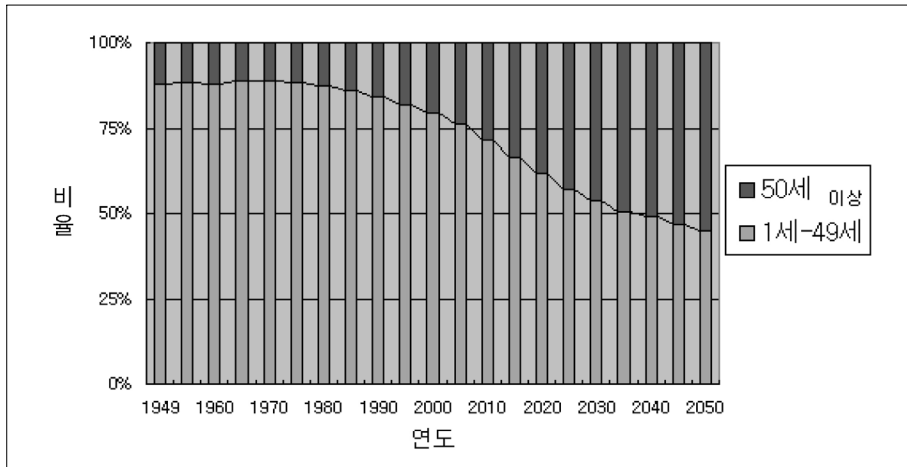
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앞으로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어렵사리 재조정할 정년 시기는 필연적으로 불합리한 시기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정년과 은퇴의 개념은 대단히 최근에 형성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긴 진화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인위적인 제도일 뿐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은퇴하지 않았다. 큰 밭을 내다 힘에 부치면 작은 텃밭을 매고, 나중에 그것도 힘들면 방 안에서 새끼를 꼬거나 길쌈을 매다 돌아가셨다. 은퇴와 정년은 근대 전문직업사회의 산물이다. 나는 아직도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도 있고, 건강도 받쳐주는데 사회가 날더러 모든 걸 포기하고 뒷방노인이 되라고 종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오래 전부터 정년제도는 개인 인권에 위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가 제안하는 두 인생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은퇴란 없다.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일해야 하며 그럴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의 시기를 조정할 게 아니라 아예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길게 보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나는 4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년을 없애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석좌교수라는 타이틀도 모자라 어떻게 관에 들어갈 때까지 월급을 받아먹으려고 하는가 하며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아 나는 실제로는 다른 모든 교수들처럼 65세에 퇴임하겠다는 이면계약서를 따로 만들자며 표면적으로나마 대한민국 최초의 정년이 없는 교수로 발표해 달라고 거듭 간청해 보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의 대학교수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년이 없다. 다만 적당한 시기에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학교와 합의하여 스스로 물러난다. 나는 그 당시 이미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내며 정년제도를 없애자고 목청을 높인 바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나를 정년 없는 교수로 만들어주었으면 했다.

나는 정년 시기를 재조정하느라 소모적인 투쟁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사오정’과 ‘오륙독’의 추세를 받아들이자고 제안하려 한다. 번식기로 규정되는 제1인생과 번식후기의 제2인생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살자는 제안이다. ‘두 인생 체제’에서는 제1인생의 직업을 제2인생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0세를 전후하여 제1인생의 직업에서 은퇴하고 다시 제2인생으로 뛰어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이미 오래 전부터 50세를 회원자격연령으로 설정해 놓고 50세 생일에 맞춰 협회가입신청서를 받는다. 사회구조 자체를 그에 맞도록 변화시켜 모두가 당당하게 은퇴하고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제1인생의 직업으로부터 은퇴하고 또 다시 제2인생을 위한 직업에 뛰어들자고 하는 것은 사실 은퇴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들 사전에 은퇴란 없는 걸로 하자는 얘기다.

인구학자들은 인구를 흔히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나는 전통적인 인구학적 분석 방법을 탈피하여 우리나라 인구를 50세를 전후하여 번식기와 번식후기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2004년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1949년부터 1980년경까지 우리나라는 50세 미만의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7배 수준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번식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며 50세 전후 인구의 비율이 변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 6.1대1, 1990년에 5.2 대 1, 2000년에 3.9 대 1을 거쳐 2005년 현재 3.2 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들어설 2020년 경에는

그 비율이 1.6 대 1로 다섯 명 중 두 명은 번식기를 넘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매일 출생아 1,500명 이상이 50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로 미루어보면 1936년과 1937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드디어 번식기 인구나 번식후기 인구가 같아지는 상당히 기형적인 사회가 된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생물이기를 포기한 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출처: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최재천, 2005)]

<그림 3> 우리나라 50세 전후의 인구 변화 추이

50세 이후의 제2인생을 엉겨주춤 첫 인생에 걸쳐 사는 삶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다. 조만간 인구의 절반이 살게 되는 제2인생이 더 이상 잉여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여생’이란 말보다는 ‘후반생(後半生)’이란 표현이 조금 낫기는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후반생이란 말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여전히 남은 인생이라는 여운이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후반생을 새로운 인생 즉 ‘제2인생’이라고 부른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제1인생을 ‘번식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제2인생은 ‘환원인생(還元人生)’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일 없이 놀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황혼의 여생이 아니라 천도교에서 말하는 대로 우주의 성령 속의 영

적 실재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의미 있는 환원 과정을 보내고 싶어 한다. 제1인생이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를 시기라면 제2인생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제1인생 세대를 ‘오름 세대’ 그리고 제2인생 세대를 ‘내림 세대’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구본형(2004)은 공자에게 ‘불혹의 나이’였던 40대가 2500년이 지난 오늘에는 ‘유혹의 나이’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나는 그가 말하는 유혹은 위험하고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서울대 사회학과 장경섭(2001) 교수는 노인 세대를 아예 ‘신세대(new generation)’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번식후기는 결코 부담만 주는 잉여시기가 아니었다. 노인들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축내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질병과 노쇠로 인한 의존도 때문일 것이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가끔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고려장도 드릴 밥 한 그릇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약한 그들을 돌볼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다. 머지않아 60대는 말할 나위도 없고 70대와 80대도 건강상태나 의욕에서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우리 국민 5,944명을 대상으로 국민체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12월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청소년들과 비슷한 체격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력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리꾼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2인생 세대를 ‘황금세대’ 또는 ‘골든 에이지(Golden age)’라고 부르기로 했다. 속절없이 자꾸만 희끗희끗해지는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실버세대’라는 호칭은 이미 매력을 잃은 지 오래이다. 제2인생을 골든 에이지라고 부른다면 제1인생은 젊음을 뜻하는 ‘그린 에이지(Green age)’라고 부르면 될 것이다.

노인 인권과 세대 갈등

『인권을 외치다』(2009)의 저자 류은숙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도록 ‘통제’ 당하는 인권의 문제들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는 은퇴라는 사건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경시대의 노인들은 지금처럼 극적으로 추락하지 않았다. 일찍이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공할 고령화의 격랑 속에 매일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인들이 태어나고 있건만 우리는 아직 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10월 2일은 우리 정부가 1997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노인의 날’이다. 이런 점에서 드디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나라로서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인 인권의 문제가 몇몇 은퇴하고 싶어하지 않는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 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그러기에는 이제 그런 개인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인권이란 본래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생명권, 고문 등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기 결정권, 이동의 자유,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와 정치 참여의 권리는 물론,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1967년 미국 정부가 입법 예고한 연령차별 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 다시 직장을 잡으려 할 때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3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할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자연과학 중에서도 특히 진화생물학을 전공하는 나에게는 너무도 명확한 자연의 논리가 있다. 우리는 모두 다윈의 자연선택 메커니즘에 의해 진화가 일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연선택이 생명 단위의 어느 수준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전자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다윈에게는 이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번식하고 죽는 개인 또는 개체(individual)가 자연선택의 단위라고 믿었다. 다윈 자신도 그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니와 후세의 생물학자들 역시 별 생각 없이 “종족 보존을 위하여” 즉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생물이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특별히 먹이가 부족한 해에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득을 추구하느라 자식을 무작정 많이 낳아 기르다 보면 집단 전체로 볼 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번식을 자제하는 능력을 지닌 ‘이타적인’ 집단이 진화한다는 식의 설명이 오랫동안 생물학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다. 이를 흔히 집단선택설(group selection)이라고 부른다.

북유럽에 서식하는 설치류 동물 나그네쥐(lemming)가 이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그네쥐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살을 한다고 믿었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생물이란면 모름지기 악착같이 살아남아 후손을 남겨야 하는 게 자연의 섭리인지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진화적으로 대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이다. 하지만 야외생물학자들은 이른 봄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강으로 나그네쥐들이 떼로 뛰어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하고 자살을 하는 유일한 동물인 나그네쥐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많은 가설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설명은 대체로 일부 나그네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먹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함께 몰살할 테니 그들 중 일부가 다른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의 생태학자 치티(Dennis Chitty) 교수의 치밀한 연구 결과 나그네쥐들은 사실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채 녹지 않아 미끄러운 들판에서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돌아다니다가 벼랑을 발견한 맨 앞의 나그네쥐가 급히 서려고 노력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나그네쥐들과 한데 뒤엉켜 강물로 한꺼번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생물학자들의 심성을 잘 표현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만화가 라슨(Gary Larson)

은 만화 한 것으로 이 모든 논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만화에는 한 무리의 송고한 나그네쥐들이 차가운 강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치 진혼곡이라도 울려 퍼질 듯한 분위기 속에 맨 뒤쪽의 나그네쥐 한 마리의 허리춤에 고무 튜브가 둘러져 있다. 도대체 왜 자기가 집단의 안녕을 위해, 다시 말하면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만일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고무 튜브를 착용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유전한다면 이듬 해 봄에는 서너 마리의 나그네쥐들이 튜브를 두르고 내려올 것이다.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린 나그네쥐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송고한 유전자는 후세에 전달될 길이 없는 반면 고무 튜브를 두르고 내려와 목숨을 부지하여 다시 물으로 기어오른 나그네쥐가 만일 번식에 성공했다면 그의 자손들이 더 많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집단 수준의 이타성은 개체 수준의 이기성을 이길 수 없다. 진화는 개체의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유전자의 수준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사회의 균형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때로 개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겠지만 인권의 개념이 원래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구태여 우열을 가려야 한다면 생물학자의 내 눈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국가나 사회의 질서와 안녕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임이 너무도 뚜렷이 보인다. 그게 훨씬 자연스럽게 즉 자연에 가까워 보인다. 자연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 사회에서도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그 반대는 훨씬 더 억지스러워 보일 뿐이다. 요사이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지금 살아 있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긴 세월을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노인 세대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노인 인권에 대한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궁극에는 어떤 형태로든 세대 갈등의 문제로 풀아터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어서 빨리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머지 않아 생판 알지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옛날 우리 사회에서 잠시 있었다는

풍문이 전해 내려오는 이른바 고려장 문화를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젊은이들이 고려장을 부르짖으면 여의도에서는 문을 닫아걸고 ‘소려장 법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점점 더 노인 세대의 투표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모든 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노인 세대의 투표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고령 유권자는 절대 수도도 조만간 젊은 유권자를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유권자 중 5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할 것이고 2020년에는 전체의 거의 절반인 46%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00만 표만 얻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에서 500만 명에 가까운 노인 유권자들의 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대한노인회의 주장은 대단한 설득력을 지닌다. 사회 고령화는 정치 보수화를 수반한다.

시민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시민 단체들이 있다. 노인 복지에 관련된 단체만 해도 1,000여 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1958년에 출범한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노인 관련 단체뿐 아니라 모든 시민 단체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만 50세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미국은퇴자협회는 거의 4,000만에 육박하는 회원을 갖고 있는 미국 최대의 비정부기구(NGO)로서 무려 150여 명의 전문 로비스트들을 미국 의회에 풀어 놓은 실로 막강한 단체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노인들의 복지를 돌보지 않는 정치인은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은퇴자협회를 벤치마킹하여 결성된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있다. 1996년 미국 뉴욕에서 비정부(NGO), 비정당(NPS), 비영리(NPO) 단체로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다가 2002년 1월 15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미 국제연합(UN)에 등록을 마쳤고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은 비록 그 힘이 미약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힘이 일취월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협회가 드디어 규모를 갖추게 되면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 단체가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의 권익만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

가 젊은 세대에게 가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조금은 불합리한 현상은 이미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대 갈등이 세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골든 에이지를 위한 대학

피터 드러커(2002a)는 미래 사회를 한 마디로 지식 사회라고 규정했다. 미래 사회는 더 이상 근육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폭 넓은 경험을 하며 온갖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온 구성원들을 모두 일터에서 몰아내는 일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인가는 깊게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는 문제이다. 골든 에이지를 위한 재원이 대부분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런 체제를 유지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새로운 방도를 찾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것이다. 물론 제2인생을 대비하여 제1인생 기간 중에 저축을 장려해야 하지만, 제2인생에서도 기본적으로 벌어써 쓰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드러커는 미래 지식사회에서는 크게 보아 60세 이하와 그 이상의 두 종류의 노동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는 50세를 기점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분히 생물학적인 예측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이 두 노동력은 수요와 행동방식,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에서 확연히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골든 에이지의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골든 에이지를 보다 창의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는다. 길은 찾으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은퇴자들 즉 제2인생의 재취업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004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거의 30%대를 유지했는데 2003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섰다. 2003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7%로 2002년의 30.7%에 비해

2.0%p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참가율은 23.0%에서 21.5%로 1.5%p 감소한 데 비해 남성은 42.7%에서 39.8%로 2.9%p 감소하여 여성에 비해 불황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을 연장하여 고령자들을 보다 많이 노동인구에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령 인구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일을 추진하는 데에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이 점에 대해 지난 2004년 4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경험이 힘이다(Experience Works)’라는 이름의 미국 중년을 위한 재취업 전문 비영리 단체의 우튼(Andrea J. Wooten) 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사회통합은 물론이고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은퇴자 대책에 대해 시혜 마인드가 아니라 투자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 은퇴자들도 자신의 재취업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구걸 심리가 아니라 떳떳이 자긍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우리 사회는 노동력이 부족해져 고령자들이라도 고용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의 주명룡 회장은 직장에서 더도 말고 10년만 굴욕이 되더라도 참고 버티면 된다는 이른바 ‘진드기 작전론’을 설교하고 다닌다. 연령에 따른 위아래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후배가 상사가 되면 흔한 표현으로 “옷을 벗는다.” 이 같은 우스꽝스러운 옷 벗는 문화는 법조계와 금융계에서 특별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인원 감축의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검사장이나 지점장을 낮은 기수로 임명하면 그 기수 이전의 검사들이나 고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나체족이 된다. 나는 이처럼 옷을 벗고 있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 벗고 싶느냐고 묻고 싶다. 부양해야 할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긴 여생을 생각할 때 주위의 눈만 없다면 나는 이들 중 진심으로 옷을 벗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확신한다.

우튼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은퇴자 단체는 1965년 설립되어 매년 12만 5천 여명에게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미국의 은퇴자들이 수동적인 입장에

서 능동적인 자세로, 그리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 ‘주는 자’의 위치로 변해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제2인생에서는 국가로부터 복지의 혜택을 받으려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노인을 더 이상 가족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당연히 국가가 돌봐야 한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노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밥상을 받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제2인생에서는 더 적게 먹고 몸도 더 많이 움직여야 건강에도 좋다.

몇 년 전 여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고령화-저출산’ 강의를 했을 때의 일이었다. 내가 강의가 끝난 다음 논평을 하시기로 하신 것 퇴임하신 한 여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중 나는 나도 모르게 크게 박수를 치고 말했다. 그 선생님은 퇴임하시자마자 동네 아파트촌 부녀회 볼링 동우회에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시며 노는 것도 퇴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퇴임한 교장 선생님이 동우회에 참여하시면 우선 대단히 반가워 하지만 볼링 실력이 수준 미달이면 이내 눈총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퇴임 거의 10년 전부터 꾸준히 볼링 실력을 쌓아 현재 동우회에서 중상위권 실력을 발휘하며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고 계신다고 하셨다.

골든 에이지 즉 내림인생을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확실한 소일거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마냥 길어지는 후반생을 버텨내기 어려워진다. 은퇴하면 집에서 손주들이나 돌보겠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그 긴 여생을 채울 수 없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기껏해야 10년 남짓이면 퇴임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에 퇴임하고 80년 이상을 사는 지금 30여 년의 내림인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다못해 손주를 보는 방법도 공부를 해서 할 일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골든 에이지를 위한 대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20년 남짓의 직업생활을 위해 그 끔찍

한 입시지옥을 뚫고 살아온 우리가 내림 인생 30년을 위해서 아무런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나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만 적어도 40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시 대학에 진학하여 내림인생을 위한 공부를 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이 끝난 다음 여러 형태의 공부모임 또는 학원에 다니고 있다. 내림인생을 준비하는 교육마저 사교육의 손아귀에 뺏길 수는 없다. 아이들과 부모 모두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계는 그야말로 거덜나고 말 것이다. 내림인생을 준비하는 교육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했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과학교육기술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대단히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2004년 65만 명에 달하던 대학 입학 정원을 2009년까지 55만 명으로 줄이고 대학의 수도 358개에서 271개로 무려 24.3%를 줄인다는 것이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8개의 국립대와 79개의 사립대가 통폐합 과정을 거쳐 사실상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들의 미충원율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과 심각한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이 방안은 지극히 당연한 조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대학들에게 문을 닫는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제안하는 두 인생 체제에서는 어쩌면 대학의 수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피터 드러커(2002)는 지식사회에서 교육이란 끝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우리의 미래가 진정 지식사회라면 지식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림인생을 위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다 재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무보수 사회봉사를 할 계획이라도 배워서 제대로 할 것을 권한다.

전반적인 인성 교육과 제1인생의 직업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이른바 정규교육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림인생을 준비하는 중년 학생들을 위한 대학으로 특성화

하는 것은 머지 않은 장래에 또는 지금 이미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지금 통폐합될 처지에 있는 국립대학 중 어느 대학이 솔선하여 내림인생을 위한 대학으로 탈바꿈하면 뒤따를 대학들이 많을 것이다. 우선 국민의 대다수를 지식기술자로 만들기 위한 정규교육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들의 근로생활 도중에 그들의 지식을 최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많은 지식기술자들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내림인생마저 사설학원에서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비록 의무교육은 아니더라도 이 같은 특성화를 꾀하는 대학에도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연령 제한이 있을 수는 없다.

제2인생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상당 부분을 사이버 공간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림인생이라고 해서 생산적인 직업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두뇌의 노쇠나 신체 기능의 감퇴를 무시한 채 나노과학이나 순발력을 요구하는 운동 종목에 재도전하는 중년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 중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 나는 법학, 신학은 물론, 문학이나 문화비평학 등 많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내림인생을 위한 대학도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당당한 대학이어야 한다. 나는 지금 대부분의 대학에 마련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이 앞으로 상당한 변신을 거듭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한 소일거리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내림인생을 위한 대학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교육부가 내놓은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들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96년부터 최소한의 법정 기준만 갖추면 설립을 허가해 준 까닭에 우리나라에 이처럼 기형적으로 대학이 많아진 것을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대학이 많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경영을 기본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들이 대부분이라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2004년 현재 81.3%)이 미국(63.3%)이나 일본(49.1%)에 비해 높은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교육만 시킬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실한 대학들은 이 기회에 당연히 통폐합되어야 하겠지만 제2인생 교육을 위하여 특성화하는 대학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대학가라고 한다. 대학에 얼마간의 기부금을 내거나 정기적으로 납입금을 내면서 젊음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비합리적인 목가적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은퇴하면 전원 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체력이 뒷받침해주고 남이 날 찾아와줄 때 전원 에 파묻힐 수 있는 것이 아무도 날 찾지 않고 기력이 쇠진할 때에는 전원생활은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가까운 도심 한복판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날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찾아 다닐 곳이 많은 문화중심지에서 살아야 한다. 대학은 이런 모든 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관이다. 나는 구체적으로 신촌이야말로 ‘골든 타운’의 가장 이상적인 입지라고 생각한다. 신촌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네 개의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늘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은퇴자들이 이들 대학들에 기부금을 내고 학교 교정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신촌의 거리를 젊은이들과 함께 활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윈-윈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노인 인권

미국 노인학협회 존 헨드릭스(John Hendrix) 회장은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가히 혁명적(almost revolutionary)”이라고 평가했다. 혁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가 풀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갈등 때문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의 속도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해질 나라는 없을 것이다. 갈등은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령화의 초기에 벌써 갈등이 이 정도라면 과연 얼마나 극심해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결책이 나올 확률은 그만큼 더 높다. 필요는 진정 발명의 어머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고 배려하여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녹이고 화합을 가로막는 온갖 제도적, 문화적 여건들을 차례로 걷어내야 한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개혁은 그저 목청만 높이는 선동적 개혁보다 훨씬 강하다.

예전 세대들에 비해 몸은 훨씬 건강한데 사회로부터 너무 일찍 강제로 밀려나는 세상이다. 억지로 주어진 ‘뒷방노인’의 역할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민족 특유의 ‘체념의 미학’에 기대어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뒷방노인으로 살아갈 기간이 ‘사회인’으로 사는 기간 못지않게 길어졌다. 앞으로 점점 더 길어질 것이다.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일찌감치 내림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해진다.

그런 에이지가 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골든 에이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있다. 물론 두 인생이 일의 성질에 따라 칼로 베듯 정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제1인생에서 하던 일을 제2인생에서도 그런대로 계속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작가나 예술가들은 50세를 전후하여 구태여 붓을 쥐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2인생을 새롭게 준비하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확실하게 이 같은 새 개념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연히 정년 조정 등에 헛되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우리 사전에는 ‘은퇴’ 또는 ‘정년’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하자. 모두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 변신하며 사는 것이다. 변신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을 까닭은 정말 없다. 변신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도 이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찍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맞

이하는데 엉거주춤 땀질이나 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그런 관점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정부가 현실성이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를 정부 혼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각자가 적극적인 변신을 꾀해야 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향조정식(top-down approach)보다 상향조정식(bottom-up approach)으로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고령화 문제의 한복판에는 넘어야 할 높은 갈등의 언덕이 있다. 세대간의 갈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보다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실업의 문제 등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여러 사회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노인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하며 현명한가를 묻는 이들이 있다. 나는 최근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이사장이자 우리나라 ‘미혼모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안과의사 리처드 보아스(Richard Boas) 박사와 그의 동료들을 내 연구실에서 만났다. 슬하에 이미 남매를 두고 있던 그는 1988년 4개월 된 한국 여자 아이를 입양했다. 그 아이를 기르는 즐거움에 그는 적극적으로 국제입양을 지원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에 있는 미혼모 시설에서 10대와 20대의 젊은 미혼모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그는 2007년 사재 수십만 달러를 털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만들고 본격적인 미혼모 지원에 나섰다. 미혼모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의 제안에 누군가가 나를 천거한 것이다. 첫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꽤 긴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에게 아직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의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당한가 물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우려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이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비록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워진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을 보며 나는 그들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노인 인권의 문제도 바야흐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논의는 어차피 많이 늦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꺾으렵다고 해서 인권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다면 자칫 문제의 핵심을 잃을 수 있다. 인권을 주장한다

고 해서 마냥 권리만을 부르짖자는 것은 아니다. 권리에겐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따른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찾되 사회의 질서를 위한 타협의 문도 함께 열어야 한다. 미국의 언론인 멘켄(Henry Louis Mencken)은 일찍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말했다지만, 이 시대의 노인 세대는 특권을 갈취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를 찾으려 할 뿐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형. 2004. 「나 구본형의 변화 이야기」. 휴머니스트.
- 니어링(H. Nearing). 1997.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이석태 옮김. 보리.
- 도킨스(R. Dawkins). 2001.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 옮김. 을유문화사 (2001).
- 드러커(P. F. Drucker). 2002a.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이재규 옮김. 한경비피.
- 드러커(P. F. Drucker). 2002b. 「Next Society」. 이재규 옮김. 한국경제신문.
- 랄(V. Lal). 2005. 「힌두교」. 박지숙 옮김. 김영사.
- 류은숙. 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 리프킨(J. Rifkin). 2001. 「소유의 종말」. 이희재 옮김. 민음사.
- 마호니(D. Mahoney), 레스택(R. Restak). 2006. 「은퇴 없는 삶을 위한 전략」. 유은실 옮김. 허원미디어.
-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2003. 「고령화 쇼크」. 국민포메이션.
- 베렌바움(M. R. Berenbaum). 2008. 「별들의 화두: 곤충기에 머문 어른들을 위한 곤충기」. 최재천, 권은비 옮김. 효형출판.
- 새들러(W. Sadler). 2006.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김경숙 옮김. 사이.
- 어스태드(S. N. Austad). 2005. 최재천, 김태원 옮김. 궁리.
- 이현승, 김현진. 2003. 「늘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 장경섭. 2001. “압축성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13(1): 1-29.
- 존스(S. Jones). 2003. 「자연의 유일한 실수, 남자」. 이충호 옮김. 예지.
- 최재천. 2005.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2020년 초고령 사회」. 삼성경제연구소.

- Caspari, R. and S.-H. Lee. 2004. "From the Cover: Old age becomes common late in human evolution". *PNAS*101:10895-10900.
- Chitty, D. 1996. *Do Lemmings Commit Suicide?: Beautiful Hypotheses and Ugly Fa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isaku Maeda. 2004. "Aged Society and Responses in Japan."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주최 국제학회 [World Responses to the Aged Society].
- Darwin, C. 1859. *On the Origin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 Ladhenpera, M., V. Lummaa, S. Helle, M. Tremblay, and A. F. Russell. 2004. "Fitness benefits of prongled post-reproductive lifespan in women". *Nature*428:178-181.
- Laslett, P. 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lace, P. 1999. *Agequake: Riding the Demographic Rollercoaster Shaking Business, Finance and Our World*.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노년 삶을 억압하는 한국 사회의 삶의 양식

박 경 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이 연구는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자: 박경숙, 김주현, 이상림, 최인희, 손정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1) 노인 인권이 제기되는 이유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된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자유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당하게 요구되는 보편적 권리로 인식된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를 위해 주장되는 권리들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는 삶의 가치로서 역사성을 가진다. 물리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시민의 자유가 강조된 데에는 자본제적 생산구조에서 형성된 시민들의 주체적인 자율의 욕구가 추동력이 되었다. 노동과 소득보장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식된 것은 자본제적 생산구조와 상품경제 속에서 개개인들의 삶이 생산성과 소비를 중심으로 구성된 배경이 존재한다. 국가, 경제, 과학기술에 의해 추진되는 ‘발전’의 기획 속에서 주체 역시 기능, 자기성취, 자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를 가진다. 힘과 발전을 중심으로 편제된 삶의 구조와 인식에서 독립과 자율이 중요한 사회적 정의로 부상된 것이다. 이처럼 기능과 성취의 기제들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고 삶의 이해와 도덕적 가치도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주체인식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주체인식은 기능의 관점에서 규정된 부분이 크다.

이처럼 기능과 성취를 중심으로 조직된 현대적 사회구조에서 인권의 도덕적/법제적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선언 하에서도 현실에서는 수많은 불평등 관계와 억압이 구조화되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 주장은, 기능과 성취가 소수의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의 권리라는 불평등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포함한다. 다시 말하여 인권의 관점에는 개인의 자율과 능력을 옹호하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는 권리라는, 서로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이해들이 각축한다. 보편적 선언으로 인식되는 인권의 관점이 태동하게 된 정치경제적 토대에는 자유와 억압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석하는 방식은 억압이나 불평등 구조 속에서 구조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억압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의 가치는 끊임없이 재규정된다. 요컨대 인권의 논의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질문되어야 한다.

인권담론은 인간중심의 근대사상의 중요한 한 갈래를 이룬다(조효제, 2007). 인권 담론의 변화는 그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의 내용, 보호되어야 하는 인간,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한 윤리/철학적 사상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인권의식과 윤리가 변화된 시대적 맥락들이 존재한다. 서구사상에 뿌리를 둔 인권 의식은 봉건제와 절대적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인식에서 태동하였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법적 위치에서 정당성을 구하였다.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상식에 다름 아니지만 그 사상이 갖는 진정성은 깊다. 인권담론은 시민의 자유를 위한 국가와 시민 사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 원리에 대한 논의들이며, 시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다양한 억압기제에 저항하는 지난한 사회 정의 운동이다(조효제, 2007:26).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에서 제기되는 권리의 내용은 확장되고, 그 대상도 넓어지고 있다. 국가-시민사회의 지형에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 그리고 사적 영역안의 다양한 억압 상황에 놓여있던 주변인들의 주장이 권리로 인식되면서 특수한 집단의 이해를 좇아 해석된 종래의 자유와 평등의 의미들이 재해석되어 왔다. 이처럼 인권 의식은 권력과 억압의 구조에 대한 부단한 부정을 통해 그 보편성과 역사성을 확장해 나갔다.

인권의 가치가 확장되면서 다른 가치들과 접맥되는 흐름도 발견된다. 복지개념이 인권개념과 만나면서 복지에서도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의 관점이 부각된다. 복지가 권리로서 인식되고, 또한 인권이 증진되는 바가 복지로 해석되는 경향도 보인다. 정치적 권리에서 경제·사회권으로 인권의 의미가 확장된 것도 복지에 대한 시민권적 해석이 확장된 것과 연결된다. 이제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와 능력/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과 기회들을 제공해야 하는 적극적인 원리로 확장되었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구체적인 국가-시민사회 구조와 삶의 현장에서 인간을 주체화하는 고유한 시대정신으로 사유하고 현실적 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억압기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권의식과 행위를 확장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에 대한 법, 철학, 윤리적 관점의 담론이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환원주의에 빠질 때,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찾지 못하거나 억압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소수의 특권이 옹호될 수 있는 것은 인권을 규정하는 방식에도 억압의 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무엇보다 인권을 몰역사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억압의 성격을 밝히고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구성하는 입장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고민하는 힘이 확장되어야 한다.

인권인식의 문화적 규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이 존엄성을 실현하는가를 규정하는 방식은 고유한 생활방식의 틀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이 인권의 핵심적 사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서구 사상의 문화적 계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은 현대인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독립성의 가치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제일 우선시되는 가치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강제화된 독립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독립과 자율적 주체를 중심으로 해석된 인권이 다른 상황과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재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야 한다. 요컨대 인권의 가치들은 문화적 상대성을 가질 수 있고 노인 인권이 제기되는 맥락과 내용도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열린 관점이 요구된다. 한국의 맥락에서 노년 인권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맥락 자체를 어떻게 인권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가? 전자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부합되는 노인 인권의 가치를 묻는 것이고, 후자는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 사회적 맥락을 질문하는 것이다.

왜 노인 인권을 제기하는가? 노년의 부정, 주변화와 차별

노인 인권에 주목하는 것은 크게는 노인 일반의 삶, 좁게는 일부 노인의 삶속에 억압적 요소가 상당히 노정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이는 현대 사회변동의 거시적 영향 속에서 노년 삶의 양식이 변화된 맥락과도 연관된다. 기대수명이 짧고 몸과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의 여지가 제약되었고 인간의 생산/재생산의 활동이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시기 노년은 삶과 죽음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의 순환적 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경험되고 존재하였다. 자연화

된 노년의 인식이 늘 균형과 안정을 찾아주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삶과 죽음의 순환적 인식이 노년의 긴장을 덜어주기도 하였지만 자연의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삶의 욕구들이 노년에 거세된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문화 속에서 나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자원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다.

한편 근대적 생산, 지식, 권력 구조에서 노년의 삶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재규정되었다. 여기에는 자연화되었던 노년의 경험과 인식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 변화가 내포된다. 자연화의 부정은 나이들에 깊숙이 부착되었던 노화에 대한 숙명론적 인식을 도전하고 삶의 욕구를 해방시킨 의의를 가진다. 생산조직이 합리적으로 조직화되고 소비생활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영양, 돌봄, 위생, 복지 제도가 확장되면서 삶은 생산성과 건강을 관리하는 의미가 커졌다. 삶 속에 생산성, 힘, 건강의 가치가 확장되면서 의존과 노화, 죽음에 대한 의미들이 부정되었고 이는 노년의 부정으로 쉽게 이어졌다. 이처럼 한편으로 노년을 노화와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키려는 힘과 다른 한편으로 노년을 부정하는 힘이 서로 또아리를 틀면서 현대 노년의 삶과 인식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서 노년이 부정되는 인식과 구조의 다층적인 메카니즘에 주목하게 된다. 생산성과 과학주의 논리로 조직된 사회제도에서 노화, 질병, 의존의 경험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다시 부정적인 관념이 노인을 사회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약자화시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생산성이나 능력의 현실적 기준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나이 들을 이유로 생산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노인차별 인식과 행위가 증첩되어 노년의 부정이 더욱 심화된다. 이렇게 노년이 부정되는 시선 안에서 노인 스스로도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갖기 쉽고 점차적으로 생산성, 건강, 기능을 중심으로 노년을 관리하고 해석하게 된다. 성공과 생산의 논리는 더 이상 노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 내부도 포섭하게 된다.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자기 규율이 클수록 노인 스스로 노화, 질병, 돌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커다란 짐과 부담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건강과 기능이 노년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원해지지만 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서 기능이 쇠퇴하는 노화의 경험은 확장되고 있다. 연장된 기대수명의 상당기간이 질병과 돌봄의 시간으로 채워져야 하는 상황에서 돌봄은 부인하기 힘든 삶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돌봄 윤리에 대한 논쟁의 지형이 확장되고 있다. 노년 안에서 생산성과 돌봄의 가치가 새롭게 제기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인이 경험하는 억압은 이처럼 노년의 삶의 양식과 인식이 복합적이고 특수하게 변화된 사회 변동의 맥락에서 구체화되었다. 한편으로 노년의 사회, 심리적 은퇴와 약자화를 상징하는 여러 징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서 충분한 양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전이나 돌봄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 사회, 국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족과 사회, 국가에서 노년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주변적인 지위에 전치된 노인은 매우 흔히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게 된다. 의약 기술에 힘입어 노년의 삶이 대폭 연장되었지만 그 연장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지원 환경이 부재한 상태에서 많은 노인은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살과 존엄사를 선택하고 있다.

노인이 약자의 지위로 전치되는 과정은 사회관계와 심리상태에서의 은퇴의 한 결과이다. 한국인은 어느 사회와 비교해서도 매우 빠른 시점에 주된 일거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은퇴는 비단 경제적 활동에서의 물러남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사나 가족사의 중요한 토론거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욕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과거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은 유익하지 않은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노년의 덕으로서 강제되고 있다. 그리고 노년의 부정은 고령층에서 중장년층, 심지어 청년층에도 공유된다. 이런 생애 전반에 걸쳐 나이에 따른 은퇴압력이 지배하면서 노년의 은퇴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사회 전체가 동의하고 문화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장유서열식 권위주의 관계가 세대 간 거리를 조장하여 노년의 은퇴가 누렸던 세대에 대한 누리지 못한 세대의 폭력적인 반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와 함께 노년내부의 격차와 분리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노후복지의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강조되는 문화의 지배가 커지면서 노년 안에서도 생산적 노년을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노인집단과 노년의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온전히 갇힌 노인집단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노인 인권은 이와 같이 노년이 부정되고, 사회의 약자로 전치되고 은퇴가 제도화되고 문화로서 공고화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부각시킨다. 첫째, 노인이 부정되고, 약자화되고 노년의 은퇴가 공고화 되는데는 노년에 대한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둘째, 노년은 다른 집단 혹은 다른 생애과정과 마찬가지로 주체성과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은 노인을 약자로 전치시키고, 동정하고 부담스럽게 대하는 우리의 중심된 제도와 시선을 비판적으로 질문한다.

그런데 노인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노인만을 위한 특수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현대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위해 강조되는 제반의 권리들이 노인의 삶에도 중요한 권리가 된다. 국적, 성, 연령, 장애, 학력에 관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년의 억압과 그 사회구조적 연원을 드러내는 것이 노인을 약자로 구분하거나 집단 나누기에 동참하려는 의도를 포장한 제스처가 아니다. 그런데 보편적 권리선언과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한 권리선언 중 어느 것이 현재 한국의 맥락에서 인권 개선에 더 효과적인가는 규범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일 수 있다. 보편적 복지나 시민사회의 연대가 두텁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취약 집단의 주체적인 권리주장이 사회 전체의 권리 확장에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노년 당사자를 매개하지 않는 노년의 복지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노인’의 주체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의의는 크다.

또한 노인이 빈곤상황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박탈상황은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빈곤상황에서의 박탈상황과 유사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장애, 빈곤, 사회적 고립, 정체성 긴장 등의 문제가 약자의 일반적인 경험일 수는 있지만, 약자화가 작동하는 지배와 억압관계는 고유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년과 노년의 자아가 억압되는 사회적 구조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노인’의 인권을 구분하여 주목하는 의의는 크다고 생각한다.

2) 노인 인권의 원리

노년에 접어든 분들을 접하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된다.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삶도 어려움을 헤쳐 나가지 않은 분이 없었던 것 같다. 혹독한 삶의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숙연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가의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삶의 제반 기회가 제약된 환경 속에서 노인들은 좌절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보다는 욕구를 접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생활세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욕구정도가 낮고 변화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노인의 소극적 태도는 은퇴한 생활에 적응하는 심리적 은퇴 현상으로 이해하였다(박경숙, 2003). 낙후된 주택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높거나,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만족하거나 그 자녀를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쪼들리는 경제생활에 대하여도 별 불편함이 없으며, 주변적인 일자리인데도 감지덕지 하다는 이야기에서 자원 획득의 기회가 제한된 삶 속에서 욕구가 억제되는 심리적 은퇴현상을 보게 된다.

이후 더 많은 노년과 접하고 생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년의 무욕이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래전부터 존경받는 노인의 이미지에는 욕심을 버리고 후대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이미지가 있다. 평생을 회고하면서 욕심을 버리면 걱정할 게 없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노인의 말이 깨달음으로 전달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노인의 삶의 경험을 들어보면서 정말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최고, 일류, 출신, 왕년의 잘나간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삶보다 자신을 버리고 아래로 향하는 분으로 비쳐진다. 노년이 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 노년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인식하면서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가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쇠퇴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픔과 죽음에 가까워지는 여정을 소중한 삶의 순간들로 완성하는 것을 막는다. 현장에서 노인을 돌보는 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거나 집착하는 노인일수록 마지막 삶의 순간들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제한되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노년이 불행할 수도 있다.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의미들은 노화와 심리적 은퇴와 사회적 은퇴사이의 관계가 복잡함을 생각하게 된다. 나이가 되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압력은 비단 한국 노인만 겪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에는 노년에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을 용인하는 장유유서와 효와 같은 문화적 장치들이 곳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장치와 제도적 배제가 맞지 않아 갈등과 부조리를 크게 인식할 수도 있다. 반면 서양에서 노년의 은퇴는 자율이라는 문화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노년의 분리는 보상되고 계약이나 합의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합의된 분리이니만큼 개인이 원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엄격히 내면적으로 통제되는 부분이 있다. 노화는 노년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인식과 사회적 은퇴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와 복잡하게 얽혀 경험되고 해석된다.

여기에서 노인 인권의 관점이 제기하는 고유한 퍼즐이 생긴다. 인권의식은 삶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옹호한다. 소득생활을 유지하는 것,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돌봄을 받는 것,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당하다고 인식된다. 한편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욕구를 버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압력이 실질적인 배제를 낳고 있다면, 무욕을 긍정적으로 볼 수 만은 없다. 그러나 물질적인 재화와 기능 충족의 권리들이 충족되었다고 노년의 삶의 질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진될까의 질문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노년 삶이 부정되는 기저에는 물질적인 기회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요소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삶에 대한 해석적 관심은 삶을 완성하고 주체화하는데 중요한 힘을 갖는다. 물질적인 소유나 기능의 유지가 주체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삶의 성하고 쇠퇴함에 대한 성찰이 씨줄과 날줄로 직조되면서 삶의 의미가 완성된다.

따라서 노년이 부정되고 배제되는 매카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노동, 복지권 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화와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환경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여 노년의 삶의 존엄성을 위해 주장되는 노인 인권은 독립된 주체의 기능, 생산,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는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 관계적인 원리들을 제기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년에서 제기되는 삶의 존엄성은 독립, 발전,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종래의 인권의 가치를 확장하는 의의를 갖는다. 다시 말하여 노년에서 제기되는 삶의 권리는 물질적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유한함과 연계됨을 주체적으로 통합하고 해석하는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노년이 겪게 되는 불리나 배제 기제 뿐만 아니라, 노화가 부정되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인식에 유의해야 한다.

3) 노년 삶을 억압하는 한국 사회의 삶의 양식

이 연구는 인권에 대한 역사적, 사회 구성적 관점에서 한국 노년 삶의 존엄성을 해하는 삶의 양식의 억압적 성격을 밝히고 그 영향이 노년의 실제 생활과 권리인식에 어떻게 작용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노년 삶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한국 사회의 삶의 양식과 관련하여 연령차별, 생애불평등이 심화되는 노동-복지구조, 그리고 가족중심부양체계의 모순에 주목한다. 연령차별 의식과 행위가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년은 비생산적이라고 규정되고, 무능력/의존의 편견으로 분리시키고, 권위적이라고 기피되고, 젊은이 중심의 인식에서 희화되고, 노년의 요구가 배제된다. 노년의 몸, 인지능력, 태도가 부정적인 시선에서 해석되고 있다. 노인 '보호'의 표시는 거의 동시에 분리를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은 '나이 들'이란 이유로 무능, 의존과 비합리적 보수지향으로 규정되고 타자화되고 삶의 제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나이 들의 경험이 숨겨지고, 왜곡되면서 '나이 들'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부정되고, 배제된다. 연령주의는 나이 들의 경험에 무지하고, 그 경험과 요구를 공감하지 못하고,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고 차별하는 사고체계이다.

노년이 부정되는 또 다른 한국사회의 맥락으로 생애를 통해 불평등이 축적되는 노동-복지구조의 특성을 강조한다. 노동에서의 불평등이 사회복지제도에서의 불평등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의 법적 보편성이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과 작업장에서의 불리가 사회복지제도의 제약을 매개하여, 노년의 만성적인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로가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년의 빈곤을 구세대의 불운이나 개인의 자질 부족에 따른 소수 약자의 문제로서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리, 노년의 빈곤은 특히 앞으로 노년 세대의 빈곤은 노동시장, 작업장, 사회복지제도에서의 불리가 생애를 통해 누적된 박탈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가족중심의 부양체제도 노년이 주변화되는 맥락이다. 효이념이 강제한 가족 중심의 복지기능은 노인에게 가족 이외에는 어떤 자원도 가질 수 없게끔 하는 사회적 무책임과 불개입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 가족에게 위임된 부양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권리의식을 제약한다. 그 결과 노인의 소외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의 복지나 권리증진을 위해 효를 넘어선 가치를 상상해야 함을 강조한다. 효 이념의 강조는 노년의 박탈 경험을 가족문제로 환원하는 대응의 오류를 조장하기 쉽다. 그러나 노년의 박탈은 효가치의 약화보다는 과도한 능력·업적주의와 젊은 중심 문화가 강화한 연령차별의 영향과 사회 공동체의 토대가 취약한 영향이 크다.

이처럼 다양한 조직, 제도,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연령차별의 논리, 생애 불평등이 누적되는 노동-복지제도, 시민공동체의 연대의 취약함의 결과이자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족중심부양체계 등, 현대 한국인의 삶을 규정짓는 주요한 제도-행위 양식이 노년의 물질적 안정을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년의 정체성의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연령차별, 불평등을 심화하는 노동-복지제도, 가족중심부양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년 삶의 권리들을 억압하는가를 소득, 노동, 돌봄, 사회참여와 노년의 정체성의 긴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소득보장, 노동참여, 돌봄,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은 현대적 권리 원리의 핵심을 이루며 노년의 삶에서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한국 노인의 소득, 노동, 돌봄, 사회참여, 정체성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한 수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노년의 노동기회는 크게 제한되어 있고 가능한 일자리는 매우 주변화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활동이나 사적인 관계에서도 노년의 참여는 많은 긴장을 포함하고 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충분한 돌봄

을 받지 못하고 부담스런 존재가 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노년 삶 전반에서 경험하는 긴장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배경이 된다. 그러나 노인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앞서 제기한 우리 삶의 양식과 연결시켜 노년의 삶의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노인만의 그래서 부차적으로 주목되는 약자 집단의 문제로 접근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노년에서 제기되는 권리 침해는 특수집단으로서의 노인이 아닌, 우리 삶의 양식 안에 구조화된 억압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노년의 삶에서 독립과 자기결정, 사회참여, 존엄성, 돌봄의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가 취약한 현대 한국사회의 삶의 양식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노인의 생활 속에 권리보장이 실현되는 방식은 재화, 서비스의 객관적인 접근성을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지만,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취약한 환경이나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불리를 수용하거나 부인하거나, 생활의 제반 요구들에 대해 국가, 시민사회, 가족의 역할을 기대하는 태도에서 권리 보장의 구조적 성격을 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 노동, 돌봄, 사회참여/정체성에서 권리보장의 충분성과 침해의 실태와 그 사회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권리담론은 시민과 개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법적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노년의 권리가 침해되는 메커니즘은 국가와 시민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억압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 젠더, 가족관계, 세대 관계처럼 다양한 관계에서 형성된 억압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 노인을 둘러싼 그리고 노인을 주변화하는 힘들은 국가, 기업, 시장, 지역사회, 가족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가족관계의 구속성이 매우 강하여 권리인식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노년과 노인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런 고려에서 노년에서 제기되는 인권의 과제를 국가, 시민사회, 시장, 사적관계에서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4) 노인의 인권 실태와 권리인식에 대한 조사

선행연구 검토와 현장 전문가 및 노인 집단인터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노인 인권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득/주거, 노동/은퇴, 건강/돌봄, 사회 참여/노인이미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권리가 충족되고 있는지, 차별이나 권리 침해를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각 영역에서 권리 실행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등 각 인권 영역에서 제기되는 노인의 권리 보장의 충분성과 권리인식에 연관된 내용을 설문 문항으로 구체화하였다. 권리보장의 충분성은 객관적인 생활 실태와 주관적인 만족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따라서 권리보장의 충분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은 기존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조사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권리보장의 책임주체로서 개인, 가족, 국가, 시장의 역할도 객관적인 실태와 노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소득, 노동, 돌봄, 사회참여 등에서 적극적인 권리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 문항들을 통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경제 형편에 대한 만족도, 실제 소득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적정 생활비 등의 비교를 통해 소득 보장의 충분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보장에 있어서 가족, 시장, 국가부문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인의 소득 구성의 분포와 노후소득 책임주체에 대한 노인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주거부문에서는 주거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분석하였다.

노동 영역에서는 노인의 일자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와 노동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였다. 현재 일자리에 있는 노인의 노동조건과 노동 만족도가 어떤지를 조사하여 노인의 노동권 보장의 충분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권리 인식에서는 노동에 대한 강한 욕구가 적극적인 권리 주장 인식과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건강/돌봄 영역에서도 건강/돌봄 보장의 충분성과 이에 대한 권리 인식을 설문문항으로 구체화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돌봄 상황에 대한 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의 조사 문항을 통해 건강/돌봄 보장의 충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돌봄에 대한 권리 인식, 예상되는 돌봄 상황에 대한 부담과 돌봄의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

여 돌봄에 대한 권리 인식의 복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노인 이미지 및 사회참여에서는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이 노인일반과 노인자신에 대한 인식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관계지향적인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한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몇 차례의 보완과정과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2009년 10월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6개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거주하고 2009년 8월 시점에서 65세 이상노인으로서 확률표집을 통해 최종 806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노인 집단과 노인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양상과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 경제적 차별 등 노인 인권 침해의 구체적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였다. 집단면접은 인권침해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노인, 일반 여성노인, 일반 남성노인, 일하는 노인, 자원봉사 노인, 장기요양보호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II. 한국 사회에서 노년이 부정되는 주요 메카니즘들

1) 노인차별

우선 제도, 관계, 의식 제반에서 나타나는 연령차별주의(ageism)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연령차별주의란 연령을 근거로 한 비합리적이고 노골적인 억압, 폭력, 학대를 포함하여 쉽게 의식되지 않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전유/배제 관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여 연령주의란 연령에 따른 편견과 이에 기초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에서(Palmore, 1999), 차별을 가하거나 당하는 입장 모두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차별현상을 포함한다(Law, 1995; Young, 1990). 그런데 연령에 대한 각종 고정관념과 연령차별적 행위는 가족, 노동, 사회적 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의 구체적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연령차별주의는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직조하는 제도, 관계, 의식 틀 안

에서 고유하게 구조화된다. 또한 연령차별은 계급, 젠더, 인종 등 다른 차별과 연관되어 복합적인 사회불평등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연령차별은 취약 여성이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논리를 활용하기 쉽다. 그래서 차별의 논리는 약자에 중첩되기 쉽다. 다양한 차별 메커니즘들과 연결되어 연령차별의 양상이 구체화된다. 다음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연령차별 논리들이다.

<연령차별 논리 1> 연령과 생산성의 부정적 상관 논리

나이에 따른 노동 분리가 지배적이다. 입직공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연령기준이 명시되고,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연령 제한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년이 강제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은퇴 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있다. 위에 열거한 예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노동관행이라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이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은 흔히 생산성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크다.

노년의 노동 분리는 연령과 생산성의 부정적 상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믿음은 생산과 효율의 논리가 배타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더 강하기 쉽다. 우리나라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나이에 따른 노동통제는 다른 선진사회에서도 지배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 공식적인 정년규정이 없는 사회에서도 고령노동을 배제하는 제도와 정책이 흔하게 활용된다. 은퇴는 노동력의 비용과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세대간 일자리 교환을 통해 실업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간주된다. 조기정년이 장려되었고,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중고령자의 재취업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연령차별 논리 2> 기능주의와 강제된 자활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그 장애로 인해 사회 적응이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회시스템이 불편한 것은 장애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식한다. 그러나 사회시스템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사회가 불편할 수 있다. 사회의 부적응이 명백한 기능의 결핍으로

이해되고 정상/비정상의 구분과 보호의 시선이 만들어진다. 2006년 이후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이 강조되면서 노동권이 강조되었다.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가 ‘분리 속의 보호’ 틀에 구속되어 있던 점이 비판되면서 장애인의 자활과 사회 통합이 강조되었다. 노동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이 강조되었고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노동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많다. 지체장애인들은 어린 아이들보다 개별적 보호가 더 필요하며 노동 기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상태에서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연령차별 논리 3> 차이의 부정과 타자화

특정 경험이 정상으로 인식되는 사회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 밖에 놓인 사람은 비정상으로 규정되면서 배제와 소외를 경험한다. 학생카드를 모두 내는데 청소년 카드를 낼 때 갖게 되는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청년기는 학생 중심의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런 삶에서 벗어난 경험을 하는 청년에 대한 시선은 불편함과 동정이다. 차별 행위에는 정상/비정상 규범이 작동한다. 정상은 당연히 여겨지는 역할과 규범으로 질서 지워지고 비정상은 모르거나, 열등한 것이거나, 기능의 실패거나, 동정, 불편함으로 규정된다.

노년이 차별받는 이면에는 노년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거나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노년의 경험에 대해서 실제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노년을 부정적으로 규정한다. 노년의 묘사는 단편적이고 희화되기 일쑤이다. 타자화된 응시가 지배적이다. 타자화된 시선의 지배 속에서 노인 자신도 노년의 경험을 타자의 시선에서 인식하기 쉽다. 나이 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명명에서 깨닫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무엇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외부에서 노인이라고 규정한다. 노인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호칭하지만 불림을 받는 사람은 우울하다. 나이에 대한 인지 만큼 자신과 타인의 불일치가 큰 예도 많지 않다.

타자화된 시선은 우월자의 시각에서 노년의 경험이 충분히 공감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자기 중심적 인식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 차별행위는 타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집단 중심적 관점에서 비롯한다. 차별은 자기를 정상화하

고 타를 비정상화하는 구별 짓기에서 비롯된다. 차별이란 자기 정체성을 정상으로, 우월한 것으로 구분하고, 타를 비정상으로, 열등한 것으로 구분 짓는 행위이다. 소수자로서 규정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삶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불행하다. 열등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차별은 차이를 부정하고 동화를 일면적으로 강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거나 배제한다.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체 안에서 놓여 있는 처지는 달라도 삶의 행복과 존엄함을 누릴 수 있다.

<연령차별 논리 4> 일상화된 보호 신호와 시혜의 시선

교통수단이나 공공기관 이용에서 경로할인이나 노인우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할인이나 우대제도를 이용하는데 색깔, 공간상에서의 표시와 분리가 지나치게 활용된다. 복지 혜택을 받을 때에도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를 받는 사람들과 보호를 하는 사람이 시각,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가 우리의 무의식에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반영한다. 우월자의 자애의 표시로서 보호행위가 미화되기 일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내용 없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가운데, 구분된 승차권을 가지고 탑승하는 계층에 대한 불편하거나 무심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연령차별 논리 5> 권위주의와 세대분리

‘늙은게 죄냐’ ‘나이든게 대수냐’ 라는 농담이 기억난다. 동일 연령집단에 대한 엇갈린 표현이다. 나이를 폄하하는 시류와 나이로 기선을 잡으려는 문화가 갈등하는 세태를 빚대는 표현이다. 이는 현재 상이한 연령집단들 사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연령의 장벽을 반영하고 있다. 세대간 소통이 어려운 것은 한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영향이 크다. 세대간 위계적 관계를 강조하는 권위주의 문화는 연령통합을 막고 차별과 편견의식을 조장하기 쉽다. 작은 연령 차이 인데도 선후배 사이에 깍듯한 예의를 다하는 문화도 결코 좋게만 바라볼 수 없다. 또한 나이가 들면 사람은 쓸모없고 부담되고 열등하다는 연령차별의식도 세

대간 분리를 조장한다.

이처럼 연령차별은 다양한 차별의 논리가 결합하여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년은 비생산적이라고 규정되고, 무능력/의존의 편견으로 분리시키고, 권위적이라고 기피되고, 우월자의 시선에서 희화화되고, 노년의 요구가 배제된다. 이렇게 노년의 몸, 인지능력, 태도가 부정적인 시선에서 해석되고 있다. 노인 ‘보호’의 표시는 거의 동시적으로 분리를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은 ‘나이 들’이란 이유로 무능과 의존, 그리고 비합리적 보수지향으로 규정되고 타자화되고 삶의 제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나이 들의 경험이 숨겨지고 왜곡되면서 ‘나이 들’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부정되고 배제된다. 연령차별은 나이들의 경험에 무지하고, 그 경험과 요구를 공감하지 못하고,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고 배제시키는 행위체계이다.

2) 생애 불평등을 누적시키는 노동-복지 구조

노년이 부정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생애 불평등이 누적되고 심화되는 노동-복지구조의 성격도 주목되어야 한다. 노년의 빈곤은 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중요한 성격을 반영한다. 노인은 한국사회에서 빈곤 위험이 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 노년의 빈곤화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현 노년세대의 불행한 시대 운명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현 노인은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던 시기에 태어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근대적 직업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또 자식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노년을 위한 충분한 재산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인식된다. 노년의 빈곤은 또한 가족부양의 쇠퇴와도 연결된다고 인식된다. 약화되는 가족부양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부양 체계도 대부분의 노인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적연금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공적연금에 적용된 직업력을 가진 노인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에서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로 그 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된다. 같은 논리에서 새롭게 노년에 진입하는 미래세대의 운명

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새로운 노년세대는 압축적인 고도 성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렸고 복지제도가 확충되어 가족부양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점에서 노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적 안정과 독립에 따라 노년의 사회 참여 기회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로의 노년의 대체는 노년의 지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복지국가 확장이 가져다 줄 결실은 미래 노년 세대에서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소득수준과 고용상태의 이질성과 생애를 통해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불평등의 심화를 고려할 때 이런 관점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노년의 빈곤은 구세대 만큼이나 미래 노년세대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서 남게 된다. 현 노년세대의 빈곤이 저발전과 절대적 빈곤에서 구조화되었다면 앞으로 노년 세대의 빈곤은 불평등의 지배 속에서 만성화될 위험이 크다.

지속되는 노동기회의 장벽, 증가하고 있는 고용의 불안,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특징되는 현 노동시장의 성격은 안정적인 노동과 안정된 은퇴로의 이행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안정된 고용과 은퇴과정을 밟아가는 노동자는 매우 선택된 사람들이다. 많은 취약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고용 불안, 복지 혜택의 부재 속에서 노동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노동의 불안과 노동 기회의 장벽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조건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뒷에 갇힌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들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열악해지고 노동시장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점에서는 빈곤이 만성화된다. 경제활동시기의 경제적 불리가 노년으로 전이되고 확장되는 메카니즘이 작용하기 쉽다.

복지제도는 불평등을 완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회복지제도는 장애, 실업, 가족부양, 은퇴 등의 이유로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 보전 지원을 함으로써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회복지제도가 재화와 서비스의 재분배의 기능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가는 그것이 지향하는 보편성에 달려있다(Esping Andersen, 1990). 1990년 후반의 사상초유의 실업 대란은 한국 국가복지 체제의 확장에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된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안전

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속출하면서 국가와 시민들은 실업과 빈곤이 개인의 도덕적 자질이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협을 완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구조에서 촉발되었음을 몸으로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일련의 사회정책들이 세워지고 확장되었다. 국민연금제도도 1990년 후반 이후 비로소 그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장되었다. 오랫동안 사회보험제도 밖에 놓여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가족종사자 노동자들도 연금체계에 가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에 의해 선언된 법적 보편성이 실질적 힘으로 전화되는 것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 여전히 기업규모와 노동자의 고용지위에 따라 연금 가입에 차이가 크다(Park, 2005).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가입은 2000년 22.1%에서 2004년 30.2%로 여전히 가입율이 매우 제한된다(Yoon, 2005). 취약노동자들은 당장의 생활비를 충족하기도 어려운 조건에서 은퇴이후 소득을 위하여 얼마 안 되는 소득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기도 하고 그들의 고용상태와 복지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력도 부족하다. 빈번한 이직과 전직, 그리고 명료한 고용계약 조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적인 노동기록에서 보이지 않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자격을 결정하는 공적 기록에서 빠지게 된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법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잔여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시장, 작업장, 국가복지 기준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취약노동자가 상당하다. 그리고 노동에서의 불평등이 사회복지 접근의 불평등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의 법적 보편성이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과 작업장에서의 불리가 사회복지의 보편성의 제약을 매개하여 노년의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로가 뚜렷해지고 있다.

현 노인세대의 빈곤을 우리는 종종 구세대의 불운이나 개인의 자질 부족에 따른 소수 약자의 문제로서 바라본다. 이런 관점과는 달리, 노년의 빈곤은 특히 앞으로 노년 세대의 빈곤은 노동시장, 작업장, 사회복지제도의 접근의 불리가 생애를 통해 누적된 박탈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를 통한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화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

3) 가족중심 사회와 노년 돌봄의 긴장

노년이 주변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맥락으로 가족부양체제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노년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진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가족부양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다른 편에서는 가족의 중심성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효를 법제화하려는 운동과 가족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논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족부양은 복원할 수 있고, 복원해야 하는 문화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에 있어 가족부양의 효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노년기 소득 보장과 서비스 지원은 많은 긴장과 부담을 가지면서 가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 지원의 정도의 변화, 정서적 친밀성, 효 규범 등에서 볼 때 일방적인 약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가족돌봄의 질이 크게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효가 가족부양을 규정하는 힘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의 심정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불편함이다. 변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이 강제된다는 생각을 애써 누른다. 변화된 현실을 무시하는 관념의 고집이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도 어렵게 한다. 가족은 현실적 이해와 강제된 규범의 충돌 속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변화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기능으로 가득 채워진 가족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가족은 부양의 책무에 눌러 서로에게 정서적 의지를 구하기 어려운 어색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

가족은 관계의 덩어리이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신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다. 가족책임, 효도, 자녀교육, 결혼, 부부역할 등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는 핵가족/확대가족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이나 성공에 대한 부모의 열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의 정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의 성장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업을 찾고 결혼을 하고 손자녀를 키우는 시기를 넘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부

모부양에 대한 자녀 역할과 책임도 여느 산업사회에 비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자녀로부터 경제·신체적 도움을 받는 정도가 이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은 노후의 중요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가족의 지배는 가족을 통한 통치와 주체화로 정의될 수 있다. 가족은 개인의 위치와 관계 그리고 책임과 권리를 규정한다. 가족주의는 개인을 가족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훈육하는 일련의 제도와 상징적 기전들이 작동하는 사회와 개인의 특성을 말한다. 또한 규범, 도구적 이해관계, 정서적 친밀성에서 가족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해석되는 것을 가리킨다. 개인주의가 개인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규율하는 사회구조에서 주체화된 개인성이라고 한다면, 가족주의는 가족으로 훈육하는 사회문화구조에서 주체화된 개인성이다. 이렇게 가족주의는 가족의 책임과 가족의 권위가 강조되도록 주체와 사회를 구조화하는 제도이자 해석체계이다.

한국의 가족주의의 지속성에 초점을 둔 논의들은 한편으로 유교의 원리와 연관된 가부장제의 영향에 주목하는가 하면, 한국의 발전과정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가족주의의 지속을 논하기도 한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단순히 권력 기구의 통치전략만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사회이동의 전략으로 실천된 기획으로 보는 논의도 있다.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논리, 압축적 성장이 수반된 정치경제,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과 이동의 전략으로 주체화된 행위자들이 경합하면서 구성된 집합적인 행위양식일 수 있다. 전통, 정치경제적 조건, 주체의 동원과 같은 강력한 변화 기제들이 맞물려 가족주의의 지배가 견고하게 유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주의의 내부에도 매우 다양한 층위와 균열이 있고, 그에 따른 변화 동학이 존재한다. 조한혜정은 가족주의는 외양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지속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매우 상이한 조건에서 상이한 적응전략으로 고안된 부동성이라고 설명한다(조한혜정, 1985). 장경섭은 한국사회의 압축적 변동에서 비롯된 비동시성의 혼재로서 가족주의의 동형이질성을 설명하였다(장경섭, 1992). 이처럼 가족주의의 지속성 이면에 복합성과 균열과 변화가 작동하였고 이는 노인의 가족부양이 왜 긴장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한편으로 가족부양이 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지배가 약

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지배가 강화되고 지속된 배경인 사회 연대가 취약한 구조와 더 연관된다. 그리고 노년 돌봄의 긴장은 이형동질적인 가족주의 동학이 함축한 가족 권력관계의 변화와도 밀접히 연관된다(박경숙, 2007). 부계친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골격은 가족관계 내 어머니, 딸, 아내의 권리증진을 위한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길항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 한국 가족변화의 역사는 여성의 가족내 지위가 강화되는 과정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효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 토대가 약화되는 과정이었다(박경숙, 2007: 46).

가족 지원에 긴장이 크다는 것이 노인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령이 되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한테 걱정 안 끼치고 남한테 짐 되지 않고 살다가는 것이 되고 있다. 독립성의 의지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지만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저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전 같으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효라든지 자식뒤틀바라지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설명하였지만 노인부담 인식이 사회 전체와 일상에 확산된 현실에서 노인 스스로도 부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기에 이른다.

이런 변화는 세대간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주목하게 한다. 전통적 직계가족관계에서 효는 자녀됨을 규정하는 도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정서를 포함한다. 반면 전통적 직계가족관계에서 부모는 훨씬 도구적이고 이해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이해를 (특히 딸이나 며느리에게) 요구하였다. 반면 현재의 세대관계를 보면 애정을 구하는 쪽이 자녀세대보다는 부모세대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자원이 약화된 노부모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손자녀 돌보기, 집안일 거들기, 소득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그 실행은 전적으로 자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현재의 세대관계는 증여권, 친밀성, 권력 측면에서 세대간의 헤게모니의 변화가 뚜렷한 것 같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개념은 과거와 비교해볼 때, 그리고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젊은 세대는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하여 자녀보다 노인 스스로의 해결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 나이가 많은 세대는 자녀의 부양책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실 노인집단 내에서도 효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효가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녀의 당연한 윤리이자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의 노인은 자녀로부터의 부양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경제·신체적 자립력이 부재한 처지에서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또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갖지만, 이러한 부양에 대한 심적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다. 자식의 당연한 책임이고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었던 효가 이제는 부담의식에 자유롭지 못한 소극적인 기대로 전환되고 있다.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는 과정은 노인의 독립능력에 따라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의 가족부양관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독자적인 생활수단을 갖지 못한 노인에서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에 장애가 있는 노인에서 가족부양관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자립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서, 가족은 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체계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한편 경제·신체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은 가족부양관을 상황적으로 인지한다. 이들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부양관이 약화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부양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가족부양 능력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가족은 계층적 지위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본이 많은 부모 자녀와 그렇지 못한 부모 자녀 사이의 증여관계와 친밀성은 차이가 크다. 가족 부양 이념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이념적 친숙성 못지않게 보편적인 가족 경험이 되고 있다.

이런 긴장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지배는 가족부양 밖에서의 시민들 상호간의 권리와 책임 관계를 상상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 결과 노년을 보호하려는 대부분의 시도가 효나 가족부양의 강조로 귀의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의 제도화나 이념적 강조가 반드시 노인의 사회적 지위나 세대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이념이 강제한 가족중심의 복지기능은 노인에게 가족 이외에는 어떤 자원도 가질 수 없게끔 하는 사회적 무책임

과 불개입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 가족에 위임된 부양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권리의식을 제약한다. 그 결과 노인의 소외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 부양 논리가 노년을 약자화시키는 은밀한 경로들에 유의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노년의 복지나 권리증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념적 기초로서 효를 넘어선 가치를 상상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효가 가족윤리로서 갖는 가치를 폄하하거나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윤리를 사회의 지배논리로 전치시킴으로써 파생되는 돌봄, 소통, 친밀성의 공동체적 기초가 부재한 문제점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효의 복원을 통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원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는 별로 실효를 가질 것 같지 않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효를 아름다운 미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도덕으로서 효의 영향력은 이미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효 도덕의 약화는 가족의 권력 관계가 변화된 결과이다(박경숙, 2007).

효 이념의 강조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년의 박탈 현상의 원인을 가족문제로 환원하는 대응의 오류를 조장하기 쉽다. 지금의 노년의 박탈은 효 가치의 약화보다는 과도한 능력·업적주의와 젊은 중심 문화가 강화한 연령차별의 영향과 공동체의 토대가 취약한 정치·경제구조의 영향이 크다. 많은 노년이 효도라는 가치에서 추구하는 것은 가족부양의 가치 이상의 가족과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람이다. 이런 정당한 바람이 장유서열, 권위주의, 여성 억압의 오점을 충분히 펼쳐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효로써 주장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폭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세대관계의 새로운 도덕, 정치, 경제적 조건은 가족의 경계를 넘어 소통, 돌봄, 친밀함의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요구한다. 자율과 연대에 기초한 세대 도덕은 굳이 효의 가치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Ⅲ. 소득, 노동, 돌봄, 사회참여 및 정체성에서 권리 보장의 실태와 권리인식

1) 만성적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취약한 권리인식

안정된 소득생활이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는 것은 소득생활이 현대 삶의 양식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소비 경제 속에서 안정된 소득확보는 생활에 기초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빈곤은 물질적 생활의 불편함이나 기능적 결핍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의 고립과 박탈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관계의 복합적인 결핍 속에서 빈곤이 재생산되는 부의 순환관계가 고착되기 쉽다(박경숙, 2008).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논해지는 것도 개인의 소득창출능력이 가족, 노동/경제구조, 복지구조와 같은 다양한 소득분배 기제를 통해 차별화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소득보장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제기되는 이유는 소득이 개인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물질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를 규정짓는 한편 그 소득기회가 다양한 불평등기제 속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적정하게 인식하는 소득보장의 권리는 정치적 갈등과 협상의 주제가 된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들이 갈등할 수 있고 소득보장의 개인적 역량이나 필요가 다를 수 있다. 자원분배의 현실적 제약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필요의 복잡한 고려 속에서 소득보장의 적정성과 그 수준이 논쟁이 된다. 소득권을 주장하고 이를 보장하는 협약의 주체도 다양하다. 시민사회의 협약에 기초할 수도 있고, 기여와 보상의 시장 원칙에 기초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오래된 증여관계에 기초할 수 있다. 소득보장에 대한 사회협약을 위해서는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나 공공재를 마련하는데 시민들이 합의가 전제된다.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이 취약한 것은 노년의 소득보장에 대해 시민사회가 합의하는 정도가 약하고 개인의 소득 능력에서도 차이가 심하고 가족 증여가 불안한 구조와 연관이 깊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한국 노인의 주된 소득원에서 사회보험의 비중은 여전히 제한된다. 반면 노년의 소득 대비를 위해 금융과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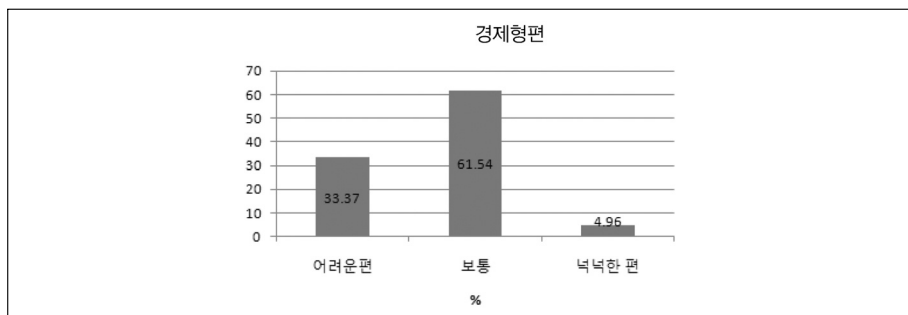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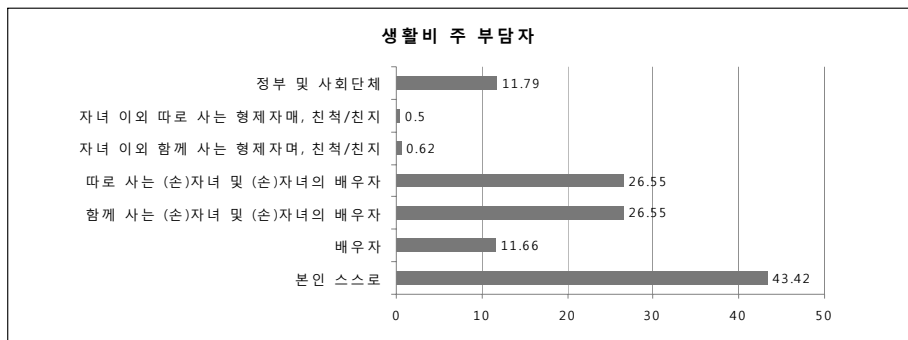
산 투자활동에 대한 개별적 노력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년층 내부의 소득 구성도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로 안정된 직업력을 가졌던 노년은 노후에도 안정된 소득기반을 가지는 반면 불안한 노동경력과 소득지위를 가진 노년은 노후에도 불안한 소득 지위에 놓이는 경향이 부각된다. 가족 간의 증여관계도 긴장하고 있다.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본 대가로 가족으로부터의 노후 보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부양의 권리와 책임을 둘러싼 가족 성원 사이의 갈등은 상속권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가족중심문화에서 노부모가 재산을 자율적으로 누릴 권리가 자녀들의 이해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규정짓는 현실적 조건으로서 사회 연대적 기초와 개인의 소득/자산능력 그리고 가족 증여관계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협약, 시장의 논리, 가족 간의 증여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보장의 기회가 얼마나 생애에 보편적으로 보장되는지, 노인집단 안에서는 얼마나 차별화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소득보장권을 실현하는데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인식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생활이 긴장하고 있는 실태와 그 사회구조적 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엇보다 경제생활의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배타적으로 강한 것은 노년에 적절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크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노인층은 다른 청장년층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계층 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성노인일수록, 후기고령자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액이 낮게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서도 생활비 부담에서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응답자 노인의 38% 정도가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경제형편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노인의 35%가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의 소득수준, 소득구성과 경제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을 통해 노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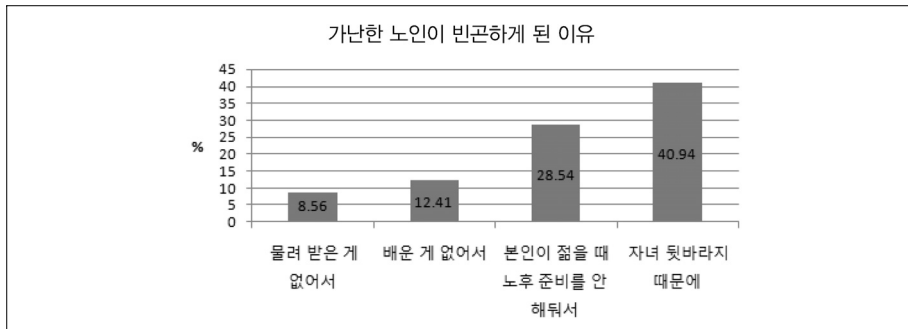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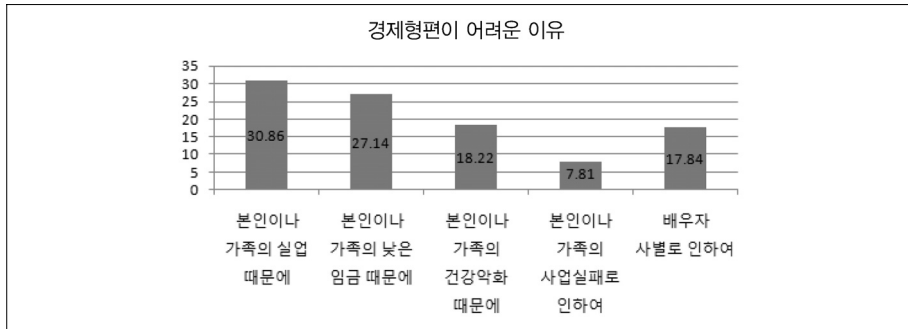
소득보장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구성에서 가족이 전이나 개인 노동, 사업 소득 비중이 크고 사회보험과 같은 공적 이전의 비중은 매우 제한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적이전 소득이 44.7%,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타공적이전소득)이 25.5%, 근로 및 사업소득이 22.6%, 자산소득(금융, 부동산, 개인연금)이 7.2%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구에 비해 정책 기준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의 비중도 훨씬 크다. 2008년 기준 전체인구의 3.1%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고 3.8%가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절대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이 전체인구에서는 2007년 10.9%임에 반해 노인인구에서는 31.6%였고 공공부조 수급율도 노인이 전체인구의 3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실질소득이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 수준보다 낮다고 인식한다. 또한 노인층 내부의 계층적 차이도 커서, 여성과 후기고령자, 낮은 교육수준의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가구 생활비 주부담자와 경제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소득을 위해 노인 자신의 노동과 가족의 부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태는 소득보장 책임 주체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을 뒷받침한다. 조사 노인의 과반수가 취약한 경제상태의 원인으로 실업과 저임금 같은 노동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노인의 생계비 원천이 주로 개인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다(<그림 2>). 다음으로 노인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악화나 배우자 사별을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지적하는 비율이 컸다. 이런 인식은 노년에도 경제활동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형편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문임을 나타낸다.

한편 개인 경험에서가 아니라 한국 노인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 뒷바라지 때문이 41.7%로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젊을 때 노후 대비를 못했기 때문이 28.5%, 배운 게 없기 때문이 12%,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이 8.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는 교육 서비스가 대부분 상품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 노인들은 젊은 시절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녀들에게 투입하여 저축할 여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노후 대비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 경험에서거나 노인 일반의 취약한 경제수준의 원인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취약함을 지적한 비율은 불과 4.7%에 그치고 있어, 소득보장을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인식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후 생활보장의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가족(자식)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1>). 남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노인들은 가족(자식) 책임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보였다. 자녀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결국 소득보장에 대하여 노인은 가능하면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에서도 노후 소득보장은 사적 관계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경제형편이 어려운 이유

<표 1> 노후 생활보장 책임 주체에 대한 전체 노인의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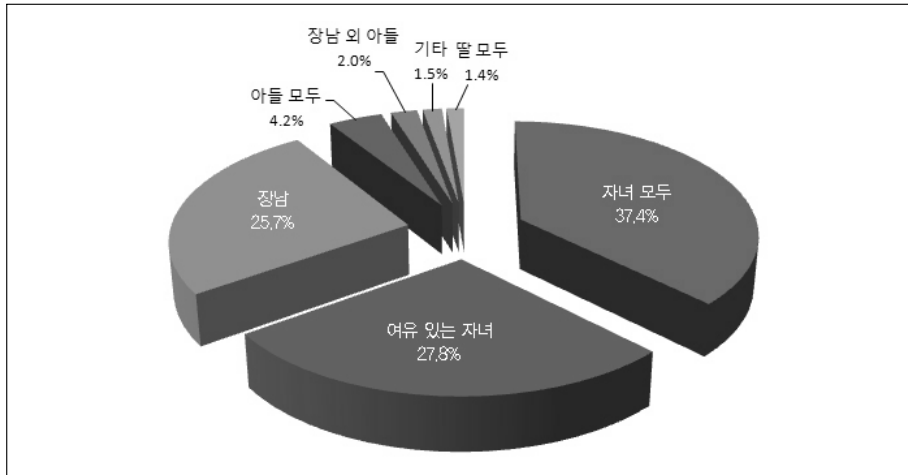
	노인 스스로	가족 (자식) 이	노인, 국가 함께	가족, 국가 함께	노인, 가족, 국가 함께	기타	계(% ,N)
전체	29.5	26.8	10.1	5.7	12.5	15.3	0.1 100(743)
성별							
남	37.1	20.1	12.8	6.1	9.1	14.9	0.0 100(329)
여	23.4	32.1	8.0	5.3	15.2	15.7	0.2 100(414)
소득4분위							
최상위25%	38.2	19.4	8.6	7.0	14.0	12.9	0.0 100(186)
중상위25%	28.7	27.6	10.8	3.2	13.0	16.8	0.0 100(185)
중하위25%	23.0	31.0	13.9	4.3	11.8	16.0	0.0 100(187)
최하위25%	28.6	33.3	4.0	4.8	11.9	17.5	0.0 100(126)

	노인 스스로	가족 (자식) 이	가족, 국가가	노인, 국가 함께	가족, 국가 함께	노인, 가족, 국가 함께	기타	계(%),N
입주형태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37.6	24.3	7.9	4.9	10.8	14.5	0.0	100(428)
자녀 혹은 그 외 가족 소유	12.6	52.1	7.6	2.5	12.6	11.8	0.8	100(119)
전세	17.0	30.4	8.9	10.7	17.0	16.1	0.0	100(112)
월세	20.9	14.6	18.2	5.5	15.5	25.5	0.0	100(110)

노후 생활보장 책임에 대해 가족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종래의 장남 중심 책임관에서는 큰 변화가 확인된다. 노후 생활보장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면 가족 중 누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녀 모두가 37.4%로 가장 높았고, 여유 있는 자녀가 27.8%, 장남이 25.7% 순으로 장남에 기대하는 정도가 배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인 내부 취약집단일수록 장남에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자원 있는 노인일수록 자녀 모두에게 책임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그림 3>).

자녀에게 노후 부양을 의지하는 방식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과 호혜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자녀 전체에 대해 노후부양을 기대하는 것처럼 상속에 있어서도 자녀 균등 권리를 선호할 수 있다. 만약 부양과 상속을 고려하는 자녀가 다르다면 가족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한 노인의 비율은 전체 조사 노인의 12%에 해당하였다. 계층별로 후기고령자가 21.8%, 주거상태에서 자녀 혹은 그 외 가족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37%로 재산상속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부양을 기대하는 자녀와 비교할 때 상속에서는 장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표 2>). 상속과 부양에서의 다소 불일치된 인식은 부양과 상속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전통적 장자상속의 규범과 그에 대한 법제적 토대가 약화되면서 자녀 모두가 부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장남 우선의 상속관행이 지속되면서 상속과

부양의 호혜성을 둘러싼 가족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림 3> 노후생활보장 주체가 가족일 경우 주 책임자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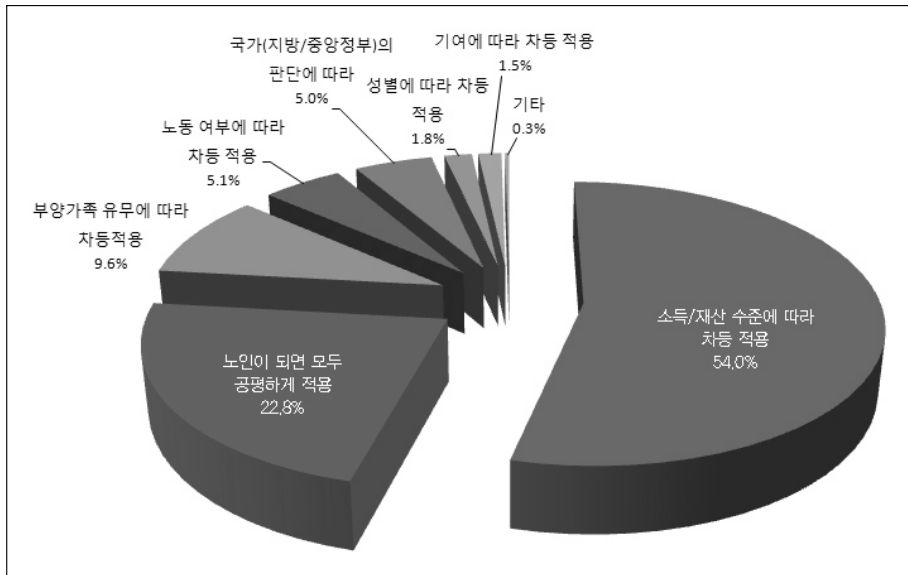
<표 2> 재산을 상속한 경우 재산상속 대상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장남에 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게	경제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사회에 환원	기타	계 (%,N)
실제	30.3	25.8	25.8	7.9	0.0	6.7	0.0	1.1	100(87)
기대	42.9	24.3	5.8	1.5	2.4	11.0	1.6	10.3	100

한편 전체 조사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재산상속방식을 조사한 결과 자녀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43%,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24.3%,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11%, 나 자신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등 기타의 응답이 10.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속행위와 기대하는 바람직한 상속관을 비교해보면 장남 위주의 상속 문화가 약화되고 모든 자녀에게 평등하게 상속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태도가 강해지는 경향에 주목할 수 있다. 노인 자신을 위해 쓰

겠다는 인식은 노인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그 비율은 낮다. 그리고 상속에서 사회 환원을 고려하는 인식은 매우 약함을 알 수 있다. 상속관에서 남녀평등 경향이 증가하고 노인 스스로 독립권 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추세가 확인되지만 상속의 지배적인 문화는 여전히 가족중심문화임이 드러난다.

만약 국가가 노후 생활보장의 책임주체라면 한국 노인들은 소득 보장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여보다는 필요와 평등의 원리가 강조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이 54.0%로 가장 높게 나왔고 노인이 되면 모두 공평하게 적용이 22.8%,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차등 적용이 9.6%이고 기여에 따라 차등적용이 1.5%에 그쳤다(<그림 4>). 국가의 역할에 대해 필요나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현 노년 소득제도에서 사회보험의 비중이 약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격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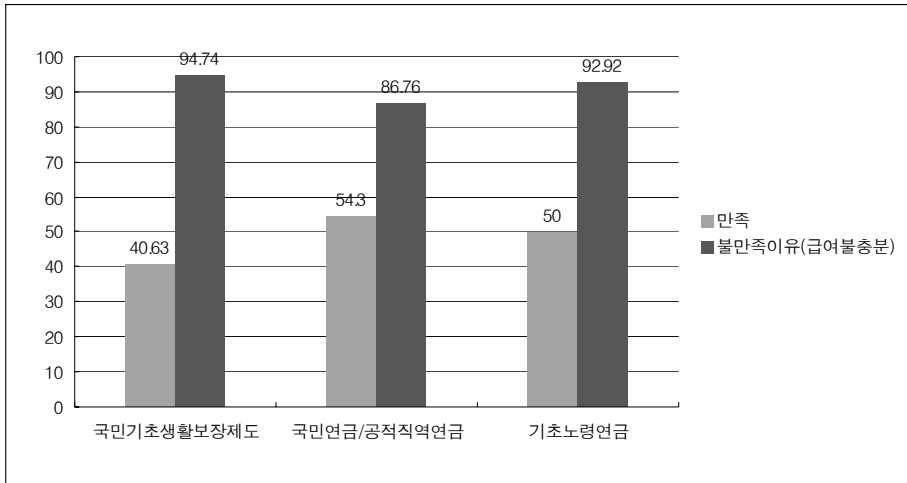


<그림 4> 노후생활보장 주체가 국가일 경우 소득 보장 기준에 대한 견해

현 노인에게 가용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과 근로기간 중 기여한 사회보험인 공적 연금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 인구의 3.1%에 해당되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26.5%에 이르고 있다¹⁾.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2009년 70%에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제공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7-8만원 정도로 제공된다. 또한 2010년도 고령화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14.2%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완, 2010)²⁾. 이번 조사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3%, 공적 연금 수급자는 22.1%, 기초노령연금은 61%로 일반 노인보다 다소 소득수준이 높은 편의를 가지는데, 노후 소득보장제도 수급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만족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60%가 불만족 상태였고 국민연금/공적지역연금은 44.5%, 기초노령연금은 49.5%가 불만족 상태였다. 수급경험자의 불만족 원인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공적지역연금, 기초노령연금 모두 불충분한 급여/보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각각 94.4%, 87.7%, 92.5%에 해당하였다(< 그림 5>). 결국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적용 대상의 포괄성과 보장의 충분성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노후 소득보장이 보편적인 사회보장권리로서 정립되지 못한 때문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권이 정립되지 못한 것은 노인층 전반의 취약한 경제상태, 소득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의 역할이 과중한 반면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대가 미미한 인식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었다.

1)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 김수완, 2010. "중고령자의 근로소득, 소비 그리고 연금". 제1회 고령화연구패널(KLoSA) 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5>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만족도와 불만족이유, %

정리하면 노인에게 빈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조사 참여자의 35%가 자신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80%가 일반시민과 비교하여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현재의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인 내부의 소득생활 격차도 심화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노후의 주된 소득원은 가족이전과 근로/사업소득이 되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제한된다. 이런 소득원 구조는 소득보장 책임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후 소득 보장의 주된 책임도 개인과 가족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노인들 상당수가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 또한 개인의 탓으로 환원한다. 자신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는 약하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소득 환경은 과도하게 상품화되어 있다. 노후의 대비는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 확보되고 그 결과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노년 생활이 상품화될수록 노인 내부의 불평등 문제는 심각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인구 내부에는 남성, 전기고령자, 고학력, 고소득, 주택 자가 소유 계층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소유한 노인과 여성, 후기고령자, 저학력, 저소득, 전월세 계층과 같은 취약한 노인이 복잡하게 공존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중심이 된 사회보장정책은 재정최소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소득보장의 보편성(universality) 원리가 정착되기 어려운 틀이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노후 소득보장과 정책은 시혜적, 최소주의적, 기여적 틀에서 짜여지고 보편적, 공동체적 토대를 약화하는 효과로 이르기 쉽다.

결국 개인책임 논리, 시장화, 가족중심 지원관계, 사회 공동체적 지원체계의 취약함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득보장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혹은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시장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기본적 생존 문제에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노후 생활의 문제가 사회가 아닌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환원된다. 그 결과 노후 소득 안정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타인의 은혜로 인식하게 된다.

노후소득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과 가족부양이 강조되는 것은 노후 소득의 취약성과 불안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노후대비에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노년에도 독립적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중산층이 확장된 이유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산층의 확산이 복지의 공공성 확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위계적인 계층구조에서 중산층의 개별화된 계층지향이 강화된 것과 연관된다(박경숙, 2009)³⁾.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한국의 중산층은 노동자계급과 더불어 정치민주화를 견인한 주요 세력이었지만, 한국의 위계적인 계층구조는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체적인 연대가 구조화되는 것을 제약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중산층의 복지 태도는 상당히 개인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주의적 태도가 강한 또 다른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일반 생산 영역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에도 확장된 영향도 크다. 노후대비를 위한 각종 금융, 효도 돌봄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중상류층 노년을 타겟으로 한 성공적인 삶의 욕구를 촉발하는 마케팅이 확장되었다. 이처럼 시장자유주의의 영향이 노년에 확장된 상황에서 성공적인 노년 담론과 노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이 강조되었고, 그와 함께 노후 불안은 더욱 기증되었다. 노후 보장의 개인적 책임이 강조된 또 다른 요인으로 가족부양

3) 박경숙 2009, “노년복지의 제도와 인식의 변화: 노년의 불안과 독립선언” 정진성, 이재열, 박경숙, 정재기, 남은영, 장진호 지음.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 약화된 맥락도 지적될 수 있다. 독립적 생활력이 취약한 많은 노인이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에 대한 부담인식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녀부양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도 노인 자신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인식한 배경요인이 된다.

정리하면 노후의 소득조건이 취약하고 불안한 배경에는 소득보장의 공공적 기반이 취약하고, 위계적으로 계층이 구조화되고, 복지영역에 신자유주의 영향이 확장되고, 가족부양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노후 만성적인 소득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후 소득 정책은 개인적 자구책이나 가족부양이나 아직 제한된 공적 연금 급여 중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노년에 대한 생활부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조정책은 빈곤탈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효과를 이루기 어려운 딜레마를 가진다. 정책은 수급자격을 통제하려는 이해를 가지고, 대상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는 이해가 결합되면서 복지정책이 오히려 복지에 의존적인 행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가진다. 노년의 소득안정은 생애과정을 통해 소득생활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소득보장의 공동체적인 기초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취약한 노동지위와 연령차별

한편으로 근대적 삶의 변화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하건 원하지 않든지 간에 생활의 많은 시간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조직되고 있다. 그런데 노년은 노동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편성된 삶의 구조에서 제도적으로 분리된다. 특히 노동조건이 불안한 한국 상황에서 노동에서의 연령차별 관행은 만성화되어 있다. 차별이 강할수록 차별의 행위를 인식하기도 어려워진다.

현 남성노년의 단절감은 노동으로 조직되었던 삶의 양식에서 갑작스럽게 벗어나면서 경험하는 박탈감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현재의 노년 노동 조건은 소외된 노동과 노동연령차별이 집약되어 있다. 한 여름 무더운 열기가 뿜어 나오는 도로 위에서 폐휴지를 잔뜩 담은 수레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노부부

를 보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이지 않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을 원하지만, 생계형 노동 대부분은 그 노동의 대가로 생활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 몸이 유일한 소득원인데 손상당하기 쉬운 고강도 육체노동이 몸을 일찍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된 노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상당하다.

현재의 고령층 일자리 사업은 노동에서의 연령차별을 완화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존경쟁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직장에서 노동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다. 생활의 대부분을 노동에 매여 살지만 그와 비례하여 노동력이 매우 빨리 소진되어 직장을 나와야 한다. 가장 긴 노동시간과 가장 짧은 근속연수가 한국인의 일반적 노동 조건이 되고 있다(방하남, 2007). 이런 노동조건에서 연령은 은퇴압력의 불안한 시그널이 된다. 그런데 연령차별이 지배적인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국가나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취약하다. 초기에 갑작스럽게 비생산자로 전치된 인구는 경제활동의 기준 때문에 노인이 된다. 이렇게 은퇴한 개인들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것이 각종 ‘노인형’ 일자리 제공 사업이다. 노인형 일자리 사업은 2003-2006년 노무현 정권시기 복지정책의 중요한 공약이었고, 2007년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익형, 소득창출/시장형, 사회적 기업 등 좋은 표제로 포장된 일들이 실제로 시간 떼우기 식의 공공근로이거나 고된 파견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조기은퇴를 양산하고 있는 노동 시장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경쟁적이고 임시적이며 대체가능한 주변적 노동시장으로 노년 노동을 이전시키는 정책은 노동을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냉혹한 시장원리를 노년까지 연장하는데 일조하는 위험도 안고 있다. 연령차별을 내포한 강제된 은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소외된 노동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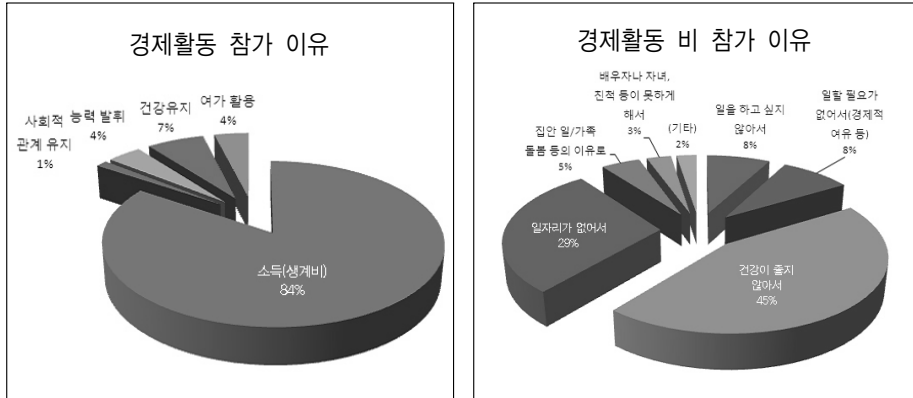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령노동인구 보고서(ageing synthesis)’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각 회원국 40세 이상 국민의 실제 은퇴 연령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70세로, 75세에 육박하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노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자료로 쓰인 <노인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28.66%이고, 남성 노인은 40.17%, 여성 노인은 그 절반 수준인 2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리고 근무형태를 보면, 자영업자가 35.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임시/일용근로자가 35.05%, 상용근로자가 26.74%로 나타났다. 유급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생계형 노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근무 형태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남성 노인의 경우 상용직에 있는 비율이 38.1%인데 반해 여성노인은 9.8%로 매우 낮았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상용직에 있는 비율이 40.3%로 나타났다.

<표 3> 어떤 근무형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 , 명)

	소득활동 비율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시/일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	무응답	N
전체	28.7	35.9	1.3	35.1	26.8	0.9	231
성별							
남	40.2	33.8	0.7	25.9	38.1	1.4	139
여	20	39.1	2.2	48.9	9.8		92
연령							
65-69세	45.9	37.1	0.7	29.8	31.1	1.3	151
70-74세	24.3	36	2	34	28		50
75-79세	17.6	23.1	3.9	69.2	3.9		26
80세 이상	3.3	75		25			4
학력							
고졸 이상	39.2	35.5	0	22.6	40.3	1.6	158
중학교	35.4	39.2	0	25.5	35.3	0	144
초등학교	27.2	34.7	4.2	43.1	16.7	1.4	265
초졸 미만	19.2	34.8	0	50	15.2	0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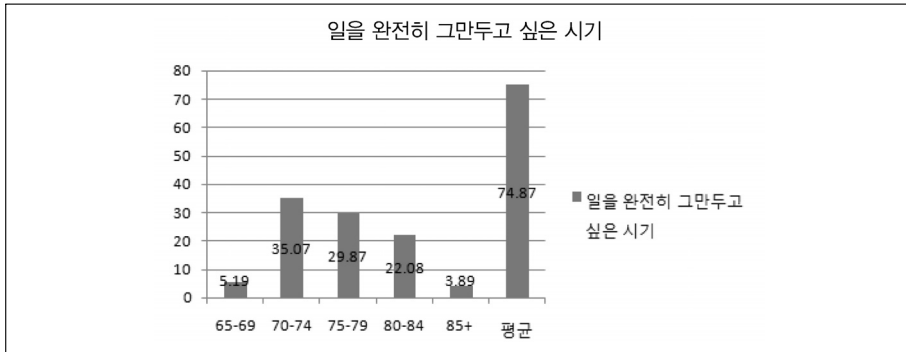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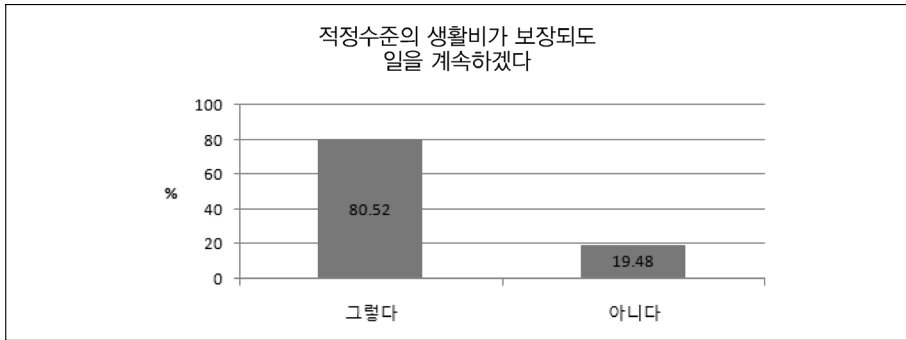
노동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은데 경제적 이유(84.4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 반면,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건강문제나 일자리 부족 등 원하지 않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경제활동 참여, 비참여 이유

그런데 현재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상황이 비정규적이고 노동시간도 길며 생계를 위한 노동참여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준의 생활비가 보장되더라도 노동활동에 참여하겠는가를 묻는 항목에 있어서 매우 많은 노인들이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노인의 80%가 노동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림 7>). 특히, 고학력의 상용근로자일수록 생계비 보장에 상관없이 노동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몇 세쯤 완전히 일을 그만두고 싶은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75세 정도에 은퇴를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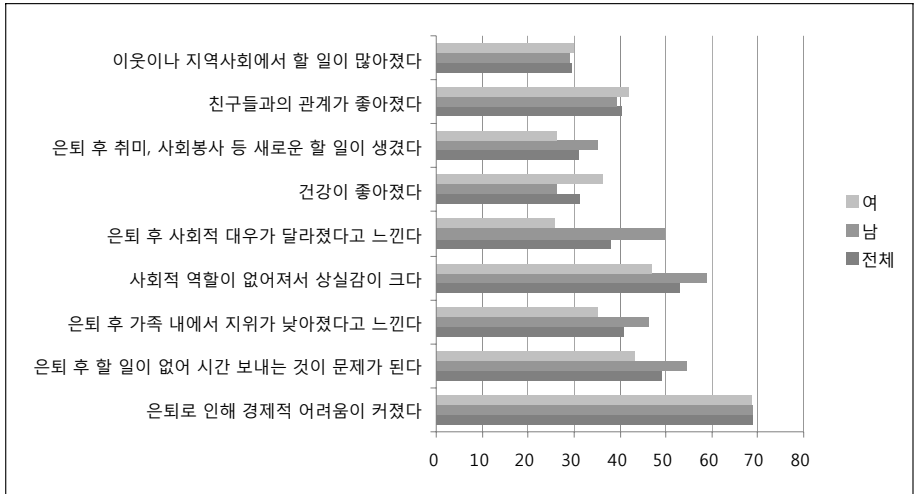
4)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이문국 외, 2007)에 따르면, 참여노인의 75%는 경제적 동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였고, 53.6%가 용돈마련 차원의 일자리 욕구가 아닌 생계비 마련의 동기를 가지고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이들 상당수(41%)는 원하는 일의 형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일제 근로였다.



<그림 7> 일에 대한 욕구

노인의 노동 욕구가 강한 것은 은퇴 이후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데 기인한 경우가 많다(<그림 8>).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시간보내기가 힘들어지고, 역할 상실에 따른 지위하락과 상실감이 큰 것으로 인식된다. 노동에 매여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거나 소원했던 관계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 은퇴에 따른 부정적인 경험은 노동을 통해서 획득되는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노동은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기능적인 주체로 살아가도록 한다. 노동이 제공하는 이런 가치들과 더불어 노동 말고는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찾기 어려운 노년의 현실도 노동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켰을 수 있다. 또한 노동기회의 상실에 따른 부정적인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 노인에서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든가, 은퇴 후 가족 내 지위나 사회적 상실감의 변화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대우에 변화를 느낀다고 응답한 남성 노

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그리고 학력이 낮은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 난 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다수가 동의했다(75.7%).



<그림 8> 은퇴 이후의 변화

한국사회에서 은퇴는 개인적 상황이나 노후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되기보다는 고용이 불안하고 경력관리가 취약하며 연령 차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노인들이 최장 종사 직업에서 물러난 이유는 건강악화와 휴식과 기타 활동을 하기 위한 자발적 퇴직, 그리고 정년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정년퇴직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악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초등 미만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수 가까이 건강 악화가 주 요인이었고,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이 다수의 원인이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최하위 25%는 건강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고 최상위 25%는 정년퇴직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표 3>). 이처럼 정년퇴직으로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둔 노인이 남성 노인이거나 고학력자에서 그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 집단 내에서도 지배적이지 않다는 점은 정년퇴직이 소수 안정된 직장경력을 누린 노년층에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고용이 불안하고 경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건강 악화로 노동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비하면 정년퇴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노인은 고용안정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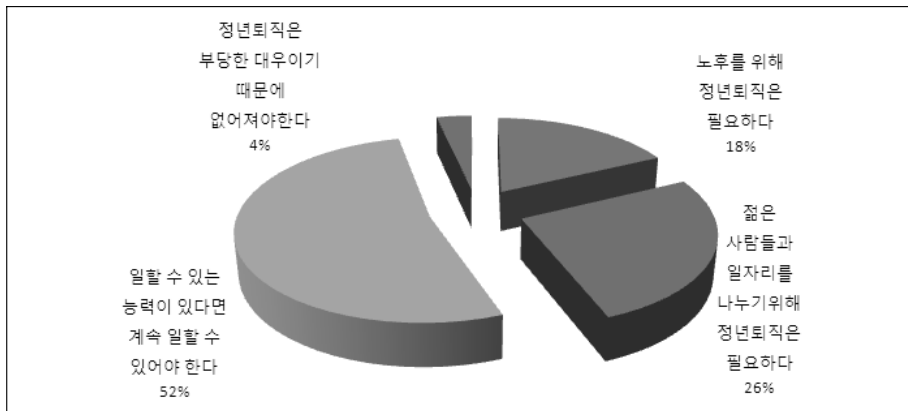
<표 3> 최장 종사 직업(주된 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년퇴직	구조조정 에 의한 정리해고	사업의 부도	건강약화	가족 돌봄 (가사활동, 가족의 병간호)	다른 사업 (일)을 하기 위해	기타 자발적 퇴직'
전체	15.5	3.9	3.5	28.3	5.6	7.7	16.6
성별							
남	27.4	5.5	5.2	18.7	1.3	11.3	15.2
여	3.5	2.3	1.9	37.9	10	4.2	18
학력							
고졸 이상	33.3	5.3	3	8.3	5.3	13.6	16.8
중학교	15.7	3.5	5.2	20.9	4.3	7	24.8
초등학교	14.1	4.2	3.1	29.3	5.2	5.8	28.7
초졸 미만	3.8	2.7	3.3	46.4	6.6	5.5	29.7
소득분위							
최상위25%	27.6	3.9	4.6	13.8	5.3	6.6	18.5
중상위25%	15.5	6.3	4.9	27.5	3.5	7.7	27.2
중하위25%	7.3	4	3.3	37.7	4.6	7.3	25
최하위25%	11.3	1.5	2.3	36.8	7.5	7.5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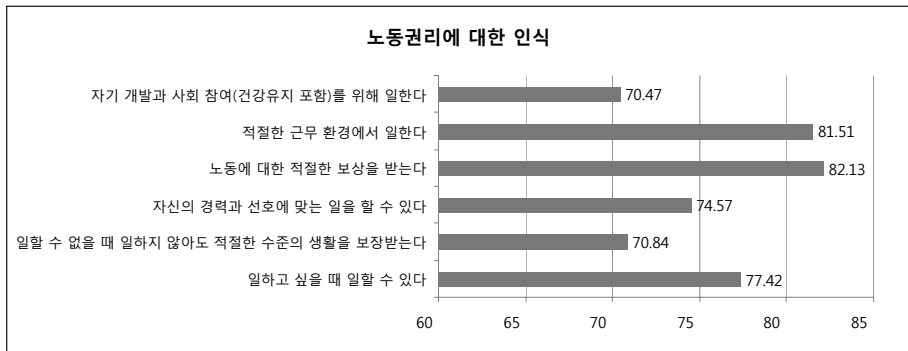
이런 노동경력의 특성상 은퇴와 정년퇴직에서 혼재된 인식이 보여지고 있다. 정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52%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를 위해서 또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정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44%를 나타내고 있어서 노인집단 내부에서도 정년퇴직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그림 9>).

정년퇴직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지만, 노후를 위해서 또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정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그에 못지 않아서 노인집단 내부에서 정년퇴직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런 양면적

인식은 현 고령자의 대부분이 안정된 조직부문에 노동한 경력을 갖고 있지 못한 배경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현 노인 대부분 비조직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직되고, 그러기에 이직과 전직이 빈번하였던 노동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과정은 어떤 정형화된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년제에 대한 인식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정년퇴직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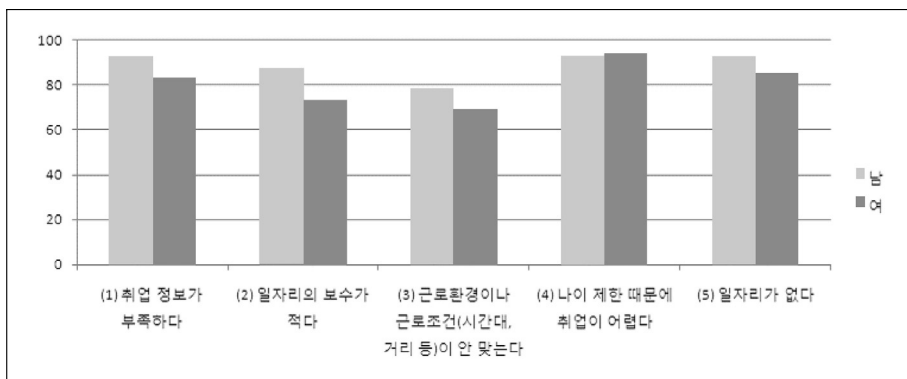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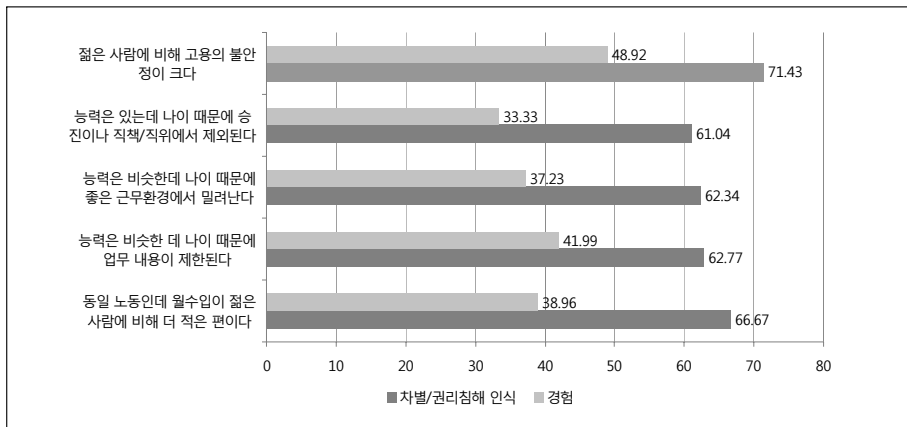


<그림 10> 노동권리에 대한 인식

흥미로운 결과는 노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인집단의 노동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10>). 노동에 관련된 일련의 질문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 76.2%가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노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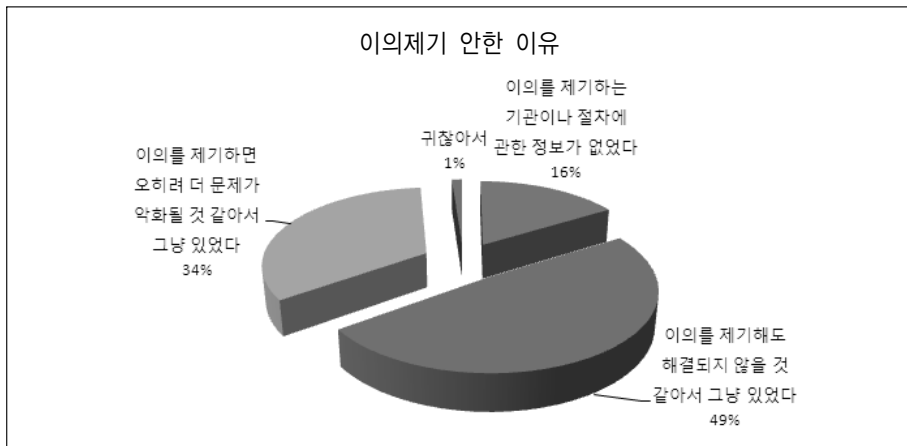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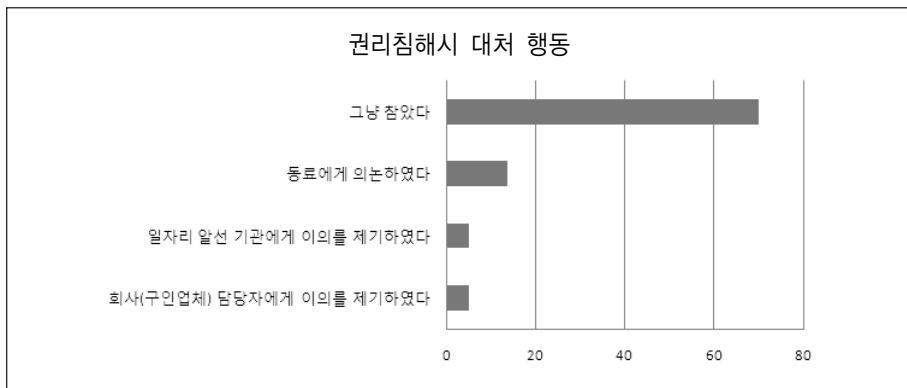
대한 보상과 적절한 근무환경을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80%가 넘을 정도로 높았다. 또한 남성 노인의 경우나, 학력이 고졸 이상으로 높은 경우 노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조사대상 노인은 노동지위에서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여러 정황들을 차별과 권리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동일노동인데 월수입이 젊은 사람에 비해 더 적은 것, 능력은 비슷한데 나이 때문에 업무내용이 제한되거나 좋은 근무환경에서 밀려나는 것, 젊은 사람에 비해 고용 불안이 큰 것을 권리 침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그림 11>). 그러나 일에 대한 강한 욕구와 노동에 대한 권리적 인식과 대조되어 많은 노인이 노동상황에서 권리 침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에서 나타난 노동권리 침해 경험을 보면 전반적으로 30~40%정도의 경험율을 보였고, 특히 고용불안정에 대해서는 50% 가까운 경험율을 보였다.



<그림 11> 일자리와 구직에서 권리 침해 경험

또한 구직경험에서도 권리 침해 경험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 노인의 90% 이상이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일자리 보수가 적고,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고, 나이 제한 때문에 취업이 어려우며, 일자리가 없는 것을 차별과 권리침해라 피력하고 구직경험을 한 노인의 대다수가 권리침해를 경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일자리와 구직 활동에서 권리침해 인식은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더 크게 인지하고 있는데, 여성은 취업가능성 자체가 크게 제약되는 반면, 남성 노인은 근무환경이나 승진 등 노동권 실현의 보다 높은 차원의 문제를 침해로 인지하는 차이도 발견된다.



<그림 12> 권리침해 시 권리 주장 및 대처행동

그런데 노동권 침해 경험과 침해 인식이 권리주장 행동과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권리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그냥 묻어두는 노인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69.9%)이 그냥 참았다고 응답을 하였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이의 제기했다가 문제가 악화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자리 또는 구직 현장에서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인식한다고 해도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노인은 노동의 욕구를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주로 단순노무직이고 일하는 주된 이유는 생계유지이지만, 적정수준의 생활비가 보장되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노동 욕구는 강하지만 질에 대해서는 낮은 욕구를 보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취약했던 노동환경의 경험과도 연관된다. 그리고 노년기 노동을 권리로서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상당히 높았다. 나이가 들어서 노동의 기회가 제한되는 조건(임금, 실업, 업무내용, 일자리 환경 등)을 노동권의 침해라고 인지한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강한 욕구와 권리인식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회는 크게 제한되어 있고 구체적인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정년의 규정을 부정하는 이유도, 그것이 노동기회의 차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기보다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 자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유에 따른다. 노인의 노동 차별의 인식은 안정된 노동기회에서의 배제보다는 일자리 기회가 제한되는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노인의 노동권 침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취약한 노동권 현실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 자기개발과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비단 노인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노동권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 속에서 노동에서의 연령차별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 노년의 긴장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근대적 생활방식과 노동조건이 취약하게 구조화된 한국 현실이 결합하여 노년이 노동에서 배제된 결과로 이해된다. 결국 노년의 노동과 은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전반의 안정성과 연관되어 연령차별의 시정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욕구가 강화되는 맥락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어렵고 의미 있는 시민사회 활동이 제한된

부분도 크다는 점에서 공공복지의 정립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3) 돌봄상황에 대한 불안과 부담

건강과 몸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건강은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중요시하는 가치가 되고 있다. 남녀노소, 직업,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이 삶의 필수 조건이 된다는 생각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소비 문화가 몸의 숭배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켰다는 지적도 있다(Nettleton, 1995).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기능, 자유, 성취, 권리, 주체와 같은 가치들이 삶의 내부로 확장된 과정과 밀접히 연관된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권의 보편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김창엽(2009)은 건강이 지니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능과 능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능은 삶 자체를 이루는 것으로, 적절한 영양섭취, 좋은 건강유지, 피할 수 있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조기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기능에서부터 행복한 생활, 자기존중,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좀 더 복잡한 활동, 기능을 포함한다. 결국 기능은 가치 있는 인간생활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김창엽, 2009:24)⁵⁾

이런 기술에서 삶-기능-건강으로 이어지는 기능주의적 인식의 계보를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삶은 무엇을 하는 기능/활동일 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공동체생활에 참여하는 활동들이 기능으로 인식되고, 인간생활을 가치 있게 한다고 인식된다. 삶의 가

5) 김창엽, 2009. “왜 건강 불평등이 문제인가?” 2009년 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공동학술대회.

치가 기능으로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은 기능으로 조직된 삶의 방식과 이 속에서 주체화된 정체성과 연관되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능은 주체의 적극적 자유의 성취와 연결된다. 기능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주체를 강화시키는 성취된 자유로 인식된다. 이처럼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대인의 삶이 기능으로 조직되었음을 가리키기도 한다. 건강이 중요한 것은 노동과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능을 개발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자유를 성취하는 조건이자 그 결과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된 삶에서 개인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구조화한다. 주체가 기능적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기능에 대한 권리인식은 기능적 가치가 삶과 주체화에 밀접히 연결되면서 규범화된 인식이다. 이렇듯 기능이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기능의 확보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되며, 기능의 기회가 불공평하게 제약되면 정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기능의 확보에 대한 개인적 노력도 사회의 책임도 중요해진다. 결국 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 중요해지고 기능이 개발되는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었다. 이렇게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기능/능력을 확장하려는 욕구는 기능을 결정하는 “개인, 물리/사회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을 찾아 관리하고 통제하는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능이 삶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 권리가 되면서 기회에의 제약은 권리 침해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건강 가치에 대한 기능주의적 인식의 확장은 노년에 커다란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건강이 기능으로 인식되고 건강을 유지 확대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욕구가 확장되면서, 질병의 경험은 기능적 장애로 인식되고 자아 정체성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병은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몸에서 분리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상태로 인식된다. 질환상태를 극복하여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이용도가 높고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

연장된 노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인 일반의 욕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확장되고 있지만, 노년이 활동과 기능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노화의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

하기 어려운 만큼 낙관하기 어렵다. 더욱이 노쇠와 질병의 경험은 그 자체가 삶의 중요한 경험이다. 다시 말하여 삶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불순물이 아니라 그 자체 삶의 한 요소로서 해석되고 경험된다.

결국 질환상태에서의 긴장은 노화와 질환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과 질환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이 지배한 영향도 크다. 따라서 삶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이 노년의 삶을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개인의 독립과 활동과 건강이 강조되는 만큼, 노쇠와 질병은 부정되는데 그 결과 노쇠와 질병을 경험하는 삶의 긴장이 커진다. 노년에도 기능과 활동성에 대한 욕구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렇다고 노화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화에 대한 불안과 부정심리가 커져 노화상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노인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독립과 자율의 가치가 돌봄의 권리와 긴장하는 부분이 크다. 독립성의 가치가 돌봄의 욕구를 부정하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돌봄은 노년의 자율과 존엄을 받치는 중요한 권리이다. 끊어진 기억에 참여하여 소통하기,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 불편함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중요한 돌봄 행위들이다. 평소 참관하고 있는 치매노인 보호시설에 어느날 입소한 할머니는 94살로 딸이 아무 말도 없이 낯선 곳에 돈 한 푼 남겨두지 않고 시설에 맡겨두었다고 배신감이 들어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자신을 왜 이 낯선 곳에 맡겼는지 혼돈스러워 했다. 3년 전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귀가 안 들리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하나 있는 아들이 74세인데 같이 있으면 아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딸 집을 갔다 왔다 하면서 딸의 집안 일을 돌보면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인지기능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설명은 중요하다. 시설로 옮겨질 때 충격을 받을까봐 정황을 이야기 하지 않는데, 충분하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불안을 덜해준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들 하나 하나가 소통의 신호들인 경우가 많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한다. 몸을 함부로 다룰 때 모멸감을 받는다고 한다. 혼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조건에서도, 그 삶의 의미를 존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돌봄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노년의 돌봄의 욕구가 억압되는 데는 돌봄의 가치에 대한 시민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것도 그 한 요인이다. 자신의 기능을 높이는 것보다 타인을 돌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타인을 돌보는 일은 훌륭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우며 긴병에 효자 없다고 인식된다. 현장, 공무원, 학자들이 모여서 노인상담, 학대예방,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돌봄과 관련된 실태 분석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돌봄은 노인에서 탈각되어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대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관리 등 프로그램화된 돌봄을 노인의 몸에 채워 넣는다. 이렇게 학계와 복지 현장 그리고 정책 결정자는 노년의 돌봄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노인은 그들이 기획한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주변화된다.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상호작용이 돌봄의 관계이다. 돌봄의 관계도 삶의 한 부분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관료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제공은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의미를 헤아리는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돌봄이 관계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돌봄의 성격과 질이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의미한다. 책임과 부담 인식에서 수행된 돌봄은 돌보는 사람에게도 노인에게도 불우하다. 대가가 없는 희생이라고 규정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자가 권력화되기 쉽다.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면서 소홀한 돌봄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은 침묵하거나 부담을 주는 데 두려워하고 미안해하거나 필요한 요구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돌봄은 양질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약자’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돌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낮은 임금과 불안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기 쉽다. 그들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자기 존중감에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내몰릴 수 있다. 여성학자들은 돌봄을 수행하는 자의 비자발적 상황에 주목한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주변화된 돌봄

노동에 몰려 있는 것은 남녀간 불균등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돌봄을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노동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돌봄을 노동으로 인식하면서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성과 그것이 노년의 자아나 돌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흐름도 강해질 수 있다. 교환의 가치가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 만일 가족수발자에게 급여를 보장한다면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작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오히려 도덕적 무게를 벗어던지게 하는 결과를 갖는다는 논의도 있다. 마음이 경제적 보상에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돌봄의 자발성은 돌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의 안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감정 상태이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돌봄을 받는 자의 기대와 돌봄의 질이 큰 차이가 난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부부는 성불평등한 부부 역할에 오랫동안 익숙하여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는 일은 여성의 소관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남성이 돌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그 부정적인 정서가 아내에게 전가되고 돌봄의 실질적 영향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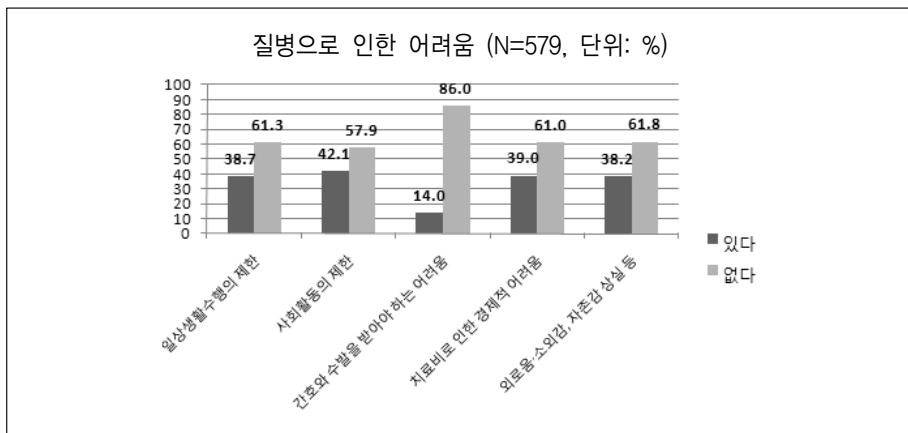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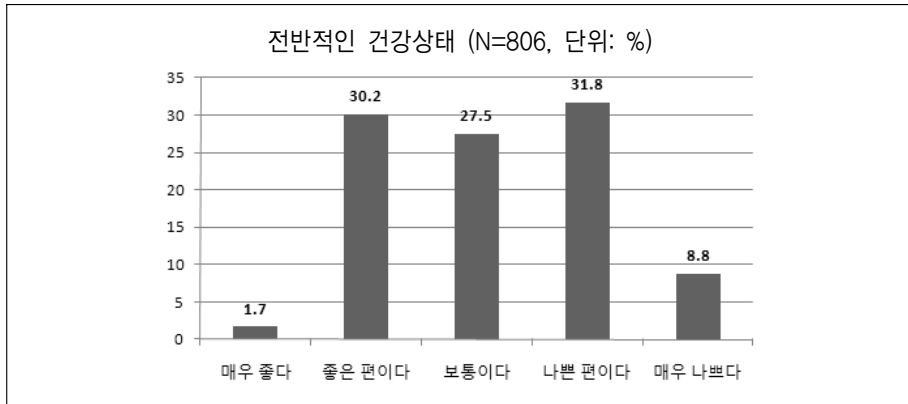
사회보험제도가 시장화에도 기여하고 사회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공동재로 마련하는 의미에서 사회화의 효과도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복지현장의 자생력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태도가 확장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돌봄 제공이 수익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변화되면서 경쟁논리가 강화되고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전략도 강화된다. 상품화로 인해 수요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고 하지만 돌봄의 관계가 거래로서 인식되는 결과도 있다.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의 친숙한 관계와 상호작용이 탈각되고 돌봄 행위 하나 하나가 상품화된다.

장기요양보험 정책이 실시된 이후 돌봄의 공급체계가 양적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확장된 돌봄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돌봄의 가치를 가족의 무조건적 희생과 책임 인식을 넘어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

도, 돌봄의 윤리적 토대를 인식할 수 있는 토양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돌봄을 대신할 사회적 돌봄의 주된 담론은 돌봄공급체계의 양적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정부가 선택한 돌봄 정책도 돌봄의 도덕적 가치를 쉽게 뒷전으로 내팽개칠 수 있는 경제논리 일변도의 민간 영역 육성으로 구축된 부분이 있다. 이런 돌봄 지형의 대변환 속에서 자발적으로 돌봄의 가치를 추구했던 여러 시민 사회 활동들이 관료제적 규제와 계약원리로 재해석되고 있는 돌봄의 가치들에 잠식되고 있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현대의 기능 중심 삶의 방식들이 중첩되는 사회구조적 특성 속에서 돌봄의 긴장 징후들이 표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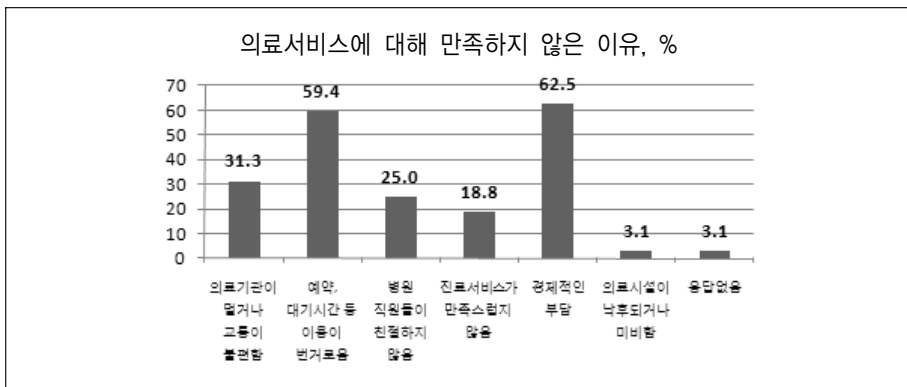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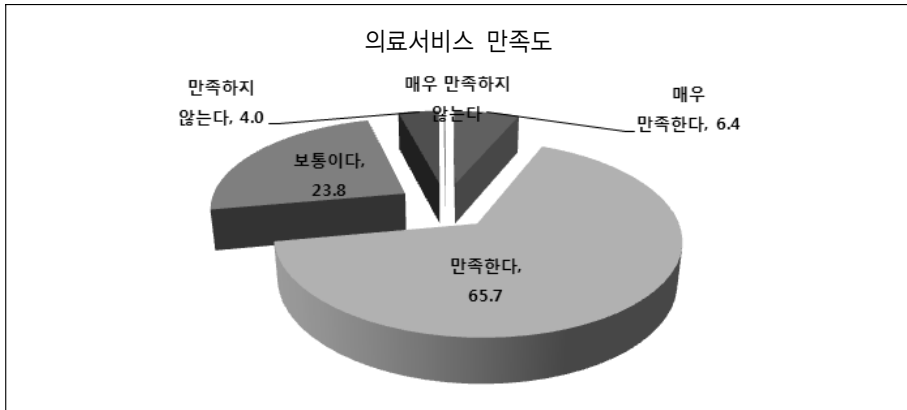
<노인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응답자의 31.9%가 ‘매우 좋다’ 또는 ‘좋다’로 응답하였고, 27.5%가 ‘보통이다’로, 40.6%가 ‘나쁜 편이다’ 또는 ‘나쁘다’로 응답하였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의 결과(박명화 외, 2009)와 비교할 때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⁶⁾.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여성 응답자는 남성 응답에 비하여 ‘나쁜 편이다’ 또는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쁜 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38.7%의 노인이 일상생활의 제한에 대한 어려움, 42.1%의 노인이 사회활동의 제한에 대한 어려움, 14.0%의 노인이 간호와 수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39.0%의 노인이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38.2%의 노인이 외로움·소외감, 자존감 상실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3>). 최근 1년간 가장 자주 이용했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의 72.1%로 나타났다(<그림 14>).

6)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하다(매우 건강하다: 2.9%, 건강한 편이다: 26.6%)’가 29.5%, ‘보통이다’ 14.9%,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43.2%, 매우 건강하지 않다: 12.4%)’가 55.6%로 보고됨(박명화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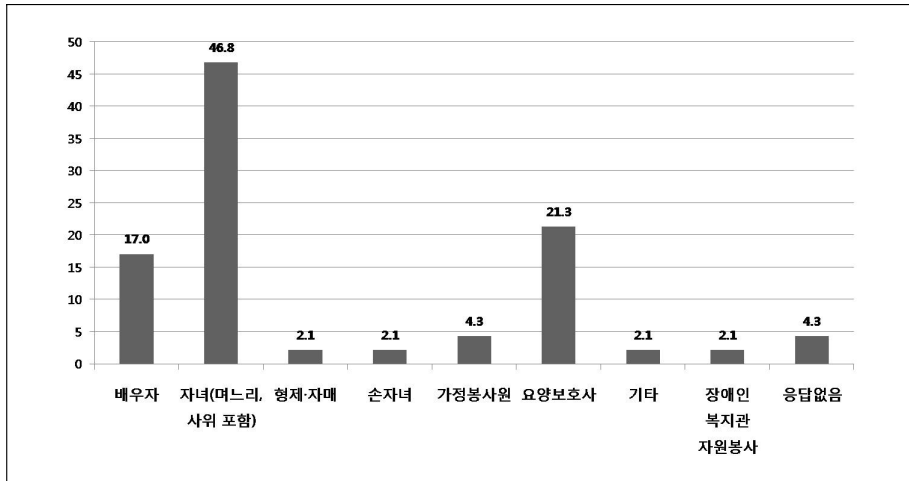
<그림 13> 노인의 건강상태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62.5%), 예약, 오랜 대기시간 등 이용이 번거로워서(59.4%),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31.3%), 병원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아서(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주부담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전액 부담이 5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 전액 부담(18.4%), 자녀 일부 부담(16.2%)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의료비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담된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의 57.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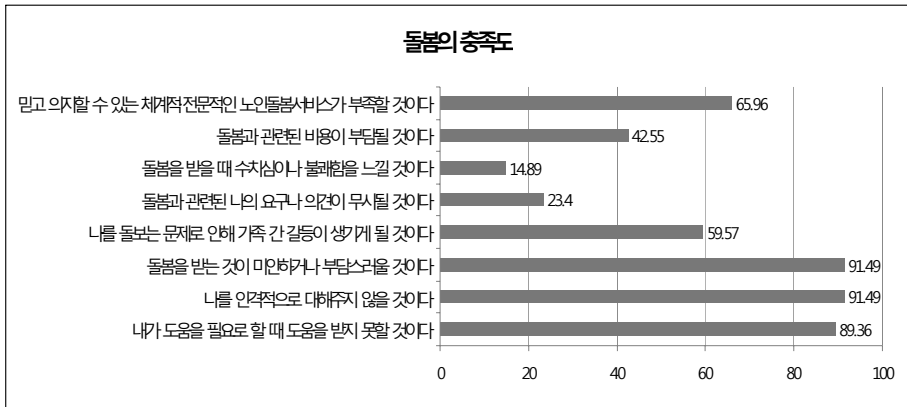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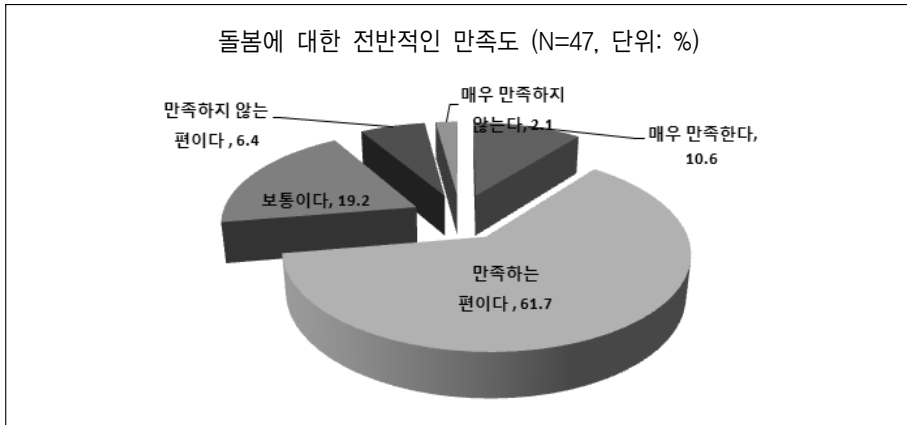
<그림 14>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만족하지 않은 이유

이 연구에서 현재 질병이나 신체적 기능의 제한 또는 장애 등으로 식사준비, 목욕, 방청소 등과 같은 도움(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5.8%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평균 수발 기간은 5.0년(표준편차: 5.9년)으로 조사되었다. 돌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47명의 노인의 주 간병수발자는 자녀(46.8%), 요양보호사(21.3%), 배우자(17.0%)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5>). 이는 배우자, 장남·며느리, 그 외 아들·며느리, 유급간병수발자(가정봉사원, 간병인 등)가 주 간병수발자로 조사된 2008년 노인실태 조사의 결과(박명화 외, 2009)와 비교했을 때 가족이 노인의 주요 돌봄자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다는 응답이 본 연구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돌봄지원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지형을 읽을 수 있다.



<그림 15> 주돌봄자 (N=47, 단위: %)

전반적으로 노인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잘 돌봐주고, 노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돌봄에 대한 불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도 유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잘 돌봐준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89.3%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과 관련된 노인의 요구나 의견이 무시된다고 응답한 노인은 23.4%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을 받을 때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노인은 14.9%로 나타났다. 돌봄과 관련된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노인은 42.5%로 나타났고, 현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66.0%로 나타났다. 현재 돌봄을 받는 것이 미안하거나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노인은 91.5%로 나타났고, 돌봄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게 될까 염려된다고 응답한 노인은 59.6%로 나타났다.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부담스러움,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염려는 주돌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경우 돌봄을 받을 때 느끼는 미안함이나 부담스러움, 가족 갈등에 대한 염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 돌봄에 대한 만족도

아직까지 돌봄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과 긴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족으로부터의 돌봄이 가족이나 노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전통적인 가족부양관계의 약화로서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부양관계에서는 대를 통해 돌봄을 교환하는 것이 당연하였는데 그 당연한 주장이 오늘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감정이 표출되는가 하면,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돌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태도도 노인의 인식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나아서 길렀는데 자식이 어뎜 죽을 때 편안하게 해야지. 자기는 늙지 않나. 자기도 그만한 고생은 좀 해야지. 그러면 못써. 사람은 외쪽 사랑은 없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이만큼 길러서 출가를 시켰는데, 나도 우리 할머니라든지 엄마라

든지 그만큼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야지 하늘에서 하나님도 좋게 보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게 사는 거야. 부모를 귀찮게만 생각하면 안돼. 사람은 좋은 마음을 먹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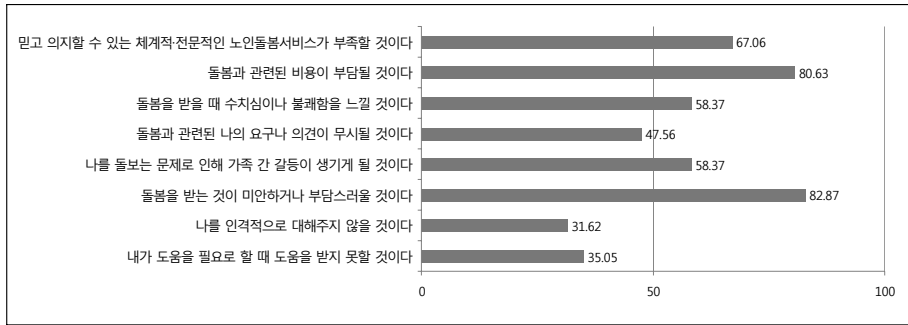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노인 FGI>

그래도 현재까지 아직까지 젊었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 콜택시 불러서 내 스스로 가고 싶지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 아직은 없어요. 몰라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왜냐 하면 나는 성격이 좀 묘한지,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내가 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맡은 안하는 데, 현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은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건강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콜택시 불러서 혼자 가지 뭐 누구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일반노인 FGI>

가족돌봄의 긴장은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돌봄의 자기 결정권의 침해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어떠한 돌봄을 받을지에 대하여 노인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기보다는 가족의 가치와 의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노년의 돌봄과 노인의 인권이 오히려 가족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돌봄과 관련된 노인의 요구나 의견이 무시된다고 응답한 노인이 23.4%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입소 시 노인의 의견보다는 가족들이 원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돌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노인이 돌봄을 받는 것이 미안하거나 부담스럽고, 자신을 돌보는 문제로 인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될까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돌봄을 받는 것이 미안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돌봄 관련 사회적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다수의 노인들은 현재 돌봄과 관련된 비용이 부담된다(42.6%)고 응답하였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66.0%)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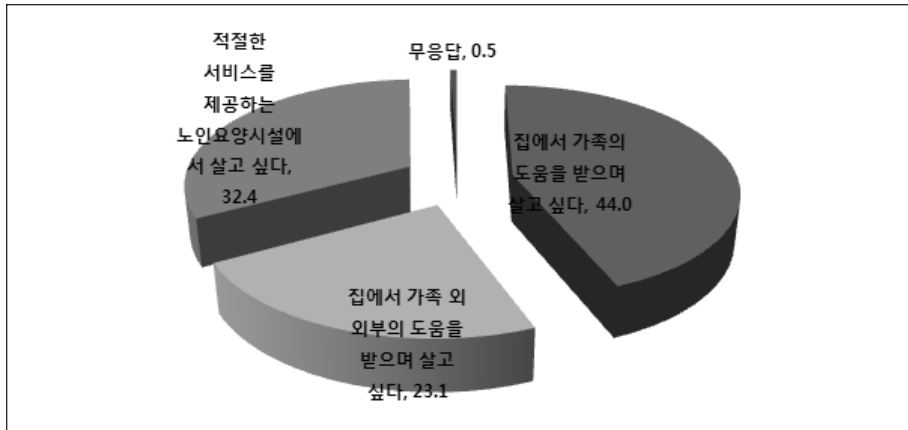


<그림 17> 돌봄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

한편 노인들의 돌봄에 대한 선호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 연구 결과 추후 건강상태가 나빠져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어떤 거주 형태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 44.0%의 노인이 집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32.4%의 노인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23.1%의 노인은 집에서 거주하되 가족 외 요양보호사, 간병인, 복지서비스 등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돌봄의 주제공자에 대한 선호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등의 (준)전문가(32.3%), 배우자(29.0%), 아들·며느리(28.5%)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 2008년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보다 가족 외 외부의 도움(요양보호사, 간병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⁷⁾.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가족에게 돌봄을 받기보다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기 원하는 태도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선호에서 남녀의 성별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돌봄제공자로 여성노인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등의 (준)전문가(37.6%), 아들·며느리(36%), 배우자(13.1%), 딸·사위(6.8%)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49.5%), (준)전문가(25.4%), 아들·며느리(18.7%)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 노인은 전문요양사와 자녀에 기대하는 태도가 강하고, 남성 노인은 배우자로부터의 돌봄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7)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오랜 기간 간병을 받아야 할 경우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42.2%),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고 싶다(35.2%),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21.3%)로 조사되었다(박명화 외, 2009).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돌봄을 선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아들·며느리의 돌봄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준)전문가에 의한 돌봄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대별로 고른 비율로 나타난다.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로부터의 돌봄을 선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의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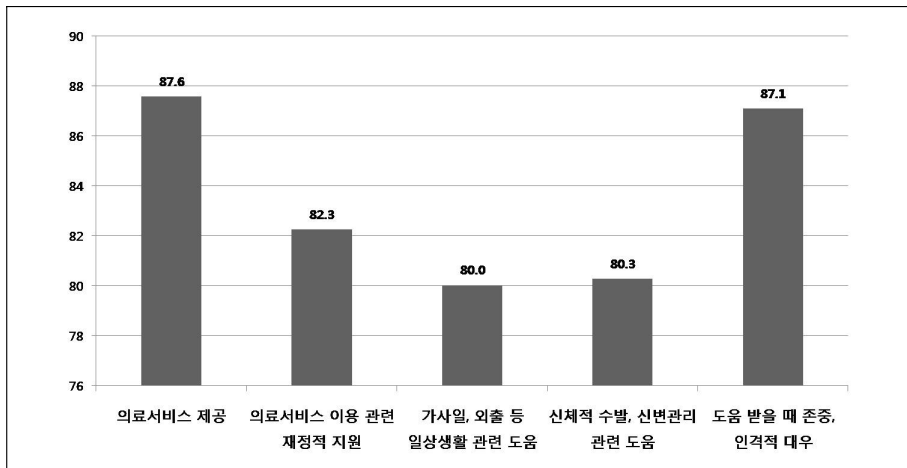
<그림 18> 선호하는 돌봄 장소

<표 4 > 선호하는 돌봄제공자

(단위: %)

	선호하는 돌봄제공자				계(N)
	배우자	아들·며느리	(준)전문가	사회단체	
성별					
남	49.6	18.7	25.4	3.0	331
여	13.1	36.0	37.6	3.7	428
연령					
65-69세	37.9	21.5	30.5	3.4	325
70-74세	26.5	27.0	37.6	2.1	189
75-79세	21.3	36.2	28.4	5.7	141
80세 이상	16.4	42.3	33.7	2.9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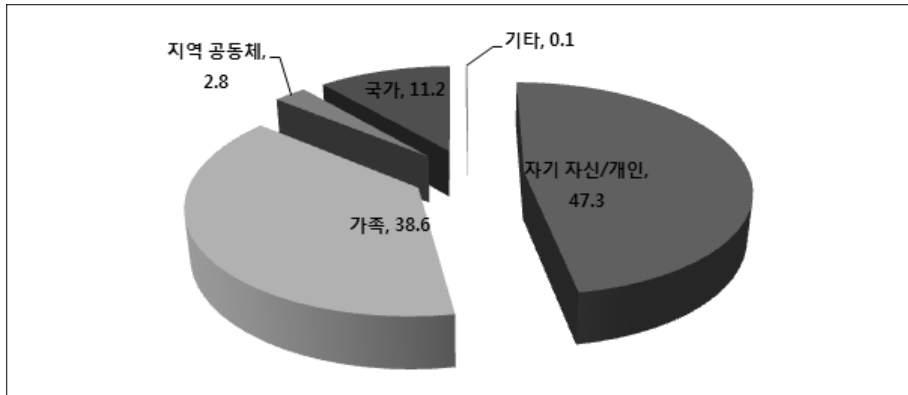
	선호하는 돌봄제공자				
	배우자	아들·며느리	(준)전문가	사회단체	계(N)
학력					
고졸 이상	42.6	16.9	31.1	2.7	148
중학교	44.3	17.1	27.1	3.6	140
초등학교	22.5	35.2	32.8	3.6	253
초졸 미만	17.0	35.9	36.3	3.3	212
소득수준					
최상위25%	41.1	18.9	33.5	2.2	185
중상위25%	33.1	25.7	32.0	2.9	175
중하위25%	17.5	33.3	35.1	4.7	171
최하위25%	24.1	37.9	25.3	4.6	174



<그림 19> 노후 돌봄에 대한 권리의식 (N=806, 단위: %)

그런데 많은 노인이 돌봄을 받는 상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돌봄을 받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면성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고 일상생활, 신체적 수발/신변 관리를 받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 존중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19>). 조사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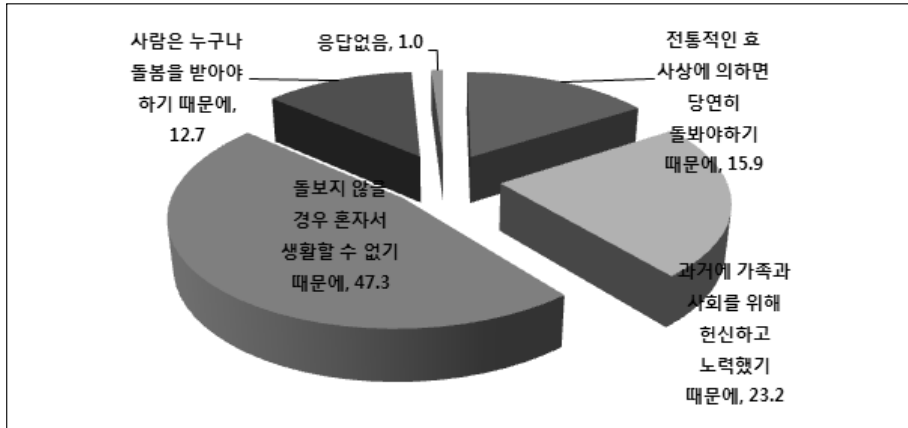
은 한편으로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하고, 일상생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런 도움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는 것이 권리라고 응답한다. 그런데 권리로서 인식하면서도 책임 주체에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는 약하다(<그림 20>).



<그림 20> 노후 돌봄에 대한 책임 (N=759, 단위: %)

돌봄의 욕구와 권리인식은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고착되어 있다. 권리 책임의 주체로서 가족이 강조되는 것은 가족 중심으로 노년의 돌봄이 규정된 전통의 영향을 반영한다. 경제적 부양에서도, 신체적 돌봄에서도 가족은 책임의 주체로서 인식된다. 또한 가족 돌봄의 책임에 호소하면서도 부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부양 인식의 약화를 반영한다. 다른 한편 돌봄의 권리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강조된다는 것은 돌봄을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돌봄은 개인의 자원으로 구입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돌봄의 권리는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합의에 기초하기보다는 개인이 소유한 자본이나 권력에 따라 지지되는 경향이 주목된다. 이런 맥락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처럼 자원지위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봄의 권리 인식이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개인화된 관점에서 시장 거래에 기초한 돌봄의 권리인식이 확장될 수 있지만, 역시 기능/능력의 관점에 포섭되는 긴장이 잠재한다.

돌봄의 가치가 확고하게 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돌보아야 하는가”는 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다. 가족부양의 규범이 약화되고 있고 돌봄의 가치와 정의를 해석하는 관점이 부재한 가운데, 노인들은 돌봄의 제일 중요한 이유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한다. 인류애, 효의 가치, 사회적 기여 등의 규범 어떤 것보다 절박한 이유가 생존,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이다(<그림 21>).



<그림 21> 돌봄의 이유 (N=806, 단위: %)

연장된 노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인 일반의 욕구가 되고 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들이 확장되고 있지만, 그러나 노년이 활동과 기능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노화의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낙관하기 어렵다. 더욱이 노쇠와 질병의 경험은 그 자체가 삶의 중요한 경험이다. 다시 말하여 삶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불순물이 아니라, 그 자체 삶의 한 요소로서 해석되고 경험된다.

조사 참여자는 돌봄의 욕구가 강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봄을 받는 것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상황에서 존엄성이 크게 훼손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인식한다. 돌봄 상황을 부담스럽고 미안하도록 우리의 문화가 강제하고 있다. 미안함과 부담감을 내면화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을 외치는 노인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있다. 돌봄이 긴장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부양의 틀이 약화된 때문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해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나치게 기능 만능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비롯하였을 수 있다.

노년의 돌봄이 긴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유병장수의 기간이 압축적으로 확장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현대적 삶의 방식에 비롯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과제들이 강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노력들 자체가 노화와 돌봄을 부담스럽게 하고, 노년이 기능과 개별화의 기획에 포섭되게 하는 딜레마를 가진다. 권리인식은 확장될 수 있지만 그것을 견인하는 힘이 개별적 주체화일 경우, 기능 일변도의 삶과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취약한 노인의 소외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노화와 질병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회가 요구된다. 선언적인 돌봄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돌봄의 관계 속에서 삶의 한 부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강제된 무역함과 노년 정체성의 긴장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년을 부정하는 기제들은 복합적이다. 많은 노인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생계비를 보조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의존적인 상황이 남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인식되는데에 자괴감이 크다. 독립과 돌봄의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는 현 노년세대에 국한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메카니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한다. 그것은 기능,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현대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생애 불평등이 누적되는 노동-복지구조,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토대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족중심 부양체계의 모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차별 기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구조적 억압 속에서 노인들의 독립성과 돌봄의 기회가 제약되는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역시 이런 구조적 억압기제들의 영향으로 크게 제약되고 있다.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들은 대부분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표 5>). 조사 노인들은 상당부분 배우자나 자녀들과 같이 가족 내에 그들의 관계가 한정되어 있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 주로 배우자(32.3%)나 가족(11.3%)과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 노인의 43.6%였으며, 비슷한 나이의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준인 43.4%로 나타났다. 직장

동료 및 직장 사람(4.3%)과 같은 공적영역이나 혹은 젊은 세대의 지역주민(7.1%)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 이 결과는 우리사회의 노인들이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대부분 가족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노인을 위한 원칙에서는 세대간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나이로 균림하려는 장유서열 문화를 거부하고, 나이든 세대는 자신들이 사회의 무능력자로 몰려지는 데 배신감을 가진다. 소통의 부재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 상대적으로 노년세대의 지식과 기술이 저평가되고 있을 수 있다. 서로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를 부정하는 태도는 소통을 방해한다. 정보와 기술이 생활환경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노인이 일상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표 5> 노인들의 일상적 주요 관계 (전체노인)

	배우자	배우자 외 가족	비슷한 나이의 친구	직장 동료 및 직장 사람	나보다 어린 지역 주민 (이웃, 교회나 사찰 신도)	간병인이나 기관 종사자 (사회 복지사나 간호사 등)	기타	계
전체	32.3	11.3	43.4	4.3	7.1	0.6	1.0	
성별								
남	50.3	4.6	32.9	6.4	4.6	0.6	0.6	100.0 (346)
여	18.7	16.3	51.3	2.8	8.9	0.7	1.3	100.0 (460)
학력								
고졸 이상	28.5	9.3	13.9	34.4	7.3	2.6	4.0	100.0 (151)
중학교	45.5	12.6	5.6	25.2	4.2	0.7	6.3	100.0 (143)
초등학교	51.3	15.1	12.5	14.3	4.2	0.4	2.3	100.0 (265)
초졸 미만	54.2	11.9	10.6	16.1	3.4	0.0	3.8	100.0 (236)
소득수준								
최상위25%	34.6	10.8	10.3	33.0	7.6	0.5	3.2	100.0 (186)
중상위25%	49.7	13.5	7.6	20.5	4.3	0.5	3.8	100.0 (185)
중하위25%	52.7	9.1	12.4	17.2	4.3	1.1	3.2	100.0 (185)
최하위25%	49.5	15.4	13.8	14.4	2.7	0.0	4.4	100.0 (188)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친목단체나 종교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6>).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친목단체(51.4%)였으며, 다음으로 종교단체(47.8%), 운동단체(19.7%), 문화활동(9.5%),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직능 단체(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주로 사적활동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등을 포함하는 친목단체는 주로 남성, 낮은 연령, 높은 학력, 높은 소득의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목단체는 새로운 관계라기보다는 대부분 노년기 이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오랜 유대도 자원에 의존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 참가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가율이 더 높았다.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과반수(55.4%)가 참가하고 있었으나,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37.6% 정도에 머물렀다. 다른 사회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여성과 고연령 노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종교 활동이다.

운동단체의 경우에는 남성,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초졸 미만의 노인의 경우에는 8.4%만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고졸이상 학력의 노인들은 약 3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계층별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노년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스스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질색한다. 일선에서 벗어난 처음 얼마간은 넘쳐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교양과 학습 활동을 섭렵한다. 무역할을 거부하면서 사회에 계속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배우고 자격증도 따지만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이방인이라고 느낀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계들이 한시적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오래된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하지 못하였지만 노년에는 공동체를 위하고 남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노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공동체와 서로 어우르는 삶의

가치는 젊은 시절부터 습관화되어야 할 가치이다. 이렇게 나쁜 사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방법들을 찾는 노인들은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사 노인들 중에서 문화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약 10% 정도만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교육 프로그램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은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상설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하루 천여명이 넘는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장의 사정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성, 고연령 노인 그리고 저학력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들 노인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정보에서 더욱 소외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여전히 상당수의 노인들이 최소한의 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장애들이 있음을 가리킨다. 학력이 낮은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인들이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공식적 메스컴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주변 노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해 한이 있을 만큼 교육 욕구가 강함에도 젊어서부터 경험한 낮은 학력에 대한 차별이나 배운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위축감으로 쉽게 교육의 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도 상당수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응답을 한 노인들은 여성,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수준인 경향이 컸다. 또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아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그만 둔 노인들도 상당수(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인의 참여와 자기개발의 욕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고, 노인의 소속감 및 자존감을 높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사

회의 부담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자원봉사에 노인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약 16.3%의 노인들이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졸 이상 학력 노인들의 경우는 평균의 2배 가까운 자원봉사 참여도를 보였다.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고학력 노인일수록 의존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은 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전환되기 쉽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지출 중 많은 몫이 노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대간 형평성 논의는 주로 복지정책의 개혁과정에서 제기되며 사회정책의 지출을 통제하는 이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년층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과장하여 사회불평등이나 리더십 실패의 책임이 회피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 결과 극히 일부의 노인만이 정치/직능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 노인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들이 있을 때 노인 단체를 찾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노인들이 모이는 거리에는 정치집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선거지형에서는 세대간 정치관의 대립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일반 여론의식조사에서도 미군, 북한, 통일, 지지정당 등 중요한 정치적 상징에 대한 태도에서 연령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통계는 노년층을 정치·문화적 보수집단으로 요약한다. 선거 때마다 인물이 아닌 ‘보수정당소속’의 출마자에게 표를 던진다고 인식된다. 홍덕률(2003)은 1960년대 산업화를 이끈 세대의 특성을 물질주의와 정치적 보수성으로 규정하였다.⁸⁾ 현 노인 세대의 물질주의 의식은 한편으로 고도성장을 이끈 추동력이었고 또한 그 결과이기도 한 집합 심성이었다고 한다.

8)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역사비평』 64호(가을): 150-191.

절대적 빈곤상황에서 일차적인 목적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고, 내일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착같이 생존을 위해 살아야 했다. 또한 현 노인 세대의 정치적 보수성은 산업화, 군사문화, 정치적 권위주의의 이념이 지배했던 사회변동의 산물인 반면 한국의 보수주의 성격을 떠받치는 강력한 토대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유보될 수 있다’고 믿으며 반공주의와 냉전주의의 영향 속에서 국가안보와 성장제일주의를 절대시하는 입장을 지닌다. 이러한 보수주의는 이승만정권이래 박정희 군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 이념이자 질서의 원리였다고 강조한다.

현 한국 노인세대가 실제로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가는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세대의 정치적 보수성은 남녀, 계층적 지위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태도이다. 노인의 정치의식은 빈곤과 사회적 소외 등 노년에 겪게 된 고통과 생애를 통해 내면화하였던 물질주의와 냉전의식, 그리고 권위적인 가족관계 등 잃어버린 권위에 대한 박탈의식이 결합되어 직조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주체적인 노년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세대 소통을 막고 있는 집합적 의식들에서도 변화가 고려되어야 된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곳곳에서 연대와 소통을 만드는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에서도 정치적으로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표 6>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율

	전체	남	여	고등	중학교	초등	초등이하
컴퓨터.인터넷이용	11.3	15.6	8	27	16	6.8	3.8
평생교육	19.2	17.3	20.7	25.7	17.4	20	16.9
자원봉사	16.3	17.3	15.8	20.9	15.4	14.1	11.7
친목단체	51.4	61.6	43.7	77.6	54.9	50.2	33.1
종교단체	47.8	37.6	55.4				
운동단체	19.7	27.7	13.7	30.3	29.9	19.9	8.4
정치직능단체	3	4.3	1.5	5.9	2.8	2.7	0.8
문화활동	9.5	9.5	9.6	18.4	13.2	8.7	2.5

이처럼 노인의 사회적 활동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층별 차이가 부각된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오래된 유대를 지속하거나, 자원봉사, 운동단체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친목활동을 제외한다면 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욕구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원이 취약한 노인의 경우 정치, 사회, 문화적 활동에 배제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역할’의 강제는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사회활동에 주체가 부여하는 의미는 다양하다. 한편으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치들을 활동을 통해서 내면화한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높인다. 친목을 도모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학습과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화된 자신의 복리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기대가 깊숙이 들어있다. 그런데 사회활동의 제한은 자연스런 노년의 적응 과정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에 의한 강제적 이탈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많은 노인이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인식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7>).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노인에 대한 연령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조사 노인의 약 40%가 우리사회가 노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조사 노인의 약 20%가 스스로 나이로 인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차별인식은 주체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남성과 고학력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더 많이 경험했을 수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차별인식이 더 낮은 것은 권리주장도 힘이 있어야 가능함을 보여준다.

<표 7> 노인들에 대한 차별과 차별 경험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차별	나이로 인한 차별 경험 유무	계
전체	40.3	19.7	100.0 (806)
성별			
남	42.5	22.0	100.0 (346)
여	38.7	18.1	100.0 (460)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차별	나이에 의한 차별 경험 유무	계
학력			
고졸 이상	45.3	21.7	100.0 (152)
중학교	44.4	21.5	100.0 (144)
초등학교	36.6	18.9	100.0 (265)
초졸 미만	38.1	18.4	100.0 (239)

노인이 인지하는 차별이 일어나는 곳은 가족, 직장, 일상생활, 공공기관 서비스, 정부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표 7>). 또한 차별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지만 많은 노인이 가족내에서 존중받지 못하며, 공공시설에서 불충분한 배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세대가 누구인지를 물어본 결과 6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응답은 7.5%에 머물렀으며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정보가 노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6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사적관계와 사회활동에서 차별받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남성, 젊은 연령, 고학력, 고소득 수준의 노인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표 7> 차별 경험 장소

	차별경험자 중 (156명)
가족 안에서	17.6
직장이나 구직활동에서	29.6
소비, 문화, 여가 등 일상생활에서	43.4
공공기관 서비스에서	28.3
정부나 정책에서	10.1
기타	3.1

많은 노인이 가족, 일상생활, 공공의 장소에서 차별이나 불충분한 배려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노년을 부정하는 다양한 메카니즘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가리킨다. 노인의 가장 주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서도 홀대받는다라는 인식은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세대간, 젠더간 역학관계의 변화에 수반된 갈등 상황을 반영한다. 물질적 자원이 취약한 노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부양 부담이 정서적 학대상황으로 이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다. 소비, 문화, 여가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은 소비능력의 결핍 상황 속에서 평소 경험하는 위축감과 부담의 시선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노동에서의 차별 인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년의 노동기회가 제약되고 주변적 노동자로 취급받는 사회를 인식한 태도일 수 있다. 공공기관 서비스나 정책에서 차별 인식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상황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권위에 대한 박탈의식이 덧붙여진 정치적 불만 의식의 표출일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단순히 ‘연령’ 혹은 노화의 이유로 이루어진 차별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모순, 세대소통을 제약하는 권위/연고적 문화, 노동시장의 불안,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의 취약, 정책결정 참여의 제약 등의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점이 세대관계로 표출된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를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지배적이다(<표 8>).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태도를 보인 응답은 무려 45.8%에 이르렀다. 또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23.1%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연령차별이 부당하다는 인식은 남자와 낮은 연령의 노인들이 그리고 고학력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많은 고령 노인이나 여성, 저학력, 노인은 더 많은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념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만성화된 차별 경험에서 기인한 무력감일 수도 있다.

<표 8> 나이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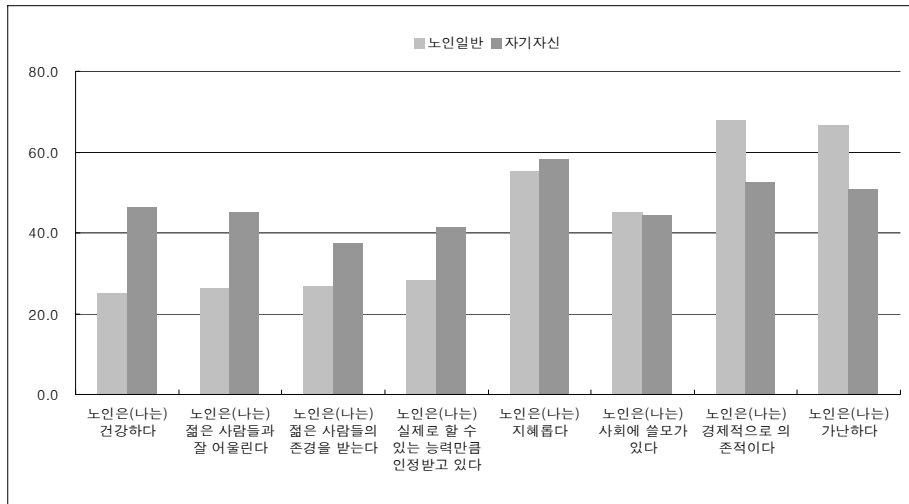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다	부당하므로 바로 고쳐져야 한다	계
전체	23.1	45.8	31.1	100.0 (805)
성별				
남	21.7	38.3	40.0	100.0 (345)
여	24.1	51.5	24.3	100.0 (460)
학력				
고졸 이상	19.7	42.1	38.2	100.0 (152)
중학교	16.0	37.5	46.5	100.0 (144)
초등학교	22.3	48.3	29.4	100.0 (265)
초졸 미만	30.7	49.6	19.7	100.0 (238)

이처럼 노인은 다양한 논리로 결합된 복합적 불평등 구조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년은 비생산적이라 규정되고, 무능력/의존의 편견으로 분리시키고, 권위적이라고 기피되고, 우월자의 시선에서 희화화되고, 노년의 요구가 배제된다. 노년의 몸, 인지능력, 태도는 부정적인 시선에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작업장, 사회복지제도 접근의 불리가 노년에 누적되고 압축되는 위험이 크다. 내부 긴장이 많은 가족부양체제 속에서 세대의 소통, 돌봄, 친밀함이 확대될 수 있는 시민 공동체적 토대도 취약하다. 이런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노년은 무능과 의존, 그리고 비합리적 보수지향으로 규정되고 타자화되고 삶의 제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나이들의 경험이 숨겨지고 왜곡되면서 ‘나이듦’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부정되고 배제된다.

노년을 부정하는 환경에서 노년의 자아가 많은 긴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 한 양상이 부정적인 노년상에 일방적으로 접촉되면서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면화하는 것이다(<그림 22>).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이미지는 건강하지 못하며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젊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며, 실제로 능력만큼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가난하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긍정적 이미지 중 과반수를 넘는 범주는 지혜로움뿐이다. 현 노인은 이처럼 노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노인에서 분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인 일반에 대한 인식과 자기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긍정적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부정적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노인 일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질문은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과 젊은 사람들과의 어울림(세대 교류)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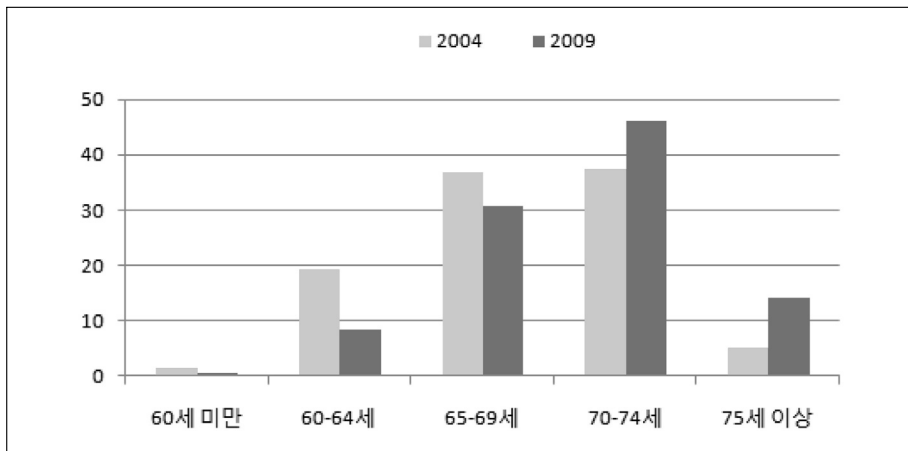
이런 차이는 한편으로 노인 이미지가 노인의 실제 경험과는 맞지 않음을 가리킬 수 있다. 많은 노인이 활력을 유지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독립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험이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묻혀버리는 사태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이미지와 개인 경험의 차이는 개별적 경험과 일반적 노인 이미지의 맞지 않음이 많은 노인들의 경험에서도 해당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황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활동성을 강조하는 노인들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면화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2> 노인에 대한 인식과 자기 인식간의 차이

부정적 노인 이미지의 내면화와 그 이미지로부터의 자신의 분리는 노년을 정의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그림 23>). 노인이 되는 연령에 대해 57.5%에 이르는 노인들이 70세 이후로 보고 있으며, 연령과 상관없다는 의견도 4.6%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들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늦게 정의할수록 자신의 노년을 더욱 적극적인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년을 정의하는 경향은 남자에서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욕구도 노년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서 주목할 또 다른 사실은 이렇게 노년을 더 늦은 연령으로 정의하는 태도가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2004년 노인복지욕구실태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65세 미만과 일반적인 기준인 65~69세 사이 연령을 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3> 노인연령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4, 2009

<표 9> 스스로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지 여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전체	62.4	37.6	100.0 (806)
성별			
남	50.0	50.0	100.0 (346)
여	71.7	28.3	100.0 (460)
연령			
65-69세	36.2	63.8	100.0 (329)
70-74세	74.8	25.2	100.0 (206)
75-79세	79.7	20.3	100.0 (148)
80세 이상	91.1	8.9	100.0 (123)
학력			
고졸 이상	42.1	57.9	100.0 (152)
중학교	46.5	53.5	100.0 (144)
초등학교	65.3	34.7	100.0 (265)
초졸 미만	81.6	18.4	100.0 (239)
소득수준			
최상위25%	37.6	62.4	100.0 (186)
중상위25%	63.2	36.8	100.0 (185)
중하위25%	74.3	25.7	100.0 (187)
최하위25%	74.6	25.4	100.0 (189)

노인을 정의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조사결과 65세 이상의 연령 중에서 약 40% 정도는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스스로를 노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노인’이라는 연령적 정의가 노인들에게

는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부정적인 노인관은 사회참여나 노년의 주체적이고 독립된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참여가 한정되고 남편 혹은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여성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년의 기간은 현역의 어느 시간보다 긴 기간이 되었다. 다양한 시공간에서 현역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노년이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몰려 들어온다. 다양한 삶의 이력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진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년 안으로 진입하면서 큰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은 직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다. 조직화된 노동에서 벗어난 경험은 막막함이다. 노년에 진입한 처음 얼마동안은 외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노년의 문화를 관찰한다. 시간의 관리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활동에 의존한다. 현역에서의 해방감도 느끼고 자신만의 휴식과 배움, 만남의 시간을 갖지만,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 온전히 주관적으로 의미를 찾도록 놓여진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어느 사이 자신도 노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

시민사회의 조직에 노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된 교류는 가족이나 직장동료,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나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지배적이지 않고, 주된 활동은 비공식적인 관계이다. 기능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삶으로 이행하였지만 그 관계는 연고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새롭게 찾은 오래된 관계의 의미가 기능 중심 삶에서 왜소되었거나, 도구화되었던 관계들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계기도 된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특히 그렇다.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일생을 동고동락한 반려자로서, 정서적으로 의지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노년에 부착된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정의하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노인은 건강이 쇠약하고, 사회적으로 비활동적이라고 인식한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미지와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정형화된 노년의 인식과 실제 경험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인식한다. 그리하여 점점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인 이미지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있다.

기능주의 가치가 삶 속에 강하게 내면화할수록, 노년의 자아는 노인을 부정하는 인식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성향이 발달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역할기대의 단절 상황을 강하게 부정하게 되고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박경숙, 2004: 130). 노년은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된 제도,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되었고,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노년의 배제는 일층 가혹하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비록 전통적인 가치가 노년의 지위를 보호하고 가족부양의 관행이 현대 삶의 격랑 속에서 노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이렇게 제도적 배제와 부정적인 시선의 지배 속에서 노년의 욕구가 부정된 측면이 강하다.

부정적인 노년의 정체성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노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움직임은 그동안 억압되었던 욕구의 당당한 분출로 전개되고 있다. 노년의 활동을 주장하는 노인은 노인 전반의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자신을 구분짓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병들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존경을 받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가난하다는 고정관념을 여전히 가지면서, 이와 구분된 자신의 정체성을 인권이 보장하고 있는 독립적인 주체에 준거를 둔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규정된 노인들이 무욕의 삶을 산다면 적극적인 노인 이미지를 주창하는 노인들은 욕구와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다.

IV. 결 론

노인의 소득, 노동, 돌봄/건강,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직접 계측하지는 않았지만,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노년 삶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다른 욕구들도 표출되지는 않더라도 혹은 노인 일부의 선택적인 경험에서 강조되더라도, 그 욕구를 부차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비록 대다수의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의 가치는 노년에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노동 전반에 대한 권리가 적극적인 주장이나 행위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동권이 노인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돌봄에 대한 권리

적 표현도 돌봄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한다. 그리고 정형화된 노인이미지(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의존과 기능결핍)와 자신을 분리하는 태도가 강한 것은 독립과 사회참여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의 욕구 인식은 생활 제반 영역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하고 싶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권리인식을 가진다. 그리고 권리인식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자원이 많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표현된다. 노년 내부의 계층화와 함께 권리인식도 계층의 지점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욕구를 권리로까지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이고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소득과 돌봄의 권리에서 두드러진다. 노동에 대한 강한 욕구도 현실성 없는 희망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이처럼 가족과 개인의 소관이자 책임으로 해석되는 욕구와 권리 인식은 어떤 사회성을 반영하는가.

한편으로 삶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해관계는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고, 제도의 성격은 다시 삶의 가치와 이해를 규정하는 상호 관계가 있다. 이런 제도-인식의 밀접한 상호 연관에서 보면, 가족-개인 중심의 욕구/권리인식은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제도/정책의 특성과 밀접히 연관을 가진다. 효를 근간으로 한 가족부양의 원리는, 그 긴장에도 불구하고, 노년 복지체계의 중요한 원리이다. 연금이나 돌봄기회가 보편적이지 않은 것도 가족-개인 중심의 욕구가 발전하게 된 제도적 조건이 된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취약한 복지가 시장기능의 확장으로 메꾸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권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동일시되어 해석된다.

개인화된 욕구/권리인식은 위계적인 계층 구조와 밀접히 연관된다. 위계적인 계층구조에서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인식이 구조화되기 쉽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소유하지 않은 자의 권리와 구분시킨다.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욕구/권리인식은 위계적 계층구조에서 조성되기 쉽고, 또 계층구조를 위계화하는 영향력을 가진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욕구/권리 인식은 성, 계급, 교육수준 등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고, 남성은 여성의 권리를 상대적으

로 덜 인식할 수 있다. 중심조직의 관리자와 하도급부문 노동자가 인식하는 권리의 정도와 서로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서도 비슷한 불일치가 예상된다. 권력/자원을 소유하는 위치와 권리인식은 서로를 정당화한다. 이처럼 권력과 재화가 위계화된 사회에서 권리인식 역시 계층화될 수 있다. 계층화된 권리인식의 특징은 계층적 지위에 따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 정책은 계층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계층구조를 조정하고, 재구조화하는 중요한 계층화 기구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국민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들도 상당히 넓게 포진된다. 보편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계층간의 연대의 기초가 강하고, 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은, 국가 역시 계층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요한 제도복합체임을 나타낸다. 같은 맥락에서 욕구/권리의 보편적 원리가 국가정책에 실현되는 정도와 일반 시민들의 욕구/권리에 대한 연대적 인식이 서로 밀접히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를 지향하는 국가 성격은 자원과 재화에 대한 공동체적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 성격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덜 위계적인 계층구조는 보편적인 권리인식을 뿌리에 두고 있고, 역으로 보편적인 권리 인식은 재화와 권력이 덜 위계적인 사회조직에서 구성된 관점일 수 있다. 따라서 보편화된 권리인식의 특징은 훨씬 덜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의존적이고, 나와 타의 권리에 대해 덜 차별화한다.

이처럼 권리인식은 개별화되고 계층화된 방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개별화된 권리인식은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의존적이고, 타인의 권리와 구분짓는다. 독립과 역능성을 확장시키는 힘이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에서 개인의 자유 열망과 불평등이 공생하게 된다. 불평등은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체의 자유의 확장이 다른 개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관계로 구조화된다. 반면 연대적 권리인식은 자신의 권리 이외에도 타인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인식이 크고, 이는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인식하는 지형으로 확장된다.

권리인식은 한편으로 더 나은 삶,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를 정당화하는 인

식이다. 욕구와 권리의 인식의 경계는 모호하다. 권리로 인식되는 것은 욕구 인식의 강도와 오히려 연관된다. 강하게 원할수록 그 욕구는 정당화의 자원을 확보한다. 권리로 인식되면 그 욕구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노인의 권리인식은 개별화된 특징을 나타낸다. 소득이나 돌봄의 기반이 개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한다. 개별화된 권리인식은 가족이나 사회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여 선언된 부분도 있고, 시장과 상품화된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존재들의 선언인 부분도 있다. 성취와 생산성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기능중심문화의 영향이 노년에도 확장된 것도 연관된다.

또한 노인의 권리인식은 긴장하고 갈등한다. 개인이 소유한 힘에 의존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인정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권리인식이 성,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계층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도 개인화된 욕구/권리인식에 의한 권리 성취가 개인의 자원에 의해 차별화되는 사회 속에서 구조화된 특징임을 드러낸다. 개인적 자원에 의존할수록, 권리에 대한 연대적 인식의 폭은 더욱 제한된다. 또한 개인적 자원도 취약하고, 가족과 사회도 그 권리의 정당성을 심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년에도 일하고 싶은 욕구의 정당성을 일반시민이 진정으로 공감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많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예산의 제한 때문에 일자리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여전히 상당히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지만, 시민 일반은 보상 없는 기여를 내켜하지 않는다. 개인화된 권리인식이 연대적 권리인식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책임 연대가 실질적인 조건일 수 있다.

개인주의적 권리 주장을 넘어

개인의 자율과 역능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의식은 기능/효율성으로 조직화된 현대의 삶의 구조에서 보편화된 가치일 수 있다. 이 가치는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아니 성취한다고 인식되는 자유의지와 삶의 물질적/정신적 기능을 옹호하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불평등의 억압에서 많은 주체들이 해방되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한다. 한편, 자기, 인간, 생명 중심의 권리 도덕 속에서 침해되는

폭력도 유의하게 된다. 끝없는 기능/능력 확장은 주체를 권력과 힘의 덮에 갇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노년의 긴장은 다름 아닌 기능의 지배 속에서 이중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능의 관점에서 노화의 경험을 부정한 것이 한 면이고, 노년 자체가 기능으로 존재하고 인식하게 된 점에서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의 관점을 통해 노년에서도 독립성과 역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원리를 부각시키는 의의가 있지만, 기능주의적 인권 관점이 내포한 억압성도 유의해야 한다. 기능, 역능성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삶의 경험도 보호될 수 있는 관점은 종래의 기능/독립/자율/역능으로 해석되는 권리인식의 보편성을 질문하게 한다.

노년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총결집은 활동적 노년을 주장하는 지점으로 관통한다. 인권에서 강조하는 기능과 역능성의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주체에 노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다. 합리적 조직구성에서 노년을 배제한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사회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독립적인 자기 정체성이 노년에도 권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득보장, 노동, 돌봄, 건강 모두를 관통하여 이들 삶의 요소들에 대한 권리인식이 개인주의 관점이거나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국가나 사회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 권리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석되거나, 전통적인 가족규범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이는 공공의 가치를 구성하는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권리인식이 오히려 개인화와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지하게 한다. 노인의 권리인식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에 더욱 의존해서 확장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은 인권담론을 사회구조와 연관하여 그 의의를 진단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권리주장이 제기한 불안하고, 불평등하고 개인화된 사회구조를 간과한 채 권리주장의 불가침만 선언하는 것은 불평등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한다. 노년의 개별화된 권리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현대적 삶의 존재와 인식의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 소득, 건강 등 생산성의 조건들은 위계적인 계급구조와 취약한 공공성의 기반 속에서 훨씬 개별화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노년의 권리인식이 개별화가 심화되는 구조와 결합되는 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때, 다층적인 노인차별을 개

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구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적 권리담론이나 권리확장 자체가 노년을 부정하는 딜레마도 경계되어야 한다. 기능을 중심으로 삶이 해석되고 그런 해석이 노년에 확장되면서 노화의 경험이 부정되고 돌봄의 가치가 긴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년의 삶의 존엄성은 기능의 쇠퇴와 죽음을 껴안는 존재방식과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들은 나이를 통해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도 인식하지만, 나이를 대접해야 한다는 인식도 하는 것이다. 노인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들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인의 인권은 나이를 통한 부당한 대우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배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이 때문에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령이 특혜나 억압의 조건이 되는 제도나 관행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모든 제도와 관계에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연령의 경계들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기능을 유지할 있는 조건들이 노년에도 요구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나이를 기준으로 부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주체적인 삶과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들이 요구된다.

세 번째, 기능의 쇠퇴 상황에서도 삶의 존엄성이 보호받을 권리가 주장될 수 있다. 연령차별의 해소, 기능의 유지, 그리고 기능의 쇠퇴 상태에서도 삶의 가치를 해석할 수 있는 돌봄 관계는 중요한 권리이다. 한편 이런 가치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조건들이 중층화되어 있다. 노인의 권리인식의 확장은 이런 가치들이 노년에 실현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이지만, 노인의 권리 주장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되지 못하는 뿌리에는 개인의 권리인식이 연대적 권리인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불평등의 영향이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 권문일, (1996),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 후 근로행태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8, 41-67.
- 김미혜(1999). “노인과 인권,” 『복지동향』 5월호, 20-26.
- 김수완 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가구유형별 근로 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9: 5-37.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361-391.
- 김혜영. (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7-37.
- 남궁명희. (2009).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기혼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3), 4-79.
- 대한민국정부. (2008).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 모선희 외. (200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조사』 밝은노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 박경숙, (2000),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와 고연령층의 취업생활,” 『노동경제논집』 제24권 특별호.
- _____, (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제24권.
- _____, (2002)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분리현상,” 『노동정책연구』 Vol. 2. No.2. pp. 69-87.
- _____,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
- _____,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Vol. 38. No.4. pp. 101-132.
- _____, (2007) “도덕, 정치, 경제의 연관에서 본 효도법 담론의 의미.” 『가족과 문화』
- _____, (2008),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불평등의 지배와 저항.” 『한국사회학』
-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 박명화 외. (2009). 『2008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 석상훈, 송현주, 이근영, 오병국. (2008), “제 2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석재은, (2009). “노인돌봄 공적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노인과 가족 간 관계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21(1), 29-61.

- _____, (2009).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복지동향』 123, 28-32.
- _____, (2008).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42, 31-37.
- 석재은·유은주. (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가족법연구』 21(1), 31-56.
- 이가옥, 우국희, 최성재. (2004).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56(1). pp.5-22.
- 장경섭, (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5: 173~204.
- _____, (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Vol. 13, No.1. pp.1-29.
- 장지연, (2003),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희 외.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혜정.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81~98.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편. 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 차별연구모임.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차별연구모임.
-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역사비평』 64호(가을): 150-191.
- Esping 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ra Nettleton (1995). *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Polity Press. (조효제 역,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
- United Nations. (1999). “Principles for the Older Persons,” http://www.un.org/esa/socdev/ageing/un_principles.html
- Yoon, J. H. (2005). “The Analysis of structure and behavior about causes that exclude contingent workers from social insurance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1/3,123-157

인권 관점에서 바라 본 노인학대와 사회적 책임

우 국 희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머리말

노인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지가 어언 10년이 넘었다. 마스크에 노인학대 사례가 보도되고 법률로서 제정되기까지 그 과정은 채 5년이 안 걸렸을 정도로 상당히 신속히 진행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은 노인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부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가능한 한 가정사에 개입을 꺼리는 정부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내재적으로 성숙된 인권의식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권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UN은 오래 전부터 “인권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처음부터 국민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 2002년 세계고령자회의에서는 노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UN의 권리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노인학대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 구속과 폭행’이 인권의 기반이 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인식은 미약하다. “맞을 만하니까 맞는다”라는 폭력에 대한 비이성적인 인식과 “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야 한다”는 식의 가부장적인 문화적 태도는 폭력 자체보다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유발한 동기를 찾으려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인권 차원의 논의보다는 동정과 연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았다. 인권 의식의 결여와 관련하여 홍세화는 우리 사회가 “인권의식에 대해 이따금 배울 뿐이고 일상에서는 인권 침해를 몸에 익힌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일은 어찌다가 일어나는 일일 뿐이고 일상에서는 억압과 차별을 몸에 익히며, 이것이 나중에 남을 억압,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그것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인권의식이 부재한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권고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킨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식의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인권의 제도화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제도와 정책은 인권의 확고한 기반인 듯 하지만 그것은 경쟁적인 가치 사이에서의 선택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최근 이를 자주 목격한다. 90년대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되고 관련 국가기관이 설립되는 등, ‘인권의 세계화’ 현상에 동참하게 되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 온 지 어언 20여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과 인권의 실행 수준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다.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념적 성향이 문제시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진행되었고, 인권의 개념 또한 정치적 자의성에 종속되어가고 있다. 인권과 사회적 안전은 대립된 구도로 이해되고, 심지어 인권을 주장함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되고 이전에 중시되던 가치가 현재에 와서 전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은, 인권의 제도화가 내부적 성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적으로 주어질 때, 그리고 인권중심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노인인권은 어떠한가? 노인인권은 인권 개념이 아직 명확히 자리 잡혀 있지 않은데다 노인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30년 이상 길어지고, 과거의 노년 세대와 그 특성이 다른 물론 구성원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높아지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누가 노인인가?”에 대한 대답조차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일자리 감소는 국가의 재정안정을 위협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예산의 축소를 정당화하였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를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정치적 시선과 정년연장을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노인들을 자립케 하려는 현재의 노동 정책들은 청년실업,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 문제와 맞물려 노인을 연령차별주의(ageism)의 희생자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케 한다.

노인차별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

의 등장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병약한 노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러한 편견은 특정 노인집단에게 작동되고 있으며, 노인을 무능하고 병약하며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부정적 편견은 또 다른 유형의 편견으로 대치되고 있다.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서구 사회에서 노인은 동정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벗어난 지 오래다. 오히려 노인은 국가의 복지지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탐욕스런 세대(greedy elders)로 규정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수적 증가는 정치적 권리 중 하나인 유권자로서의 노인 파워로 나타나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선거의 참여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은 노인집단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적 권리 행사로 접근되기보다 노인은 이기적인 정치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공공정책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왔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여러 차원에서 인권 영역이 확장되며 인권보호체계가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착취나 학대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노인의 노동권리 존중의 길을 강화한 것, “노인장기요양법”의 제정을 통해 건강과 케어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것 등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강화된 국가 의무와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사회적 장치들이 인권을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수사는 인권, 시민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한 공공정책들이 노인들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노인인권의 토대를 굳건하게 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비판적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노력이 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관습적 관행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의보다는 불의를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인권 또한 인권 그 자체보다는 인권이 침해됨을 느끼고 나서야 인권의식이 발달되는 경향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권은 노인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기 전,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노인인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인학대라 할 정도로 노인인권과 노인학대는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 학대는 인권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자 위협이라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문제를 발 빠르게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노인인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노인인권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제한시켰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인권관점에서 볼 때, 학대는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기본적인 권리의 부인이다. 노인학대를 인권과 관련하여 고려함은 학문, 법률, 사회정책 등에서 일반적으로 침묵되어 온 주제이다. 그동안 노인학대는 실태나 현황을 보여주거나 학대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을 뿐, 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지는 못했다. 인권의 시각으로 학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노인학대를 보다 큰 사회적 이슈의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며 인권 실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II. 인권과 노인인권

인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이지만 여전히 무거운 주제로 인식된다. 인권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유와 평등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친근한 용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지 않으며, 그것을 토론하고 사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 붓지 않는다. 공기는 우리가 숨쉬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은 한 진지하게 질문되지 않는 것처럼, 인권은 인권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 문제에 천착하게 된다. 인권에 대한 친숙함은 우리가 그러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결과일 뿐, 오히려 그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인인권도 마찬가지이다. 노인 관련 서비스나 정책에 관련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노인인권

을 자주 언급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노인인권이 무엇인지, 노인과 그들 자신에게 있어 노인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 받으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해 온 인권의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고, 또 심지어는 인권이라 말해지는 개념들이 정치적 수사나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도 한다.

인권개념의 모호성은 그것이 역사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린 헌트(Lynn Hunt)는 이와 관련하여 “한 집단에 이어 다른 집단이 권리를 요구하고 획득해 나가는 권리 선언의 불도저 같은 효력”을 언급하면서 “권리들은 과연 누가 그것을 가지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부단히 변화하므로 문제제기에 개방적이며, 인권혁명은 말 그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다. 헌트의 지적을 들지 않더라도, 인권 주체의 확대와 더불어 인권 내용 또한 확대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권리는 기본적 자유권에서 출발해 정치권, 사회권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이자 ‘인권’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사회권의 등장은 시민권의 성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전에는 빈곤 등으로 인한 의존성이 정치적 권리를 배제시키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지만, 20세기 복지국가로의 발전 이후 의존성은 국가로부터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기반으로 변화되었다(유해미, 2006:12). 사회권은 건강보호서비스, 공공교육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제도화된 다양한 사회서비스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기본권은 특히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빈곤, 실업, 노령, 질병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들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게 일정한 물질적 급부와 적절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등장하였다(홍일선, 2007).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마샬(Marshall)처럼 시민권의 패키지에 사회권이 추가됨으로써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불평등 의미가 축소되고 정당화되었다고(Faulks, 2006:124) 보는 입장과, 사회적 기본권이 비록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권리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곧바로 실현될 수가 없는 추상적, 불완전한 권리로 존재한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다.

사회권의 등장으로 인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분, 국가의 상이한 의무에서 오

는 부조화, 인권으로서의 사회권에 대한 의구심 등은 오래 동안 인권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거리였다. 최근 샌드라 프레드먼(Sandra Fredman)이 제안한 인권 개념의 완전한 재구성은 다소 그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 프레드먼은 자유권, 사회권 할 것 없이 모든 권리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권 개념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주장하였다. 자유는 불간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촉진해 주는 데서 온다. 프레드먼은 강압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강조하는 전통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자유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하였다. 자유를 폭넓게 파악하는 이러한 견해는 국가가 개인의 진정한 선택을 촉진할 의무, 다시 말해 실행 가능한 선택 지점들의 범위를 늘리고,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강압을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폴란드 태생의 탈근대 사회학자 가운데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또한 행위를 금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행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마음대로 떠날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을 수 있으며,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는 있겠지만 그런 일거리 자체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쌍의 관계로서 인권을 바라봄은 노인인권 원칙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노인인권은 아동, 여성, 난민 등 다른 대상층에 관한 UN의 권리 규약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인권은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1966)>을 기반으로 하여 유엔이 채택한 1991년의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원칙에서 특징적인 점은 UN이 각국 정부가 노인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반영해야 할 18가지 원칙들을 다섯 가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서술방식은 “노인은 ~ 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 다시 말해, 노인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고 있다.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5개 군 1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원칙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Independence)의 원칙이다. 여기에는 6가지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 바, 첫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여섯째,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소득, 근로, 주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의 원칙은 특히 노인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인은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는 오늘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의무임을 말하고 있다.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은 3가지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 노인들이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노인들이 무능력자,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 기여자, 적극적인 서비스 소비자로 변화됨을 인식하고, 노인정책 영역에서 노인압력집단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것이 정부의 주요 의무임을 시사한다.

세 번째는 돌봄(Care)의 원칙으로, 다음의 5가지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둘째,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의 자율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인간적이고 안전한 시설에 입소해서 적절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노후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권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노인이 비록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노인 개인의 자율권을 손상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네 번째는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원칙으로, 노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문화, 종교,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제기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존엄성(Dignity) 원칙으로, 노인들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나이·성별·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경제적 수준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는 노인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차별과 착취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엔의 노인원칙이나 인권학자들의 제안에서 보듯이 인권 개념은 확장되고 진화되고 있는 데 반해 국가적 실행 수준은 이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 이후, 국가의 의무는 확대되기보다 오히려 축소되고 민간의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 재정지출 축소, 경제 활성화라는 의도를 숨긴 채 소비자 선택권의 존중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미화되고 장려되어 왔으며, 보다 최근에는 시민권(citizenship)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20세기의 시민은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답을 추구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시민의 덕목을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새롭게 해석,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대처 정부는 국가의

책임 대신에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수동적 시민보다는 적극적, 능동적 시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으며, 이후 노동당 정부 또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반응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강조했다. 대처 정부에서 사용된 ‘적극적 시민’의 아이디어는 국가 의존적인 보호대상자보다는 기업가(entrepreneur)로서 시민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이상적 시민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정치적 참여자들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상호의존적인 개인의 표현이 아니다. 시티즌십의 재개념화는 ‘시장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재산권, 소비자 권리, 서비스 제공자 선택권과 같은 이러한 시장 권리들은 집합적 복지권보다 훨씬 임파워링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공공 자산의 민영화, 공공부문에 시장력 도입을 통해 촉진된다. 대처주의에서 말하는 적극적 시민은 법을 준수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한, 그들보다 덜 운이 좋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끔씩은 동정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다(Faulks, 2006:125).

1997년 노동당정부에 와서 시티즌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추구되었다. 마살의 국가 급여에 대한 강조, 대처식의 시장권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 추구였다. 시민은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감의 소지자로서, 그러한 책임감은 실제적이고 보다 광범위하다. 그 핵심에는 자신의 독립을 유지할 책임과 공동체 질서를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삼갈 책임이 놓여있다. 적극적 시민에 포함되는 특성은 서비스 기획 및 전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 자신이 스스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에 관련되는, 달리 말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권리 주장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보다 더 요청한다. 적극적 시민은 달리 표현하면 책임감 있는(responsible) 시민, 이타적 시민이라 할 수 있다. 블레어 정부는 적극적 시민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자발적 이타주의에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 왔다.

적극적 시민권은 영국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주요한 정책 이념이 되고 있다. 적극적 시민권은 개인의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는 신우파의 윤리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수동적인 복지의존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적극적 시민권은 공동체의

개념을 불러일으키며, 공동체는 공적 정신을 가진 개인의 자발적 행동과 선한 이웃이라는 가치에 의해 지지된다. 적극적 시민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상호 연대를 구축한다(Hall, Williamson & Coffey, 2000:464). 이는 영국의 신노동당 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신노동당 정부는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복지를 위한 보다 큰 수준의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했는데, 개인의 권리 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상호책임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공동체 형태의 사회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인권, 특히 사회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 시기는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도울려고 하는 경우에만 도울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보편적 권리로 서의 인권이 아닌, 시민의 의무로서의 시민권이 강조되었으며, 권리 이전에 책임이 강조되었다. 의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의무를 의미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서 이타심이 많은 개인과 공동체로 이전되었다. 노인집단은 정부가 도울 가치가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며, 스스로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사회정책에서 점차 소외되고 지역사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더욱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Ⅲ.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 전문가의 관점에서 규정된 노인학대

노인학대 개념은 이론적 추론보다는 현상에 기반한 사회적 구성물로서, 1975년 영국에서 여성노인구타(granny batter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 확대되어 왔다. 신체적 폭행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던 초기의 구타(battering)라는 개념은 점차 다양한 형태의 학대, 예를 들어,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개념인 학대(abuse)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구타에서 학대라는 용어로의 변천은 신체적 폭행 이외에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다.

일찍부터 미국의 사회학자 이스테스(Estes, 1979)는 노인문제가 노인들 자신으로부터 나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노인을 위해 만들어낸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정치가나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노인학대 개념은 서비스와 사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초창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노인 당사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짓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에겐 노인학대가 무엇이나를 정의내리기 보다 얼마나 많은 피해노인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노인학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학대 피해자가 상당 수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노인구타에서 노인학대로의 개념 전환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 했는데, 정서적/심리적 학대, 물질적/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권리의 침해 등 노인학대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율이 높아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의 관심과 관련 정책들을 끌어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인학대 개념에 자기방임(self-neglect)의 유형을 포함시킴으로써 결정적으로 더 많은 피해 노인들을 발견가능케 했다. 노인보호서비스 기관에 의뢰되는 노인학대 케이스 중 70% 이상이 자기방임의 형태였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노인학대 발생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점은 노인학대에서 자기방임의 형태가 대부분임에도 대외적으로는 자기방임이 아닌 신체적 폭행이 노인학대의 중심적 형태로서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자기방임이 피해 노인의 광범위성을 보여주었다면, 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가 노인들에게 매우 해롭고 위험한 현상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개입을 위한 제도 마련의 긴급성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폭행 중심에서 다양한 학대 유형을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됨은 노인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노인학대의 개념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노인학대라는 포괄적인 용어 안에 광범위한 학대 유형들을 포함시키는 경향은 노인학대를 발견도구로서 거의 의미

없는 개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노인학대는 정치적 개념일 뿐 과학적으로는 무용지물인 개념이 되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이 제기되자, 노인학대 개념규정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노인학대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를 완전히 포기하려는 입장과 표준적인 정의는 고수하되 노인학대를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노인학대의 표준적인 개념을 찾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해 모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일의 정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비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반면, 후자는 노인학대 개념의 모호성은 노인학대라는 큰 범주 안에 또다시 학대라는 하위 범주를 사용하는 동어반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용어의 구분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 범주로서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care)를 사용하고 그 아래 하위 범주로서 학대(abuse)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말하면, 부적절한 보호에는 학대(abuse),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 등의 하위 범주가 제안될 수 있으며, 이때의 학대(abuse)는 재정적 착취, 방임을 제외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적절한 보호는 학대나 방임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비난적 의미를 덜 담고 있어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arp, 2000:7).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해서도 비난의 의미가 덜 담겨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보호자를 가해자로 간주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구타에서 노인학대로, 노인학대에서 다시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로 용어가 바뀌어 사용됨은 노인학대 발견율을 높여 대중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는데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표준화된 정의 마련의 어려움으로 학문적으로는 무용지물인 개념이 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노인학대 개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이 아닌 전문가들이 규정해 놓은 노인학대 개념에서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욕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개념을 설정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의미는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 노인학대 개념과 접근 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노인을 규정짓는 사회적 개념들은 상호중첩된 다음의 3가지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노인에 대한 이 3가지 고정관념들이 긴밀히 연관되어 노인학대의 의미를 구성한다.

첫째, 노인을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온정주의적 관점이 있다. 노인은 취약하고 의존적이므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은 종종 “동정적 노인차별주의(compassionate ageism)”로 표현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모든 노인들은 개인적 잘못과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의존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사회와 가족은 노인의 이러한 욕구에 직면해 그것을 경감 혹은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근대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노인문제의 원인을 찾는 논의들이 이런 류의 노인 이미지를 발달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을 위한 공적 프로그램의 틀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전문가주의 및 건강보호산업의 성장은 의존적 구성물로서의 노인 개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Harbison, 1999:62)

노인을 의존적인 구성물로 틀 지을 때 노인학대는 부양의 문제로 개념화되고 아동학대와 동일시된다. 그 결과, 노인학대는 의무 신고, 강제 보호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아동학대 모델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신고법(mandatory reporting laws), 노인보호제도(adult protection legislation), 후견인제도(guardianship)는 노인을 아동과 같은 의존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노인은 그들 스스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와,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며 약자를 위한 사회의 강제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을 사회의 짐, 또는 부담으로 보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이 있다. 이는 노인들이 비생산적이어서 사회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복지 자원에 대한 노인들의 과도한 욕구가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1980년대와 90년대의 복지 국가 위기론과 결부되어 노인이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급속도로 증대시켰으며, 부양부담에 대한 관심은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 부적절한 보호로 희생당하는 노인들의 문제를 강조하게 했다(Biggs, Phillipson, & Kingston, 1995:15-6).

노인은 곧 부담이라는 등식에 따를 때 학대는 상호적으로 규정된다. 즉 노인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명백히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노인과 보호자 모두 가해자나 피해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을 가족부양자의 부담이 되는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현상을 가족부양자의 부담 및 스트레스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노인을 부양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할 때, 부양 가족은 가해자라기보다는 숨겨진 또 다른 피해자(hidden victims)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또 다른 서비스 대상층임이 강조된다. 최근 학대나 방임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가족에 대한 비난적 의미를 덜 담고 있어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care)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는 데는(Carp, 2000:7) 이러한 관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관점에 기반할 때,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노인 당사자보다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 예를 들어 재가복지서비스,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 주된 접근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발인의 과부담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노인들을 유기, 학대하는 경우에 대해 가족 수발자 등록, 지지집단 형성 및 지원, 수발 가족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 단기 보호 등 융통성 있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Kingston & Penhale, 1995:201).

셋째, 노인을 일반 성인집단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는 시민권적 관점이 있다. 노인을 고령 시민(aged citizen)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 한 예이다. 지금까지 노인은 빈민이나 다른 취약자들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즉, 타인의 동정과 도움에 의존하는 약자는 권리의 주체인 시민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사회의 한 ‘개인’으로, ‘시민’으로서 규정되기 보다는 ‘(일반 시민과) 다른 시민’, ‘2등 시민’으

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등장한 시민으로서의 노인 개념은 노인을 권리의 주체자,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반영한다. 이 관점은 시민으로서의 노인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고, 동시에 모든 성인은 자기결정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본다. 노인은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적인 판단이 미숙한 아동과는 달리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을 거부할 권리도 존중된다.

개인적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는 권리의 침해로서 일종의 불법적 행동, 즉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대체로 신체적, 성적, 재정적 학대는 범죄로 인정되고 다양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형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노인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개입은 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개입의 권한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법적 절차가 적용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 관점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전문적 활동과 보호를 거부하는 피해자 권리 사이에 긴장을 유발시킨다. 대중 매체는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노인들의 피해 사례, 특히 신체적 학대, 성적 공격, 재정적 학대 등의 사례를 자주 보고함으로써 법적인 관점을 사회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Penhale & Kingston, 1995:22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을 구성하는 사회적 개념은 의존, 부담, 권리 등으로, 이러한 3가지 중첩된 구성물이 노인과 노인학대에 대한 독특한 관점과 사회적 접근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존이라는 구성물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발달을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노인의 자율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두 번째의 구성물인 부담은 노인학대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의존을 노인의 본질로 고착시킴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라는 사회적 구성물은 노인을 다른 사회집단과 동일한 시민으로 전제함으로써 노인을 사회 안으로 통합시키는 데는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나, 권리 침해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한 점, 그리고 노인의

자율권에 대한 존중이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제한시키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활용되는 제한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 노인학대 제도의 3가지 축

우리나라 노인학대 제도의 모델이 된 국가는 미국이다. 법제화가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80년대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발전시켜 온 미국의 경험은 중요한 자료원이 되었다. 미국식 접근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이는 우리나라 노인학대제도의 핵심 틀을 구성한다. ‘의무신고제’, ‘처벌이 아닌 사회서비스적 접근의 강조’, ‘자기방임의 포함’이 그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익히 알다시피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의무신고제 도입의 논리는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데서 출발한다. 학대당한 노인들은 여러 이유로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당했다는 수치감, 학대를 받을만했다는 생각, 보복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가해 자녀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해체,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들에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신고 대상자 범위가 다소 제한적인 점, 강제조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조항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경우와 차이로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 상담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의료 및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에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몇몇 주정부에서는 목사, 변호사, 금융직원 등 법률 및 경제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데 반해, 미국은 대체로 500달러 내지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최고 일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면허증 박탈 등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신고의무제는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케 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노인을 사회적 의존자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노인차별주의를 부추기며, 개인의 자율성 보장에 배치되는 측면을 갖는다. 호주나 영국의 경우, 노인 권리의 침해 소지가 있고 또 실제 신고 결과의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점(충분한 자원이나 서비스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만 주는 무용지물인 제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노인학대를 범죄로서 바라보고 처벌하기보다 가해 가족과 피해 노인 모두에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인학대의 경우 일부는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형법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를 다룸으로써 노인학대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로 바라본다. 이는 처벌 중심의 사후개입에서 지원과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에로의 초점 이동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적 관점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지 않고,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런데, 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자원의 충분한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자원과 서비스를 동원, 정비해 두어야 하는데, 사전 준비없이 제도부터 먼저 시행될 경우 노인을 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서 지내게 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공공급여가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노인학대가 사회문제화되었을 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해노인을 위한 안전한 거처나 서비스 연계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제도가 먼저 시행됨으로써 조사, 상담, 교육 외에는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심지어는 노인을 그대로 학대상황에 남겨두고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무력감을 경험케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자기방임을 포함시킴으로써 노인학대를 보다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방임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몸과 집안을 불결하게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거부하여 그 자신의 건강과 안

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언급한다. 학대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규정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방임은 학대라 규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기방임 노인이 지역사회 내 상당 비율 존재하고, 또 기존에 이들을 보호해 오고 있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당시 정부가 주된 관심을 갖던 노인학대 문제에 자기방임을 포함시키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결과, 학문적 논의는 차지하고 자기방임이 노인학대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게 된다. 자기방임과 노인학대의 결합은 노인학대 개념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자기방임의 포함으로 지역사회내 노인학대 발생율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법제화가 촉진된 결과를 가져왔다.

노인의 자기방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비정상, 질병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곤란하다. 자기방임은 최근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자기방임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이며,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방임 노인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치매 등 정신적 장애를 갖기 쉬운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기방임 환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그 이유는 자기방임의 원인 중 일부는 정신적 손상이나 판단능력의 장애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도 짐작될 수 있는데, 독립 가구를 구성하는 노인 중 자기방임 노인으로 신고된 케이스 수가 1986년부터 1996년 10년 사이 150%,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34% 증가했으며,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11년에 이르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yer et al., 2006:14). 우리나라도 치매유병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2000년 8.3%에서 2020년에는 전체 노인인구 중 9%가 치매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앞으로 자기방임 노인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짐작케 된다.

4.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의 확대, 발전.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크게 가정 내 학대와 시설에서의 학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주로 노인학대를 가정폭력의 일환으로만 접근해 왔으나,

최근 장기요양시설의 급증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 내 노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시설평가에 인권조항을 포함시킨 것,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차원에서는 관련법의 개정, 지침의 마련 등 시설 내 노인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설 내 종사자에 의한 학대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동법 제 37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06년 5월 보건복지부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생활시설 노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지침이 시설 내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침에는 11가지의 생활시설 노인의 권리와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이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민간수준에서 옴부즈맨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200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노인인권지킴이단을 발족시켰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09년 노인권의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Ⅲ. 노인학대 영역에서의 인권 관련 쟁점

노인학대가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노인인권 문제의 선두 그룹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학대를 형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보다는 노인복

지법 속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차별 위주가 아닌 도움과 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실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적 접근이 노인 권리와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권리의 보장, 심지어 욕구의 충족보다는 결핍의 제거에 집중했으며, 노인권리개념이 사회서비스 전문가집단에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못한 채, 단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선행과 선의의 차원만이 강조되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존중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그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경향이 많다.

권리 자격이 곧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갖는다. 그리고 사회경제정책은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노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지금까지 노인의 관점과 의사에 기반되어 있지 않다. 노인학대예방과 개입이 인권원칙에서 얘기하듯 노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대답에는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한 노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신고사례는 외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개입의 결과는 노인이 우려하는 바처럼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적절한 보호처없이 시설입소를 기다리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다. 권리 보장은 UN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주장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인들의 얘기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 삶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아래에서는 노인학대 영역에서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제안된 논의들은 확정적이고 보편적으로 동의된 내용은 아니다. 인권담론, 인권기반 접근이 과연 노인학대 영역에서 실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것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인권개념에 대한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본 수준에 불과하다.

- 노인학대 문제에서 노인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문제로서 대상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폭력과 학대는 크게 아동학대, 아내학대, 노인학대로 구분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뚜렷한 다른 대상군의 학대와는 달리 노인학대의 경우 수발관계가 설정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특징이 있다. 가족원은 노인학대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수발부담에서 희생되는 피해자로 이해된다. 심지어는 중증의 노인을 수발하는 가정에서 노인은 오히려 가족을 곤경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로 규정되기도 한다. 수발관계를 전제로 함은 노인을 한 인격체가 아닌 문제나 부담으로 인식케 하며, 노인 권리에 대한 인식에 장애로 작용된다.

그 결과, 정책의 초점도 노인이 아닌 가족에 맞추어진 경향이 있으며, 노인을 직접 지원하는 전략보다 가족을 지지함으로써 노인을 더 잘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증대시켰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인의 고통보다는 가족의 고통에 민감하며, 노인문제의 해결에 당사자보다는 가족의 의견이 보다 중요한 비중을 받는다. 정부 정책 문서에는 노인보호서비스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제안된다. 노인을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인식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적 사고가 일반적이었으나,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점차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주체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은 점차 개인화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정책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는 실제 그러한 접근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가족과 노인을 해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이 노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였는가를 짚어볼 때, 현실은 오히려 노인 삶의 질과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킨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단기보호서비스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단기보호서비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입소보호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함으로써 확대나 부적절한 케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가족의 노인 방치, 유기를 촉진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단기보호의 1회 이용기간이 90일 이내, 연중 180일 이내라는 기간 규정은 사실상 장기보호와 별반 다를 바 없으며, 단기보호를 이용한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 노인을 다시 가정으로 모셔가기 보다 다른 시설로 이전시키는 경향이 많다. 영국에서는 단기보호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호기간을 최소화하여 가족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잠깐 동안 활용하는 서비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단기보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 단기보호 급여일수를 1회 90일 연간 180일에서 월 최대 15일, 연간 2회까지만 이용하는,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단기보호를 확대나 폭력적 환경에서 나와 노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생활주거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확대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나 갈 곳이 없어 확대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노인을 위한 핵심적 서비스로, 기존의 가족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피해노인 중심의 사고로 전환함을 보여주며, 노인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권리 보장에 한발자국 다가선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 온정주의와 강요된 사회적 의무

인권의 발달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어 온데 반해, 가장 취약계층의 경우 자유권 보장은 여전히 요원하다. 장애인, 정신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유권과 그 근간이 되는 자기결정권리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에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노인의 자율권이 가장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되었음을 볼 때 취약계층 중 노인의 지위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유권의 핵심에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해 사회나 국가로부터 간섭 및 침해를 받지 않고 사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는 자기결정 권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예외 없이 모

든 노인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건강하고 독립된 노인은 물론, 질병과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케어에 의존하는 노인층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의존자, 무능력자가 아니라 성숙된 성인이자 능력의 보유자로서 마지막 잔존능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선택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행사해야 한다.

노인학대 영역에서 자기결정권 존중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노인이 개입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 그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이다. 의무신고제 도입의 배경에서 보았듯이, 노인들 스스로는 시설에 보내지지 않을까, 자녀가 구속되지 않을까, 자녀 양육자로서의 수치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위험 상황에서도 사회적 개입을 원치 않는다. 특히 자기방임 노인들은 외부의 도움에 대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 경우에 제기되는 쟁점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책임(혹은 선행)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자율성과 책임 간에 긴장이 있을 경우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서구사회를 지배해 오던 가치로서,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가능성만으로 개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생활방식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시민적, 개인적 권리의 심각한 침해이라 본다. 비록 입원이나 시설에의 입소가 더 좋은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 결과 노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노인에게 혜택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노인들이 불결한 환경에 살기를 선택했다면 그들의 그러한 결정 권리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개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권리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자기방임자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효과적이지만은 않다는 경험적 조사들이 나타나면서 지지를 얻고 있다.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 원치 않는 입원을 한 후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클락(Clark, 1975)과 바커(Baker, 1976)는 입원 후 오히려 더 높아진 사망률에 주목했다. 바커는 자기방임 노인의 25%가 병원에 입원한 후 3주내에 사망했으며, 무감동, 식욕감퇴, 실변의 시작, 낙상빈도의 증가 등을 보면서 개입의 결과로 생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환자 당사자에게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클락은 비록 환자들이 불결한 환경에 살기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생활방식 선택권을 유린하는 것은 시민적, 개인적 권리의 심각한 침범으로 보았다. 비록 노인의 최상의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신념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온정주의적 접근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 노인보호서비스의 실천 원칙 또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규제 활용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권리 보호에 너무 치중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두블러(Dubler)는 전문가의 책임은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어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개인주의, 자율성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온 서구에서도 최근 자기학대와 자기방임 사례가 많이 드러남에 따라 지역사회의 책임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기방임 대상자에 대해 어떤 조치라도 취하라는 요구가 주어졌으며, 실제 원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강제 개입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다. 주인에게 오랫동안 노예처럼 대우받아 온 할아버지, 청년 등의 척박한 삶이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자 관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의 업무태만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2월 26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외 9인에 의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태만 등에 대해 감봉이나 자격증 취소와 같은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구는 개인의 자율권 존중을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역사적 전통 속에서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조화를 놓고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반해, 현재 우리 사회는 인권적 관점에서가 아닌 온정주의나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이다. 노인의 거부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으며, 태만이나 무능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노인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떠한 개입이나 하고 보자는, 어떠한 서비스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갖게 한다. 혼자 사는 치매노인이 발견될 때, 가족들이 모두 일을 나가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노인 가족이 시설서비스를 요청할 때,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들은 노인이 시설로 보내지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거의 묻지 않는다. 간혹 노인의 의사를 묻는 경우에도 그들이 도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할 때 그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보다 노인들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시설이 노인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지가 될 것으로 믿는 경향이 많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많은 노인들은 취약함을 느낀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때 통제력 결핍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며, 그들 자신의 집을 떠나 노인보호시설로 이주할 때 그러한 결핍감을 더 크게 느낀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자 인간의 실존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실존 방식인 ‘거주한다’는 것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장소란 결코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노인의 경우는 그들이 살아 온 집이 아무리 누추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 공간은 그들 삶이 녹아있는 역사이자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심지어 어떤 노인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영영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기다림의 공간이기도 하다. 장소와 삶의 공간은 노인에게 기억이자 추억의 보고이며, 따라서 시설로의 급격한 배치는 그 시설의 환경이 아무리 좋고, 시설에서 보살핌을 제공하는 복지사의 자질이 아무리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노인의 삶을 통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평론 편집장인 김종철은 제도화된 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점에서 제도화된 친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거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친절

의 가장 타당한 형태가 친절을 돈으로 사거나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친절이나 선의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왔으며, 친절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노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살핌의 수동적인 소비자에 불과하다. 가장 취약한 노인층의 자유권에 대한 고려나 논의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선한 의도만으로 노인의 자율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 노인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위험, 공동체 안전에 대한 강조

최근 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관심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위험은 마스크의 주도 하에 과민한 반응을 확대 재생산해 내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에게 온갖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다. 올리히 벡(Beck, U)은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짓고, 결핍의 제거에 치중하던 불평등 사회와는 달리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의 제거가 관건이며, 안전이 최상의 규범으로서 작동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위험이 과연 더 늘어났는가? 그 위험은 과연 실재하는 위험인가?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은 아닌가? 위험과 안전은 누가 결정하는가? 안전은 과연 달성가능한가? 위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한 위험은 필수 불가결 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제한된 자원 속에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 감수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대 사람들은 과거 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 환경과 위생은 시각적으로 더 청결하게 관리된다. 그럼에도 오늘날 위험담론은 왜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공감을 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는 루만(Luhmann, 1991)의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루만은 위험(risk)과 위해(danger)를 구분했는데, 위험은 현재의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가 있다기 보다는 미래의 사건과 관련되며, 체계가 위험을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문제로서 보이게 되는 반면, 위해는 그 원인이 환경에 귀속되는, 즉 외부에서 야기된 것으로 피해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을 뜻한다. 그는 위험에 대한 결정자와 이해당사자의 시각 차이

를 주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위험은 현실적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완전한 안전에의 도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위험방지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허구를 지적했다 (노진철, 2004, 재인용).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위험 담론은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실재하기보다 결정되고 정의될 뿐이다. 위험은 포착되고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위험은 권력을 수반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위험을 결정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위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타인들의 결정에 따라 위험을 할당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권력 불균형이 발생된다. 그리고 위험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요구의 증대를 낳는데,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안전과 통제에 의지하고 집착한다. 백(2010)은 이와 관련하여 미래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규칙들과 책임들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를 두고 광범위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곧 또 다른 미지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노인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노인은 사회의 약자가 아닌 주류 시민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는 노인 집단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년기의 확대라기보다는 노년기를 더 멀리 바깥으로 밀어내고 중년기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은 과거의 중년의 개념에 가까우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이미지는 없어지고 사라지기보다는 더욱 열악하고 비건강한 상태로 존속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인들의 일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점차 우리 주변에서 제거되거나 관리되어야 할 ‘위험집단’으로 인식되고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방임 노인이 대표적인 그 예이다. 그들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사회적 위험군으로서 지목되기 쉽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삶에서 보듯 사회적 기준과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삶은 어디에서나 존재 해왔으며, 비록 그러한 삶이 개인에게는 물론 공동체에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사회가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해 오지는 않았다. 자율성, 자기결정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서구에서 개인들은 그들이 법을 위반하거

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상하거나 기이한 생활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으며, 사회는 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기방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 연구자, 정책결정가들은 사회가 개입해야 할 공적 문제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극단적인 자기방임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노인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반적 믿음이 있다. 새로운 전염병의 창출과 이에 대한 현대 사회의 불합리한 공포심은 자기방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높이고 있다. 자기방임 문제가 주는 위험의 범위, 정도, 긴급성에 대한 정의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그 예이다. 많은 경우 자기방임 노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는 생활방식을 고수하여 가족이나 이웃들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거나 이웃들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기방임 노인들의 안전관리 불감증이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힘든 생활방식은 이웃이나 지역 환경에 위해를 입힐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비위생적이고도 불결한 노인과 노인의 집으로부터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지역 사회는 노인을 다른 장소로 격리시키려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의 소망과 자유를 침해한다. 자기방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주로 시설입소나 병원입원으로 귀결되는데, 자신의 집에 남아있고자 하는, 그들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노인들의 바람은 공공의 안전과 충돌하며, 이 과정에서 노인에게 부여된 동등한 시민권은 무시되기 쉽다.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위협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실제 그 위험은 주관적이고 과장될 수도 있는데, 불결과 비위생은 그것을 전염의 원천이며, 장애나 손상의 표식으로 간주된다. 노인을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노인의 인권보다는 사회의 안전이라는 명분하에 개인 인권의 침해를 초래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적 조화를 보다 중시해 왔지만, 그것은 개개인의 존중을 통한 공동체의 조화보다는 개성의 말살을 통한 집단의 평화를 의미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러한 사고가 아직은 많은 사회적 행동을 지배하고 권리중심적 사고를 제약한다.

‘위험에 처한 노인’이든 ‘위험한 노인’이든 노인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의 의무

가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위험사회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찰성’의 개념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최근 한상진 교수는 근대화의 성찰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위험의 사회적 구성에 작용하는 지식과 권력의 효과를 명백히 인식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장치들의 결과를 다각도로 평가하며, 다시 말해 의도한 결과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찰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현대적 삶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유의하여 위험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위험과 더불어 살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IV. 노인인권 : 한 인간의 서사적 삶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라

권리담론이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고, 노인을 소비자, 서비스 사용자, 고령 시민, 제3연령 등 기존의 부정적, 의존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을 강조하는 대안적 용어들이 주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노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는 하지만, 개인적 수준에서, 전문적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삶의 양식 안에 그것이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노인 인권을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수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인권 보장은 우리가 노인들의 삶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권 보장은 노인과 전문가 집단, 노인과 공공집단 간의 불평등에서 시작되며, 노인의 삶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 사회는 노인의 궁핍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공공의 안전과 불편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존중의 결여를 경험한다. 인권의식과 인권에 대한 열정적 관심은 무엇에서 출발되는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인권을 연구한 린 헌트(Lynn Hunt, 2007)는 인권은 이성만큼이나 감성에 의존함을 강조하였다. “인권은 자명성을 요구하는

바, 자명성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감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감성은 개인의 내면을 움직여 확신을 갖게 한다.” 인권 침해로 공포를 느낄 때 비로소 인권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타인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바로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인권의 감성적 토대로서의 공감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능동적 의지이자 문화적 실천으로, 인간이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인권의 발전이 있었다는 그녀의 제안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권을 발전시키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록 인권 관점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결과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실용적이고, 비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히려 인간적이고 공감적이며, 머리가 아닌 우리 몸에 새겨질 때 더 오래 지속됨에 주목해야 한다.

노인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은 그들의 살아온 인생과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라는 것이다. 일전에 행한 한 조사에서 노인들이 생각하는 학대는 ‘무시’였다. 존재하지만 없는 존재로 취급되는, 그들의 살아온 삶이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것은 곧 그들 존재 자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인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어 온 다양한 경험들이다. 그들의 삶은 스스로 경험한 것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역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기방임 노인의 행동은 정신적 손상이나 병리의 결과라기보다 비록 그것이 부적응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사물이나 관계에 대한 관습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현재의 서비스들은, 특히 시설보호나 재가서비스의 경우 대체로 그들 경험이 서사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오기 보다는 오히려 삶의 단절, 자신의 정체성과의 분리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일췌이다. 노인들에게 있어 연속성은 점점 더 중요한 사안이 되어가지만, 사회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정도의 여유나 배려가 없다. 공식화되어 가는 노인케어의 흐름 속에서, 정작 보살핌을 받는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환경과 사람들로부터의 보살핌을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정책은 일자리 창출, 노동력 확보 등의 명목으로 가족들을 가정 밖

으로 끌어내고, 가족의 빈자리에는 요양보호사라는 공식적 돌봄 제공자들로 채우고 그들에게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 형성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페미니스트들, 여성들의 목소리만 들어있을 뿐 노인들의 의사는 빠져있다. 자신의 의사를 얘기해도 그것을 의미없는 말들의 반복이거나 비합리적이라 여기는 사회적 편견 앞에서 노인들의 권리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참 고 문 헌

- 김정석·김영순 역. 2000.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나눔의 집.
- 김종철. 2010. “포기를 통한 행복의 추구”. 녹색평론.
- 노진철. 2004. “위협사회학: 위협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경제와 사회, 63, 98~123.
- 런헌트 저, 전진성 역. 2009. 인권의 발명. 돌베개.
- 샌드라 프레드먼 저/조효제 역. 2009. 인권의 대전환: 인권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교양인.
- 올리히 벡 저/홍성태 역. 2006. 위협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 올리히 벡 외/한상진, 심영희 편저. 2010. 위협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 유해미. 2006. “아동 양육 정책의 재편과 시민권의 변화”. 페미니즘연구, 9~44.
- 지그문트 바우만 저/ 문성원 역. 2002. 자유. 도서출판 이후
- 홍세화. 2009. 생각의 좌표. 한겨레출판.
- 홍일선. 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공법학연구, 9(2), 139~180.
- Biggs, S. Phillipson, C. & Kingstot P. 1995. *Elder Abuse in Perspective*. Open Universty Press.
- Dunbar, T. 2003. “Autonomy versus beneficence: an ethical dilemma”, *Primary Health Care*, 13(1). 38~41.
- Dwyer, P. 2002. “Making sense of social citizenship: some user views in welfar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ritical Social Policy*, 22(2), 273~299.
- Faulks, K. 2006. “Rethinking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Education,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1(2), 123~140.
- Harbison, J. 1999. “The changing career of ‘elder abuse and neglect’ as a social problem in Canada: learning from feminist framework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11(4). pp.59~79.

Hall, T., Williamson, H. & Coffey, A. 2000. "Young people, citizenship and the Third way: A role for the youth service?". *Journal of Youth Studies*, 3(4), 461~472.

Kingston, P. & Penhale, B.(eds.) 1995. *Family violence and the caring professions*, Macmillan Press.

노인인권(사회권)에 대한 다차원적 비교연구

백 승 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1. 서론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되다가 2050년에는 -1.0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구구조 형태는 1960년의 피라미드형에서 2005년 현재 중형으로 변화되었으며 2050년경에는 주발형(항아리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요약되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가 현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소년부양비의 감소로 2016년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상승하는 U자형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소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는 2005년 현재 26.8%에서 출산력 감소로 인하여 2030년 17.7%, 2050년 16.8%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05년 현재 12.6%이나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7.7%, 2050년 72.0%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안상훈 등, 2007).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999년 6.9%에서 2002년 7.2%, 2006년에는 9.5%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38.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최현수·류연규, 2003; 최효미, 2007).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여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무척 이례적이다. 실제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서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도달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일본은 2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18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5).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과거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다양한 노인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에 따른 문제들, 연령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들, 노인들의 빈곤문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으로 노인들을 부양하는 기능을 했던 가족의 역할이 약화됨

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더 크게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의 권리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사회적 부양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1982년에는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을 통해 고령화, 노인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 7개 하위분야의 정책방향으로서 62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는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5개 항에 대해 18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서는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등 다양한 행동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안진, 200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라는 정책기조를 토대로 노인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심재호, 2005). 이후 수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어 왔다. 1991년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고령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6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노인학대와 폭력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도입 등 노인문제와 노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권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노인인권 현황에 대해 사회권의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의 노인인권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노인인권을 주로 자유권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들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노인학대, 노인방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심재호, 2005; 양철호, 2004; 우국희, 1999, 2008 등). 일반적으로 노인의 인권은 자유권 뿐 아니라 사회권 등 기본권 전체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노인인권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노인인권 논의에

서 주로 재가노인에 대한 노인학대와 시설거주 노인에 대한 노인인권 침해의 해결을 위한 노인인권보장 기준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안진,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권이 자유권을 넘어서 사회권의 수준에서 요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물론 노인의 사회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즉, 노인들의 사회보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노인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인의 인권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안진, 2007:1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어떤 존재가 될 적극적 권리와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할 때(Fredman, 2009:59) 노인들에 대한 사회권의 보장은 노인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 권리로 노인 인권을 해석하고, 사회권 보장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노인인권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향후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본 연구의 접근 방향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사회권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할 연구의 범위와 자료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노인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인권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2. 인권에 대한 재해석

1) 전통적 인권개념의 재해석: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인권에 대한 전통적 접근에서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삶에 간섭할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간섭을 억제하는 억제의 의무를 가진다고 해석되어왔다(Fredman, 2009:77). 따라서 인권담론에서 복지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즉,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약함으로써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은 최소주의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Fredman(2009)이 인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적극적 복지제공 의무이론’ 관점이다. Fredman(2009)은 개인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통합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국가복지의 확대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 자격이 없으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무슨 큰 소용이 있겠는가.(Fredman, 2008, 조효제 역: 183)

전통적으로 평등권은 고전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속했으며, 국가가 차별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 평등과 자유라는 렌즈로 보면 평등권에도 평등을 신장하기위한 적극적 의무가 포함됨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Fredman, 2008, 조효제 역: 186).

둘째는 복지가 인권과 모순적이라면 이는 복지제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복지권과 인권이 모순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복지제도가 선별주의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자산조사로 인해 스티그마가 부과되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redman(2009)의 적극적 의무로서의 인권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인권담론에서 복지권에 주목하고자 한다. Fredman(2009)은 적극적 의무라는 틀을 가지고 복지권을 보게되면, 복지권이 인권이라는 기본틀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권은 적극적 자유개념과 실질적 평등개념, 이 양자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인간의 실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의 내용없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또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은 국가의 의무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들을 만들어낸다. (Fredman, 2009, 조효제 역: 480)

2)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관련된 논의들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먼저 T.H. Marshall(1950)의 시민권론을 들 수 있다. Marshall은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공민권과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기여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는 시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시민권은 공동체의 전체성원들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지위이다. 이 신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분에 따르는 권리들과 의무들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 권리들과 의무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권이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는 이상적인 시민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상적인 시민권과 대조해서 성과가 평가되고 열정이 집중된다. 그렇게 구상된 경로를 따르려는 열망은 보다 완전한 평등적 조치와 시민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확장, 시민권이 부여되는 사람들의 증가를 향한 열망이다 (Marshall, 1950:28-29).

물론 Marshall의 시민권론은 재해석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측면보다는 개인의 의무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성도 존재해왔다(Janoski, 1998; Mead, 1997).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개인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사회정책 영역에서 또한 복지에서 노동이라는 workfare 프로그램들이 생산적 복지, 제3의 길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시행되어왔다. 이들은 Marshall의 시민권론이 권리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무에 관한 만성적 회피는 권리가 그 실현을 위해서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의무가 각 개인들의 일련의 시민권적 권리를 작동 가능한 권리 시스템으로 만들기를 강제해야만 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것이다. Marshall은 분명하게 이 지점에 대해서 “만약 시민권이 권리의 방어를 기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민권의 의무는 무시될 수 없다”(1964:13)고 서술하고 있다(Janoski, 1998:53)

“역기능적인 빈곤은 근본적인 방식에서 Marshallian의 개념을 위협한다. 평등한 시민권이 사회적 급여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온전한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은 시민권의 청구를 강조한다. 그러나 Marshall 또한 의무를 언급했다. 현대 국가들은 법에 복종할 의무, 조세를 납부할 의무, 군대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했다.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Marshall, 1964:82)” (Mead, 1997:203).

그러나 시민권론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는 평등권론으로 해석되어 왔다(김영란, 2001; 김영순, 1999; 박순우, 2004; Craig, 2004; Cox, 1998; Esping-Andersen, 1990; Turner, 1986; Shaver, 2002). 권리를 개념규정 할 때 “권리의 주체가 의무의 주체에 대해 어떠한 근거에서 어떤 권리를 요구한다”라는 것이 기본적 논리구조라고 볼 때 권리를 논할 때 반드시 의무의 주체인 상대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Fredman, 2009).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서 복지의 제공 즉, 사회권은 인권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자료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권을 역제의 의무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 의무 관점(사회권 보장)에서 규정하고 노인 인권의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인 인권 현황은 노인들의 사회권 인식수준과 국가의 사회권 보장 수준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 차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사회권 보장 수준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접근은 의무 주체의 적극적 역할 뿐 아니라, 권리주체의 요구라는 차원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권리주체의 요구는 그들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인권을 의무주체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무주체의 적극적 의

무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서 사회권 보장 영역은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건강 및 교육이 포함된다(Esping-Andersen, 1990; Dean, 1996; Marshall, 1981; 이인제 등, 2006). UN에서도 1991년 노인인권을 위한 원칙으로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원칙 중 독립과 보호의 원칙에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공공사회지출 총량 수준에 대한 검토와 공적 연금의 수준 등 제도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제공 의무가 인권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복지가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가 계층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인권의 중요 영역인 개인의 자유가치, 실질적 평등, 연대의 가치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Esping-Andersen (1990)의 세 가지 복지체제 유형 중,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욕구에 기반한 사회정책, 시민주의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정책을 실현하고 있다(Fredman, 2009). 욕구에 기반한 사회권 원칙은 빈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평등권을 실현하는데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Fredman, 2009: 492). 따라서 세 가지 복지체제에서 사회권의 실현 정도는 다를 것이며, 그 결과 노인 인권의 보장 수준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비교의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함으로써 노인들의 인권이 나라에 따라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2) 연구자료

먼저 권리주체인 노인들의 사회권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조사자료(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2006년 국가의 역할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ISSP는 불평등(Inequality), 시민권(Citizenship), 정부역할(Role of Government), 종교(Religion), 환경(Environment), 가족(Family)등의 주제로 매년 30여 개국에서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된 인식조사 프로그램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정부역할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 중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권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문항을 통해 국가의 적극적 책임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를 측정 할 수 있다. 해당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질문. 다음의 내용들은 정부가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b.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c. 노인들에게 적당한 생활수준을 제공한다.
 - d. 실업자들에게 적당한 생활수준을 제공한다.
 - e.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득 차이를 줄인다.
 - f. 적당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주거를 제공한다.

위 각각의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아래와 같다.

- 가. 매우 그렇다. 나. 그렇다고 생각한다.
-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 절대 아니다. 마. 잘 모르겠다.

다음으로 의무주체인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OECD(2008)의 사회지출자료(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와 Scruggs(2004)의 CWED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Database)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OECD (2008)의 SOCX는 노령, 유족 등 9가지 항목으로 공공사회지출 세부항목들을 분류하여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령부문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총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Scruggs(2004)의 CWED 자료는 1971년부터 2002년까지 실업, 상병, 연금 보험의 급여 대체율, 자격기준 등에 대한 연간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비교자료이다. OECD(2008)의 공공사회지출 자료가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여부와 관련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면, CWED자료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연금보험의 급여대체율, 자격기준에 대한 제도적 규정들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법제도적 권리로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인권

1) 노인들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인권을 사회권 즉, 국가의 적극적 의무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서 6가지 항목들에 대해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6가지 항목은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보호를 제공할 의무, 노인 및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의무, 부자와 빈자의 소득격차를 줄일 의무,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에게 적정수준의 주거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

(1)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

노인들은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대해 <표 1>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표 1> 일자리 제공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국가	매우동의	동의	반대	매우반대	계
덴마크	21.57	37.24	28.86	12.34	100
핀란드	24.8	33.54	25.61	16.05	100
노르웨이	41.19	37.55	16.6	4.65	100
스웨덴	28.61	30.28	28.26	12.85	100
프랑스	31.63	30.21	21.73	16.43	100
독일	38.00	33.23	22.79	5.99	100

(단위, %)

국가	매우동의	동의	반대	매우반대	계
네덜란드	19.52	36.77	26.57	17.14	100
호주	13.52	29.54	36.11	20.83	100
스위스	10.02	40.29	40.91	8.78	100
뉴질랜드	12.05	25.3	33.85	28.8	100
캐나다	12.51	22.5	34.1	30.88	100
영국	17.54	38.56	29.15	14.75	100
미국	15.89	23.67	34.64	25.8	100
일본	16.35	35.45	30.58	17.63	100
한국	20.78	49.33	25.05	4.84	100

<표 1>에 따르면,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군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비율은 10%대인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보수주의 및 사민주의 국가군들은 20% 후반에서 많게는 41%까지 일자리 제공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20.78%의 노인이 일자리 제공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것에 강한 동의를 표현하고 있어 자유주의 국가군의 응답수준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2)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보호를 제공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

노인들은 건강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대해 <표 2>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표 2>에 따르면, 건강보호가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노인의 비율은 일자리 제공에서의 응답비율에 비해 매우 높았다. 노르웨이 노인들은 90%가 건강보호를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호주와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시스템의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70% 정도의 노인들이 건강보호를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비율의 노인들이 건강보호를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건강보호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단위, %)

국가	매우동의	동의	반대	매우반대	계
덴마크	86.5	12.6	0.52	0.37	100
핀란드	81.04	17.84	0.95	0.17	100
노르웨이	90.31	8.86	0.45	0.38	100
스웨덴	62.51	31.12	4.97	1.39	100
프랑스	58.74	33.64	5.79	1.83	100
서독	56.52	39.92	3.18	0.38	100
네덜란드	65.69	33.37	0.73	0.21	100
호주	71.24	27.12	1.45	0.19	100
스위스	25.2	63.01	10.26	1.52	100
뉴질랜드	68.79	29.23	1.49	0.5	100
캐나다	68.18	28.07	2.87	0.88	100
영국	73.15	25.84	0.67	0.34	100
미국	56.44	33.33	7.7	2.52	100
일본	41.31	45.54	9.71	3.44	100
한국	35.92	54.67	8.77	0.64	100

(3)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

노인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인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수준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사민주의 국가군이 70% 전후로 높은 비율의 노인들이 노인들에 대한 적정 생활수준 보장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등 보수주의 국가군에서 보다 영국, 미국 등의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이익집단의 정치가 발달된 결과이기도 하고, 보수주의 국가들에서 노인 부양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35% 정도의 노인들이 노인에 대한 적정생활수준 보장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권리의식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단위, %)

국가	매우동의	동의	반대	매우반대	계
덴마크	73.56	23.90	2.17	0.37	100
핀란드	67.01	29.87	2.68	0.43	100
노르웨이	84.51	14.12	1.14	0.23	100
스웨덴	66.81	30.16	2.51	0.52	100
프랑스	53.64	39.86	5.24	1.25	100
서독	49.57	45.24	4.49	0.71	100
네덜란드	53.19	43.36	3.34	0.1	100
호주	56.12	38.81	4.58	0.49	100
스위스	27.92	61.83	9.24	1.02	100
뉴질랜드	58.04	37.23	4.06	0.66	100
캐나다	58.82	35.82	4.27	1.1	100
영국	63.36	34.08	2.45	0.11	100
미국	57.08	32.94	8.2	1.79	100
일본	44.3	44.21	8.62	2.87	100
한국	35.71	54.30	9.36	0.64	100

(4) 실업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

<표 4>는 실업자들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실업자들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단위, %)

국가	매우동의	동의	반대	매우반대	계
덴마크	30.31	50.46	14.96	4.27	100
핀란드	33.07	52.67	11.68	2.58	100
노르웨이	35.06	53.44	9.88	1.62	100
스웨덴	26.96	56.48	12.95	3.61	100
프랑스	18.45	51.79	22.14	7.62	100
서독	20.36	52.84	20.79	6.02	100
네덜란드	15.93	53.43	26.33	4.31	100
호주	11.05	46.21	31.1	11.64	100
스위스	5.1	61.85	29.22	3.83	100
뉴질랜드	8.51	40.67	33.19	17.63	100
캐나다	18.12	44.93	28.25	8.7	100
영국	13.39	43.96	31.4	11.26	100
미국	16.01	35.95	34.59	13.45	100
일본	18.29	38.16	30.64	12.91	100
한국	18.41	51.83	23.93	5.84	100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민주의 국가군들이 30% 수준의 적극적 동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에 영국, 호주 등 자유주의 국가군들은 10% 수준의 낮은 비율이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장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질문에 비해 실업자의 생활보장에 대해 18% 정도의 노인들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5) 소득격차를 줄일 국가의 적극적 의무

<표 5>는 노인들이 소득격차 해소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군에서 20% 수준의 노인들이 소득격차해소를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등 사민주의 국가군은 40% 정도의 노인들이 소득격차 해소를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질문 문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시민주의 국가군과 비슷한 40% 정도의 노인들이 소득격차해소를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단위, %)

국가	매우동의	동의	반대	매우반대	계
덴마크	29.97	25.31	26.63	18.09	100
핀란드	41.73	36.06	16.55	5.67	100
노르웨이	44.69	29.45	19.38	6.48	100
스웨덴	37.24	30.49	22.49	9.78	100
프랑스	51.67	25.98	13.63	8.72	100
서독	37.88	37.06	19.39	5.68	100
네덜란드	38.84	33.05	20.06	8.05	100
호주	30.39	30.23	26.68	12.7	100
스위스	25.15	44.12	25.88	4.85	100
뉴질랜드	22.15	28.07	29.1	20.69	100
캐나다	36.86	30.93	19.07	13.14	100
영국	28.85	40.46	21.26	9.43	100
미국	28.64	23.63	26.68	21.06	100
일본	34.29	31.71	21.66	12.35	100
한국	40.46	40.14	16.13	3.27	100

(6)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에게 적정수준의 주거를 제공할 의무

<표 6>은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의 노인들이 주거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는 비율이 9%로 가장 낮았고, 프랑스의 노인들은 주거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는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다른 문항과 달리 시민주의 국가군들에서 노인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주거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표 6> 적정수준의 주거를 제공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단위, %)

국가	매우동의	동의	반대	매우반대	계
덴마크	32.57	49.73	13.96	3.74	100
핀란드	30.31	57.04	11.12	1.52	100
노르웨이	28.93	52.59	15.49	2.99	100
스웨덴	24.98	54.4	17.24	3.38	100
프랑스	36.3	50.73	10.09	2.87	100
서독	22.96	56.75	17.44	2.855	100
네덜란드	27.92	54.97	14.79	2.32	100
호주	22.76	57.14	15.97	4.13	100
스위스	8.75	55.18	32.61	3.46	100
뉴질랜드	19.74	51.79	21.11	7.35	100
캐나다	29.37	55.2	12.69	2.74	100
영국	27.38	58.53	10.65	3.44	100
미국	33.13	43.39	18.78	4.69	100
일본	11.14	26.72	35.88	26.25	100
한국	20.33	50.45	25	4.22	100

이상으로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 노인들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질문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인권의 의무주체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복지국가의 수준이 매우 낮고,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도록 유인하는 맥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복지수준이 높을 경우 노인들은 복지제도의 수급경험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등 사민주의 국가군들에서 일자리 제공 등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고 인식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복지제도가 노인의 권리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노인들의 사회권 현황

이 절에서는 노인들의 사회권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 대상 사회복지지출 총량, 연금의 탈상품화 정도에 대해 국가간 비교 자료를 분석하고,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한국에 국한해서 사회권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 대상 사회복지지출 총량

<표 7>은 노인들에 대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 총량의 경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보수주의 국가군에서 10% 이상의 높은 지출수준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사민주의 국가군들에서 GDP 대비 6-9% 정도가 노인복지지출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군들에서 4-6% 정도를 노인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GDP 대비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노인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었다.

총량적 지출수준을 현금과 서비스 지출로 구분할 경우, 사민주의 국가군에서는 서비스 지출에 GDP 대비 2% 전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보수주의 국가군에서는 1% 미만의 지출을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보수주의 국가군에서는 현금지출 부문에서 10% 이상의 높은 지출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사민주의 및 보수주의 국가군에서 노인들의 사회권 수준이 높게 보장되고 있으며, 자유주의 국가군에서는 노인들의 사회권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노인들의 사회권 보장수준은 매우 낮아서, 스웨덴의 1/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 노인 대상 사회복지지출 현황

	현금지출	서비스지출	계	비고
스웨덴	7	2.5	9.6	
덴마크	5.4	1.8	7.2	
노르웨이	4.6	1.8	6.3	
핀란드	7.5	1	8.5	
네덜란드	4.7	0.9	5.5	
오스트리아	12.2	0.4	12.6	
프랑스	10.6	0.3	10.9	
독일	11	0.2	11.2	
벨기에	7	0.2	7.2	
이탈리아	11.5	0.1	11.6	
영국	5.5	0.6	6.1	
미국	5.3	0	5.3	
스위스	6.4	0.2	6.6	
호주	3.2	1.2	4.4	
일본	7.4	1.2	8.6	
한국	1.3	0.2	1.5	

(2) 공적연금의 탈상품화 수준

<표 8>은 Esping-Andersen(1990)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된 2002년도 기준 공적연금의 탈상품화 점수와 전체적인 탈상품화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공적연금의 탈상품화 지표는 소득보장영역에서 노인들의 사회권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8> 탈상품화 점수

	2002년도	공적연금 탈상품화 점수	탈상품화 점수	비고
네덜란드	2002	14.0	34.6	
노르웨이	2002	14.0	37.3	
스웨덴	2002	12.0	32.5	
핀란드	2002	12.0	30.1	
오스트리아	2002	12.9	28.8	
벨기에	2002	13.0	30.6	
캐나다	2002	11.7	25.1	
덴마크	2002	14.0	34.9	
프랑스	2002	12.0	27.0	
독일	2002	10.9	30.2	
이탈리아	2002	14.0	26.7	
일본	2002	10.0	21.4	
스위스	2002	11.0	21.9	
영국	2002	11.0	24.7	
미국	2002	10.2	18.1	
호주	2002	7.9	17.9	

전반적인 탈상품화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7.3점이었고,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로 17.9점이었다. 공적연금의 경우,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사민주의 국가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미국, 호주 등 자유주의 국가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Esping-Andersen(1990)의 탈상품화 점수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도 노인들의 사회권은 그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2007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28년 40%로 급여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연금급여액이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인 경우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

로 예상된다(김수완, 2008). 이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한국 노인들의 객관적 질병 상태를 본인인지 질병 및 의사진단 질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인인지 질병은 65세 이상 기준 86.7%의 노인이 한 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진단 질병은 65세 이상의 경우 84.9%의 노인이 의사로부터 한 개 이상의 진단받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또한 유병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만성질환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81.3%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반면에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 28.4%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0.2%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건강상태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 중 간병수발자가 있는 경우는 32% 정도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들의 높은 객관적 질병상태와 건강에 대한 낮은 만족도 그리고 낮은 간병수발자의 비율은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노인들의 사회권 보장 수준이 낮음을 예상하게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노인들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자.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표 9>와 같다.

<표 9> 노인복지시설 종류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이용) 대상자	설치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 복지 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성질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 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시·도지사 허가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이용) 대상자	설치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 군수· 구청 장애 신고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 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389) 운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시·도 지사 지정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a), 노인복지법 제 31조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기준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표 10>과 같다. 전체 노인복지시설은 63,919개이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정원은 112,064명이고 입소현원은 155,150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백만 여명인 것에 비하면, 노인복지시설 6만여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수준에서도 확인했듯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0> 노인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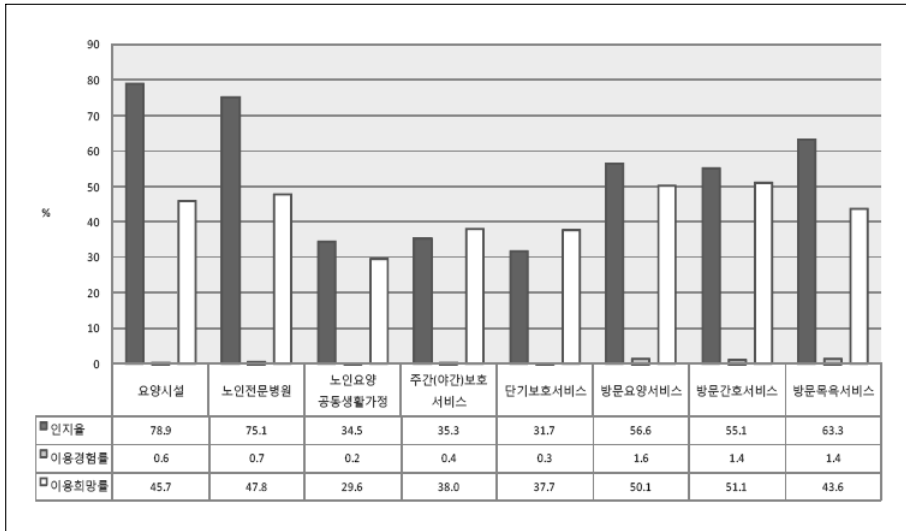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08.12.31.)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총계	5,069,273	63,919	112,064	155,150	65,280
노인주거복지시설		347	17,342	11,383	2,665
노인의료복지시설		1,832	81,262	69,038	34,749
노인재가복지시설		2,298	13,460	74,729	27,866
노인여가복지시설		59,422	-	-	-
노인보호전문기관		20	-	-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a)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은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 한국의 낮은 노인사회권 수준을 확인시켜준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요양시설이나 요양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여가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상담 및 생활지원서비스로 나누어 노인들의 인지, 이용경험은 <그림 1>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림 1>에 따르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낮게는 30%, 높게는 80% 정도의 인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이용경험률은 대부분 1%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인지율, 이용희망률과 이용경험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은 매우 적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권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노인들의 사회권 수준이 매우 낮음을 확인케 해주는 자료이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그림 1>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율, 이용율, 이용희망률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권을 의무 주체인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노인들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인 사회권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건강보호와 노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호해주는 것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에, 일자리 제공, 실업자에 대한 국가개입, 소득격차 해소, 주거복지 부문에서 노인들의 적극적 동의는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건강보호와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생활보장에 대해서 적극적 동의를 표현하는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 노인들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인부양에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

하는 한국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도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낮은 복지수준이라는 제도적 제약하에서 복지에 대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한국노인들의 경우 노인복지 제공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 혹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노인관련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량의 경우 자유주의 국가군의 경우 매우 낮은 지출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유럽 복지 선진국가들과는 많게는 여섯배,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는 4배정도로 낮은 노인복지지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에 대한 한국의 총량적 사회권 수준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노인관련 소득보장제도의 사회권 보장 수준을 탈상품화의 관점에서 살펴 본 결과, 사민주의 국가군에서 공적연금의 탈상품화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한국 노인들의 탈상품화 수준을 하락시키는 제도 변화를 진행시켰다. 그 결과 연금수급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 노인들의 사회권 보장이 상당한 위험수위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의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 시설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 희망비율에 비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노인들의 질병 진단율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현상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기준 노인들의 본인인지 질병은 86.7%, 의사진단 질병은 84.9%로 노인이 한 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유병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만성질환의 경우 노인의 81.3%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50.2%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 노인들의 경우, 총량적 급여지출 수준 뿐 아니라, 제도적 소득보장 수준 및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도 사회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의 노인인권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란(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배제에서 포용으로”. 사회복지정책, 제13집.
- 김영순(1999). “‘제3의 길’위의 복지국가: 블레어정부의 『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한국정치학회보, 33편, 4호.
- 박순우(2004). “T. H. Marshall 시민권론의 재해석”. 사회복지정책, 제20호.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년 노인복지시설현황.
- 심재호(2005). 노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월간 복지동향, 2005. 05. 참여연대.
- 안 진(2007). 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화에 대한 소고. 인권법평론, 1, 109-134.
- 안상훈(2008).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서울대학교 사회정책연구그룹.
- 안치민(2006).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보장.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 4, pp.371-392.
- 양철호(2004). 노인학대 바로알기. 사회연구, vol. 5. no.1.
- 우국희(1999). 노인학대 개념정립을 위한 비판적 고찰. 상황과 복지, vol. 6.
- 우국희(2008). 노인학대 유형으로서 자기방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 40.
- 이인재 등(2006). 사회보장론. 나남.
- 최현수·류연구.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3권, 제3호:143~160.
- 최효미. 2007. “패널연구: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노동리뷰』, 2007년 4월호: 69~79.
- Cox, Robert Henry.(1998) The Consequences of Welfare Reform: How Conceptions of Social Rights are Changing. Journal of Social Policy, .27:1, 1-16.
- Craig, Gary.(2004). Citizenship, Exclusion and Older People. Journal of Social Policy, .33:1, 95-114.

- Dean, H.(1996). Welfare, Law and Citizenship. Prentice hall.
- Esping-Andersen, G.(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dman, S.(2009). 인권의 대전환. 조효제 역. 교양인
- Janoski, T(1998).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A Framework Rights and Obligations in Liberal, Traditional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all, T.H(1981).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The Free Press.
- Mead, L. M.(1997). Citizenship and Social Policy: Y. H. Marshall and Pover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4(2), pp.197-230.
- OECD(2008).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 Shaver, Sheila.(2002). Australian Welfare Reform: From Citizenship to Supervisio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6:4, .331-345.
- Scruggs, L.(2004). Welfare State Entitlements Data Set: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f Eighteen Welfare States, Version 1.0.
- Turner, Bryan S.(1986). Citizenship and Capitalism the Debate over Reformism. 서용석, 박철현 역. 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울: 일신사.

노인돌봄의 제도화와 노인 인권 : 자유주의적 권리의 형성과 한계

양 난 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들어가며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낮은 출산율과 맞물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조응해야 하는 사회정책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추세와 맞물려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특히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s) 분야이다. 먼저 정부 재정지출의 측면에서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 일반 예산은 8.2% 증가한 데 비해 보건복지 부문 예산은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나아가 사회서비스 예산은 2007년까지 연평균 36.6%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또 제도적 변화 차원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로써 노인돌봄미 바우처가 2007년 시행되었다가, 기존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사업과 통합되어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로 정비되었고, 사회보험방식으로 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2008년 시행되었다.

급속도로 하락한 출산율,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형성된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서 조성된 긴장은 전통적으로 가족, 엄밀히 말하면 가족 내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오던 보육과 노인돌봄 문제를 급작스레 사회적 아젠다로 부상시켰다. 가족은 더 이상 노인돌봄을 안정적으로 담당할 사회적 단위가 되기는 어려웠다. 우선,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전일적으로 담당해왔던 여성의 역할은 유지되기는 어려워졌다. 또한, 비정규일자리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워지는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하락이라는 조건은 일인생계부양자에 의해 안정적인 가구소득이 유지되는 것 또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혼과 재혼, 독신가구 증가 등의 추세로 다양한 해진 가족과 가구의 양상은 더 이상 노인돌봄이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창출하였다.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철저하게 '선가족보호'를 원칙으로 하였고, 가족에 의한 돌봄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급여 자격을 갖춘 노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의 노인돌봄 제도화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돌봄서비스 대상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서비스 수혜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이제 국가가 돌보겠습니다”라고 공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족에게, 혹은 개인적 책임의 범주 안에서 해결되어야 했던 노인돌봄이 사회화되었고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적이고 공적으로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돌봄의 공적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서 노인의 인권을 권리(rights)의 변화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인권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인간이기에 가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천부인권,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근대국가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특성을 구성한다. 자신의 삶을 결정한 권리 주체로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 인권사상의 핵심이자 근대사회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자원과 기회의 재분배를 통해 평등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정신은 인권의 실현과 부합한다고 하겠다.

인권이 도덕적, 당위적, 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된 인간의 권리라면 시민권(citizenship)은 제도적, 법적, 현실적으로 보장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최현, 2008:17). Marshall은 시티즌십의 완성을 20세기 사회권(social rights)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실현에서 찾았으며(Marshall, 1962) 프리드먼은 국가의 최소개입, 개인의 자유 보호라는 국가의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사회권도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요청하는 핵심적인 인권이 됨을 밝히고 있다(프레드먼, 2009).

즉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권리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 실현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여러 학자들은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돌봄의 공적 제도화는 그것 자체로 사회권 실현에의 일보 전진을 의미한다. 돌봄을 통해 노인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확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권리의 질적 측면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권으로 표방되는 사회복지의 권리도 구체적인 제도의 성격, 급여의 성격에 의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를 분석해보는 것의 의미가 있고, 사회복지에서 인권의 내용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관계재(relational goods)의 특성을 가지는 ‘돌봄’(care)은 이러한 권리의 양상을 여러 행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말해 상호작용 안에서 형성하게 한다.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권리가 한 사회에서 돌봄의 양상(care arrangement)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며, 돌봄의 양상은 돌봄의 공급과 전달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돌봄(social care) 체계 안의 수혜자가 된 노인의 권리가, 돌봄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질적인 변화를 보이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변화 양상, 특히 관계 속에서 권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 안에서 노인의 권리를 ‘제도적 표명’으로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실현 지점’으로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권리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변화를 개괄해보겠다. 그리고 노인돌봄 미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일어난 노인돌봄정책에서의 지각변동이 노인의 권리의 측면에서 어떤 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인권적 관점에서 변화한 권리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변화¹⁾

1)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한국의 사회서비스, 특히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아동 양육과 더불어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 아래 있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돌봄은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왔다(조형·강인순·김진주, 2003:104). 국가는 보호할 가족이 없는 서비스 대상자에 한하여 시설에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한정적으로 제공해왔다. 이러한 시설보호서비스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1) 이 장은 필자의 박사논문인 <바우처 정책집행연구>의 일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민간단체에 의해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생산, 공급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 시설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에 그쳤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나 감독,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과 통합적인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은 거의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봉주·김용득·김문근, 2007; 이현주 외, 2003).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역사적으로 민간에 의한 시설서비스로 출발하였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인원조기관에 의해 공급되던 사회복지서비스는 1976년 외원단체들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외원기관의 사업을 전수받은 국내민간기관들에 의해 제공되기 시작했다. 원조와 구호 활동 중심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고아원 등 보호시설에 의해 수행되었다. 국가는 외원자금이 중단되어 재원이 부족한 민간시설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이혜경, 1998).

전체적으로 시설 외 사회서비스가 미약하게나마 도입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후반부터였으며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전체 사회복지의 양적 확대에 조응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이용시설이 생기고 부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다(이영환, 2004).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산하에 재가복지센터, 자활센터, 놀이방, 공부방 등을 가지고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이라는 지역 이용시설은 기존의 취약계층 보호적 성격을 가진 생활시설과 더불어 한국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양대 축을 이루게 된다.

즉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점차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되고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관이 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에서 부분적인 재정지원 역할을 맡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부분적인 재정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부문의 분담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직접적인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정부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간주하였다. 특히 198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역사회 복

지관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 욕구들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공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복지관의 규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공급자지원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서비스 전달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급기관이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정부는 민간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초기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에 제한한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시설운영을 전담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서비스 공급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정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시설설치를 허가제로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해 규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건립하고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에 1980년대 후반부터 공공부문이 설립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시설위탁계약이 등장한 것은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었다. 이 위탁운영방식은 1990년대 후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시설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위탁운영이 명시되었고 위탁계약방식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의 실시, 위탁계약방식의 확산은 199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봉주 외, 2007).

사회서비스 변화 추이는 노인분야에 초점을 맞춰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1983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가 실시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사업이 시작되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설립근거를 가진 사회복지관은 꾸준히 확장되어 노인을 포함한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었다.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된 시기는 1980년대 말부터다. 1987년부터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시

범실시되고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1989년부터는 노인여가활동 기반으로 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었다. 2007년 5월 도입된 노인돌봄미바우처로 인해 노인재가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으로 제한되던 것을 뛰어넘게 되었다. 나아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공적으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었다.

2)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최근까지 비영리민간기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이들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그리고 생계보호대상자와 취약계층으로 제한된 서비스 대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5년간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급속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돌봄 제도화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요자 지원방식을 선호한다는 점, 또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에 의해 담보된 수요자 구매력을 두고 영리사업자, 비영리단체들이 경계 없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방식의 특징은 공급자 지원 중심이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급하거나 민간에 대한 기관위탁과 위탁기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적 규정은 1970년에 수립된 사회복지사업 제13조²⁾에 나와 있다. 1976년 의원기관들이 철수를 종료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내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이 시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늘고 의원자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시설들은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게 되었다(이혜경, 1998).

2) 사회복지사업법(1970) 제13조 (보조금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은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시설 설치의 자격은 1970년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오직 법인에게만 할 수 있다가 1992년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시설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조금 지급도 법인과 비영리법인만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로까지 확대하게 된다.³⁾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이어야 입소자격이 부여되는 생활시설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1%~88.6%에 달한다(김미숙 외, 2003). 그러나 대표적인 지역사회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은 전체 재정의 47.4%를 차지하고 18.6%가 이용료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이봉주 외, 2007:37).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생산과 전달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기관에서 주도해왔다. 이러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식은 그동안 두 가지 경로를 보여왔다. 하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걸쳐 사용된 서비스 확충방식으로 운영주체가 토지 또는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정부는 운영비 또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생활시설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정부가 토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이를 특정 운영주체에게 위탁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서비스

3) 사회복지사업법(1997)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보조금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를 제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시설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김용득, 2009:28).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비,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어오다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추진되게 된다.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을 도모한다는 면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크기는 생활시설의 경우 입소자 수, 이용시설의 경우 시설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김미숙 외(2003)의 연구는 생활시설에서 인원당 정액방식은 시설을 대형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시설의 대형화는 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 역시 시설규모에 의해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기보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지역의 인구규모, 서비스 욕구, 이용자 규모, 서비스 공급량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이봉주 외, 2007:43).

그러나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운영비 지원, 서비스 위탁방식 등은 공급자지원방식 사회서비스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급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회복지시설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보조금 사용결과를 보고하며 행정적 규제를 따르는데 집중함으로써 서비스 전달기능이 약화되거나 왜곡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김영종, 2002). 이는 곧 재원조달이 이용자와 관계없이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용자나 지역사회보다는 공공부문에 대한 종속적 의존관계를 가져오기 쉽다(Tourigny and Miller, 1981, 이봉주 외 2007:45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여 보면,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져온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민간비영리기관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점, 두 번째, 정부의 책임은 이들 공급기관에 대해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는 점, 세 번째, 위 두 가지 특징의 결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대한 감독이나 평가 기제의 발달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양적 확대를 전개해오는 과정에서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야기되었던 인권 유린 문

제나 시설운영자의 부정비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고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어려웠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이나 서비스 전달자들에 의해 존중되거나 실현되기도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권리의 성격

한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이 도입되고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권을 받은 이들과 차상위 계층, 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복지급여는 대상과 자격기준, 급여내용 등을 담고 있는 별도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의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매년 신청되고 유지되었다. 또한 대상자를 정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는 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영리민간기관들의 재량에 의해 수행되었다.

잔여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에서 권리(rights)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한 마디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권리성’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대상 범주가 정해질 뿐 구체적으로 욕구 사정이나 적격성 판정이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직접 이용자들을 대면하는 이들은 일선 사회복지기관이었고 욕구 사정이나 대상 선정은 이들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재량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사회복지공급체계에서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에서 이용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둘러싸고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관계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권리는 서비스라는 급여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서비스는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특징을 갖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비영리기관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이들과 위계적인 관계를

맺는다. 재정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비영리기관은 정부의 내용적인 복지공급 대행기관의 성격을 가지지만 공식적인 지위는 갖지 못한다. 한편으로 민간비영리기관은 서비스 공급 자원으로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과 후원에 의존한다. 이들의 지원과 무급노동에 의존하며 실비 수준의 상징적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 질을 규제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자원봉사인력은 한편으로는 헌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타적 동기의 항상성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는 노릇이다. 마지막으로 이들과 관계를 맺는 서비스 수혜자, 이용자의 입장에서 주로 무료로, 자원봉사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이들 모든 행위자들의 관계의 공통적인 성격은 완전히 공식적이지도, 완전히 비공식적이지도 않는 반(半) 공식성을 보인다. 또한 그 내용은 다분히 온정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공급 측면의 행위자들이 수요 측면의 이용자와 맺는 관계는 시혜적이고 위계적이다(<표 1> 참조).

<표 1> 공급자지원방식에서 행위자 역할과 관계의 성격

	이용자	돌보미	제공기관	정부
역할	서비스 수급	서비스 전달	서비스 제공	보조금 지원
행위자간 관계의 성격	자선과 시혜	자원봉사 상징적 급여		재정적 종속

이러한 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수혜의 근원이 이용자의 서비스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제공자의 시혜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선과 시혜의 성격으로 구축되는 관계는 대등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 관계일 수도 없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의 욕구가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고 공급자 기준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행사되기 쉽다. 이용자의 권리는 주장되기도 어렵고 권리의 제도적 근거 역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는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에 기초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의 욕구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인 제공자 측에서 가장 잘 안다는 것이고 이들이 전문가로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이 그것이다(Le Grand, 2007). 또한 재정지원방식으로 공급자지원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에 비해 민간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기에 정부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형성된 공급자 지원방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각 행위자 사이에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가 불명료하게 정립된 채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요소가 혼재된 상태로 관계의 전근대성을 온존하게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민감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들은 수동적인 서비스의 대상, 보호와 조치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문제는 정부에 의한 규제적 요인이나 이용자에 의한 권리적 요인이 유인(incentives)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전적으로 제공기관의 사명감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것의 한계는 명백한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노인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특성 속에서 부재하였던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가 어떠한 변화를 통해 형성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3. 한국 노인복지에서 노인의 권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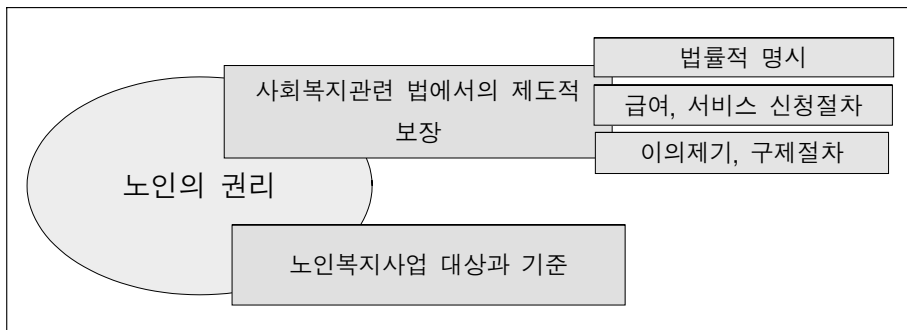
이제까지 민간주도, 공급자지원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진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복지급여를 제공받는 이용자 권리의 제도적, 실질적 근거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서 노인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의 권리가 한국의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어떻게 표명되고,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률의 모범이 되는(황인옥 외, 2004:139) 사회보장기본법과 시행령, 사회복지사

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나타난 노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노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의 명시적이고 법률적인 규정이 존재하는가, 급여와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어떻게 보장되는가를 통해 제도적 보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복지 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급여 중단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나 구제절차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사업들을 살펴 보면서 노인의 권리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노인복지사업에서 어떠한 노인에게 어떠한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살펴 보면서 개괄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 사회복지에서 노인 권리 분석틀

<그림 1>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에서 노인의 권리를 분석한 결과 첫째, 노인의 보편적인 사회권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둘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부문에서의 사회보장수급권과 급여의 신청, 이의제기 절차 등은 비교적 명료하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비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이의제기 절차 등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과 제도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노인 관련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노인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실제 생활세계에서 이들의 사회복지 관련 권리 행사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 사회복지제도에서 노인의 권리성 분석⁴⁾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보장수급권 조항이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관련 복지급여 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이다(황인옥, 2004:146). 그리고 개별 수급권의 내용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중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이 노인 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외한 모든 법에서 권리는 보험 가입자에게 부여된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자’가 지급 대상이다. 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며 자산조사를 거쳐 결정된다는 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공공부조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점은 부양의무자 조건이 부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⁵⁾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수급권이 발생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별도의 권리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자산조사나 ‘진단적 구분’을 통한 자원의 할당원리에 입각하여 잔여적인 복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권리는 보편적으로 표명되기보다는 대상별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⁶⁾을 통해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을 특정하는 선별주

4) 이 장은 필자의 글인 <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와 노인복지-개념화, 지표 개발 및 적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5)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5항).

의에 기초한 수급권으로 부여된다.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복지에 대한 별도의 권리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된 법 중에는 유일하게 장애인복지법에 독립된 권리조항⁷⁾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은 예외로 하고, 사회보장의 목적인 ‘기본생활의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성 급여와 서비스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와 가족,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신청급여주의와 직권 급여주의를 둘다 채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2003년 7월 신설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조항은 주목해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친족,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요구를 조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 2)는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포괄적 권리 보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사회보장관련 법에는 대개 행정심판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이의신청절차나 심사청구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장법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6) 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이 포함된다(김기원, 2004:267).

7)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35조 권리구제)’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이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쳐 권익을 구제받게 되는데 개별 법률에서 이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사회보험법에서 건강보험은 이의 내용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76조 이의신청). 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77조 심사청구) 또 공단, 심사평가원의 처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제78조 행정소송)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88조 심사청구) 이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이에 불복이 있으면 재심사청구(제90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심사청구의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며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제9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제55조 이의신청)을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에 불복하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제56조 심사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7조 행정소송).

기초노령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이의신청)는 규정만 있어, 시·도지사에게 대한 이의신청을 보장하면서 공무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의 심사와 처분, 통지의 의무를 명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제39조)과 차이가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복지실시기관’에 대한 심사청구 권리와 복지실시기관의 통보 의무, 불복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나(노인복지법 제50조 심사청구 등)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의신청과 구제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2) 노인보건복지사업에서 권리의 성격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프로그램들로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노인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계획에 입각하여 탄력적으로

복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들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재정을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제 어떤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표명뿐만이 아니라 개별 사회복지사업에서 노인의 권리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불가결하다.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7년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일부 독거노인에게 제공되어왔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권리성은 자산조사의 결과로 빈곤노인에게 부여되는 잔여적 권리였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이용시설을 제외하고는 빈곤층 노인에게만 제한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질적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급여자격이 주어지며, 소득기준 등과는 무관하게 등급평가에 의한 진단적 기준에 의한 욕구에 따라 복지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급여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 전국평균가구소득의 150%로 높게 책정되어 이전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실시하던 소득기준심사(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 등)와는 현격하게 달라진 급여대상층을 구성하게 된다. 실제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의 실행에 있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에서 경증(등급외 A, B) 판정이라는 진단적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이 1,899천원 이하, 2인 가구는 3,545천원 이하, 4인 가구는 5,867천원 이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한 독거노인, 중산층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노인돌보미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이렇게 급여대상으로 중산층을 포괄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는 노인돌보미바우처가 최초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예산 범위 내인 1만여 명 이내⁸⁾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표 2> 노인복지사업의 대상과 자격기준

사업명	수혜자				비고
	연령기준	재산기준	진단기준	기타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없음	요양보호 등급판정 1-3등급자		제도시행 2008. 7. 1.
노인복지시설 (의료)	65세 이상	기초 수급권자	노인성질환 등으로요양 을 필 요로 하는 자		지방이양 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 (방문요양/주간· 단기보호/ 방문목욕)	65세 이상	없음	장기요양급 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자		지방이양 사업
치매상담센터	60세 이상	없음		치매노인과 그 가족	
치매조기검진 사업	60세 이상	없음 (저소득층에 우선권)		60세 이상 모든 노인	
노인 건강진단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방이양 사업
노인안검진중 개안수술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득 보 장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일자리사업	65세 이상			신청	

8) 2009년 예산(국비) 199억원(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서비스 대상 10.140명

사업명	수혜자				비고		
	연령기준	재산기준	진단기준	기타 자격기준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주거)	65세 이상	기초 수급권자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이하 가구노인			지방이양 사업	
사회서비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65세 이상	없음	없음	독거노인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65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기요양등 급외 A, B의 노인	본인부담료		
	노인여가복지 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없음	없음		지방이양 사업	
	결식우려노인무 료급식지원(경로 식당무료급식, 재가노인식사배달)	60세 이상	기초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없음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재가식사 배달의 경우 차상위 이상 노인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음		지방이양 사업
	경로우대제 (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	없음	없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수정

대단히 제한적인 노인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바우처서비스를 통해 제도적으로는 수혜대상의 보편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노인 서비스 이용자층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용자의 성격 역시 두 제도를 통해 중산층 노인들이 포괄되면서 판이하게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일명 ‘돌봄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of care)라고 개념화되는, 시장기제를 도입한 돌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변화한 돌봄서비스 제도화 안에서 노인의 권리에 어찌

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 노인돌봄의 제도화와 노인 권리의 성격 변화

1) 노인돌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care for the elderly)의 변화

노인돌봄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란 노인에 대한 돌봄(care)활동을 정부가 주체가 되어 법과 제도를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적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노인돌봄이 사회적 활동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는 첫째, 사회서비스 보장의 주체 둘째, 비용부담의 방식과 수준 셋째, 보장대상의 범위와 보장수준 넷째, 사회서비스 공급가격 다섯째, 서비스 공급체계 및 공급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노대명, 2009). 따라서 노인 돌봄의 제도화 성격 변화를 살펴볼 때 이러한 다섯 가지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노인돌봄을 수행해온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돌봄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노인복지 초기 단계에서 노인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었고 ‘무의탁노인’으로 분류되는 일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생활시설에서 노인돌봄서비스와 주거서비스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왔다. 노인돌봄에서 재가서비스를 본격화한 제도는 1990년대 중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노인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복지관이나 여타 이용시설들을 통해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돌봄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이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바우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정

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의 성격에 의해 제도의 특성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첫째,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둘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셋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으로 제한되었던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재정지원방식을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이용자 역시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을 지불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에 의해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를 낳게 하여 고용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이루는 사회투자가 된다는 것이다(김원중, 2008:96-97).

이러한 사회서비스 시장화⁹⁾ 전략은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사회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거의 도맡아온 지역 사회 비영리민간기관을 출발선상에서의 공급단위로 고려하되 전적으로 일임하지는 않고, 다른 영리, 비영리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의 기초가 되는 '구매력'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지원되었다. 이 때 서비스 이용자의 구매력을 보장해주는 정책수단이 '바우처'이다. 정부의 바우처 지원금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구매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구매력, 곧 선택을 놓고 다양한 제공기관들이 경쟁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쟁이 서비스의 효율화, 다시 말해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일 것이라는 것이 시장화 전략의 논리가 된다.

9) 당시 사회서비스 전략을 일컫는 말로 사회서비스 '민영화(privatization)' 사회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 사회서비스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는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민간에 의해 수행(혹은 대행)되던 서비스 생산과 전달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다양한 제공기관들에게 서비스 상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정부는 수요자에게 구매력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시장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시장화'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서비스의 '상업화'는 시장화 전략에서 구성부분으로 포괄된다고 하겠다.

<표 3> 노인돌봄 제도화 변화내용 비교

구분	초기	1990년대	새로운 노인돌봄 제도화
제도	무료노인생활시설	가정봉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장주체	정부	정부	정부
비용부담	정부+후원금	정부+후원금	정부+이용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인	65세 이상 노인
공급가격	무료	무료	본인부담금 있음
공급자	노인생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영리/비영리/개인사업자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돌봄서비스 제도화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보장주체인 정부의 재정적 책임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비영리민간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정부는 기관에 대해 운영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장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곤 했다.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공급자 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책임을 질 따름이었다. 그러나 수요자 지원방식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정부의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강제하였다. 새로운 노인돌봄제도 안에서 공급기관은 서비스 공급단위별로 재정을 지원받기에 서비스 재정은 대부분 공적 재원으로 충당되어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더 커졌다. 둘째, 서비스 보장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전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변화한 돌봄제도 안에서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셋째, 대상의 확대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자부담이 신설되었다. 이전에 빈곤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나(무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자동적으로 획득) 새로운 돌봄제도는 돌봄서비스를 받기위한 별도의 적격심사체계를 갖추고 수급자격을 부여하며 본인부담금을 신설하였다. 넷째, 비영리민간기관에 국한되던 공급자 층을 영리법인과 개인사업

자에게까지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공급에서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2) 노인돌봄 제도화의 재해석

앞에서 설명한 노인돌봄 제도화의 변화는 통상 ‘사회서비스 시장화’ ‘돌봄의 상업화’ 등의 개념으로 일컬어지곤 한다. 재정방식과 공급방식에 의해 제도화를 특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혜택을 받는 대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며 욕구 충족을 통해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의 실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변화의 중심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이다.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족받을 수 있는 권리의 차원에서 노인돌봄 제도화의 변화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 권리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돌봄제도화를 관계적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계적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변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돌봄서비스의 각 행위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규칙과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용자 권리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가 조망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사회서비스가 가진 관계재로서의 특성이 관계적 차원의 분석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든다. 사회서비스는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신뢰와 권력의 관계를 수반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Bahle, 2003).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는 경제학에서 관계재(relational good)로 규정되기도 한다(Ben-Ner and Gui, 2003, Kendell et al, 2003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회서비스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각 행위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돌봄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 서비스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돌봄은 사적 공간인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Standing, 2001). 돌봄

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맥락이 달라지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일어나고 사회서비스는 발전하게 된 것이다. 가족은 호혜적 연대와 도덕적 의무를, 국가는 위계와 공식적 권리를 영리부문은 이윤추구와 시장가격을, 비영리는 가치 중심의 자원주의라는 상이한 규정을 가진다(Bahle, 2003). 그런데 사회서비스는 이 네 부문이 중첩되어 제도화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계적 차원에서의 규칙과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수준과 특성을 해석하게 해준다.

관계적 차원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맺는 관계가 있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제공기관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인력인 서비스 전달자를 포함한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둘을 나누지 않은 것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서비스 전달자가 기관을 대행 혹은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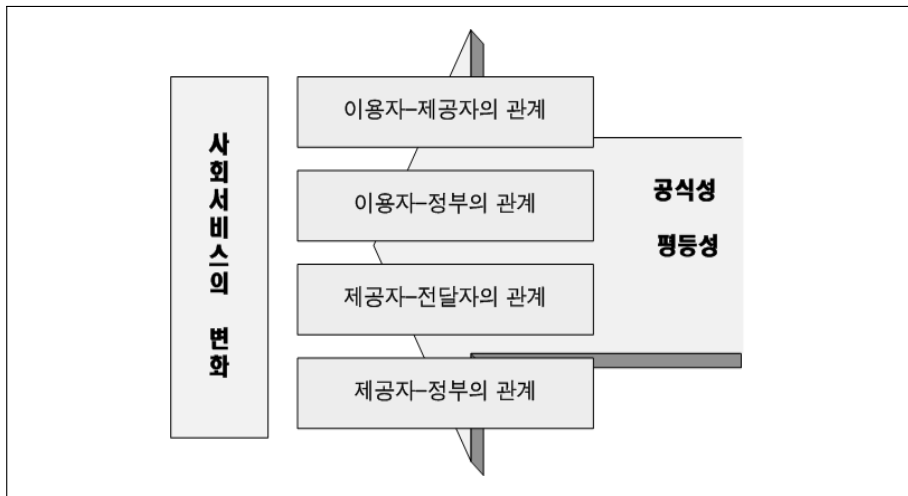
두 번째로 서비스 이용자가 정부와 맺는 관계가 있다. 이 관계의 차원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정부가 가지는 책임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세 번째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자의 관계가 있다. 이는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관계의 규칙 변화를 보는 것이다. 돌봄서비스가 노동의 형태를 표방하는지, 곧 노동에 입각한 보상체계를 가지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에 대한 상징적 보수(symbolic payment)(Ungerson, 2000)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제공자와 전달자가 맺는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게 해준다.

네 번째로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가 맺는 관계가 있다. 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부문과 정부가 맺는 관계의 성격은 직접적 재정지원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 규제 정도에 대한 여부를 통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관계가 종속적인지, 동반자적 관계로서 평등하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 관계적 차원에 대한 분석의 기준은 관계에서의 공식성과 평등성에 있다. 관계의 공식성은 서비스 제공의 근거와 원천을 드러내며 서비스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판별하게 해준다. 관계가 비공식적일수록 서비스 제공

은 임의적이고 구조적인 지속가능성이 약하다. 공식적인 관계일수록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규칙이 드러나며 그것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 평등성은 두 주체의 권력관계를 표시한다. 두 주체의 관계에서 권력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작용하는지, 다시 말해 수직적 위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권력이 쌍방향으로 작동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틀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2> 관계적 차원의 분석틀

3) 돌봄서비스에서 노인 권리의 성격 분석

이제까지 한국에서 노인돌봄제도의 변화와 특성, 그리고 그 안에서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의 권리를 분석하기 위한 관계적 차원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본 글에서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네 가지 관계 중에서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의 권리라는 성격에 착목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와 정부와의 관계 두 가지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노인 서비스이용자와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관계 변화

한국의 사회서비스, 특히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아동 양육과 더불어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 아래 있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돌봄은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왔다(조형·강인순·김진주, 2003:104). 국가는 보호할 가족이 없는 서비스 대상자에 한하여 시설에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한정적으로 제공해왔다. 이러한 시설보호서비스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의해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생산, 공급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 시설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에 그쳤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나 감독,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과 통합적인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은 거의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봉주·김용득·김문근, 2007; 이현주 외, 2003).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자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에서 권한은 제공기관에 있었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을 정하고 역량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비스 공급의 자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기관 스스로 동원한 민간자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선정은 상당 부분은 기관의 재량적인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에 의한 서비스 표준화 지침 등의 부재와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은 서비스 대상 선정과 서비스 제공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가지기 어려웠다(이가옥, 1997).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자율적(혹은 자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선별하였으며 서비스 양에 대한 결정도 기관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김용득, 2008). 제공기관의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이용자는 수동적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위치해왔다.

저소득층 노인과 돌봄종사자의 관계를 연구한 최희경(2008)의 연구는 노인과 종사자의 관계에서 ‘유사가족’의 성격을 발견하고 있다. 노인과 종사자가 서로를 자녀와 부모로 규정하고 가족과 같은 돌봄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이상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가족돌봄이 호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자기착취의 위험을 가진다고 경고한 Standing(2001)의 지적을 상기해볼 때 공식성과 평등성 면에서는 낮은 차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사정이나 자원봉사자의 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 계획이 변경되고 중단되었던 사실은 서비스 제공에서 낮은 지속가능성

과 안정성을 드러내며 공급자지원방식에서 형성되는 제공자와 이용자 관계의 위계적 성격을 보여준다(양난주, 2009).

2007년부터 실시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통해 서비스 구매력을 보유하게 된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서비스 구매 계약을 맺음으로써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 받는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며 서비스에 불만을 가질 경우 돌보미 교체를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서비스 전달자도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이 표명되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공자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게 된 것은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중심의 변동을 보여준다(양난주, 2009).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과 돌보미의 책임과 의무로 구성되는 계약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¹⁰⁾.

계약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합리화하였다. 바우처 서비스에 도입된 적격성 심사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을 도입하여 공급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정해지고 이에 의해 복지제공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되었다. 더불어 욕구를 측정하고 적격성을 심사하는 주체로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점도 공식성이 강화된 지점이다. 제공기관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서비스 자격을 획득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관계의 형식과 내용에서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2) 노인서비스이용자와 정부의 관계 변화

200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10)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상호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동의서에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의서는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의 서명을 요청한다.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서비스 신청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서비스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진입경로가 개별적인 민간기관 별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법률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왔다(김용득, 2008: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판정받은 이 적격성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격을 획득해왔다. 그러나 그 외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개별 민간 기관에 의해 서비스의 적격성을 판정받고 대상으로 결정되어왔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와 정부의 관계가 그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 간접적이었으며 낮은 수준의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요측면 재정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이 전환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적격성을 판정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과 판정, 수급자격 결정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이제 서비스 이용자와 정부의 관계는 ‘절차적이고’ ‘제도적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노인돌봄미바우처사업의 경우, ‘제도적으로’ 시·군·구 노인복지과는 사업 시행의 일선집행의 공적 책임을 가지며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어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판정을 내리고 수급자격을 통보한 주체가 되는 정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권리행사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과 대상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중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용자와 정부의 관계는 명목적인 권리와 책임의 법률적 명시에서 일보 진전하여 민간제공기관을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권리와 책임의 공식적인 관계로 변화하였다.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용자와

정부의 관계의 평등성에서의 진전을 보여준다.

(3) 계약에 기초한 돌봄관계의 공식화와 현대화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사회 서비스 공급에서의 비영리 민간기관이 생산과 공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둘째,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급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잔여적으로 제공되어왔다. 셋째, 정부는 비영리민간기관에 대한 부분적인 재정지원에 그 역할을 한정하고 있었다. 넷째, 사회서비스 욕구파악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은 모두 비영리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어온 한국의 사회서비스에서 각 행위자들이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가 불명료하게 정립된 채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요소가 혼재된 상태로 관계의 전근대성이 온존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민감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노정해왔다.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들은 수동적인 서비스의 대상, 보호와 조치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파생적으로 보장되던 노인돌봄서비스의 권리는 새로운 돌봄제도화 안에서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한 노인의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기 위하여 관계적 차원에서 관계와 그 안에서의 권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돌봄제도화에서 이용자로서 노인의 권리

관계의 차원	관계의 변화	권리의 성격
이용자-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구매계약에 기초한 직접적 관계 정립 - 제공자의 주도성 약화, 이용자 중심성 강화 -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와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이 제도화 	계약적 권리
이용자-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서비스 적격성 심사와 대상자 판정을 통해 직접적 관계 정립 - 서비스 이용의 최종책임자로서 정부 역할 - 서비스 권리의 법률적 보장 	돌봄서비스 권리의 법적 보장

이러한 변화는 잔여적이고 사적인 선물관계(gift relationship)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오던 것과 노인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질적 차별성을 가진다. 자선과 시혜라는 성격의 선물관계로 포장된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권리에 기초한 요구와 반응을 보이지 못한 채 도덕적 위계 관계를 수용해야 하는 수동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머물게 된다. Standing(2001: 25)은 서비스 대상에 대한 강요를 선물관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즉 자선과 시혜,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제공되던 돌봄서비스에서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성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제도화, 돌봄의 시장화를 통해 이러한 비공식적인 관계의 공식화, 최근대적인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권리와 책임, 의무의 관계로의 현대화(modernization)가 이루어졌다. 돌봄제도화 안에서 노인의 권리는 계약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에 기초한 평등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돌봄제도 안에서 노인은 돌봄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가지게 되었다.

5. 마치며

이제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서비스 수혜자로서 노인의 권리는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그 기초가 취약했음을 피력했다. 게다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기관에 대한 부분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그 책임을 다하던 공급자재정지원방식 하의 정부에서 공급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관리나 수혜자의 만족도를 책임지지 않음으로 권리의 기초가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공급측면에서 시장기제의 도입,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진 노인돌봄의 제도화에서 계약관계에 기초한 노인의 권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반공식적이고 온

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지형이 공식적이고 근대적인 관계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사회권으로서 노인의 돌봄서비스 권리가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과거 전통적인 노인복지서비스와 비교하여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계약의 권리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충분조건이 될지는 미지수다. 자유주의적 계약의 권리가 사회권 실현에 미흡한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권리의 주체가 가지는 능력(capacity)의 불충분성이다. 전문가주의적 사고가 보호의 대상으로 노인을 간주하여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노인의 인권 실현에 문제를 초래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노인이라는 서비스 이용자를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소비자와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 자신의 구매력에 기초하여 선택과 구매를 자유롭게 행하는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달리 돌봄서비스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노인의 재정적 능력은 그 욕구와 비례하지만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제도화 안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서비스 이용료 차이를 둘 경우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돌봄 욕구와 이용자의 재정적 능력을 감안하여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재정적 능력 외에 서비스 선택의 능력도 문제가 된다. 공급기관의 수를 늘리고 구매력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면 공급기관들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둘러싸고 경쟁하여 서비스 질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제도의 논리는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되기 어렵다. 다양한 공급기관들을 비교하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기관과 구매계약을 스스로 체결하기에 노인이용자가 갖는 정보력의 한계와 경험해보지 않은채 선택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재화의 특성은 작지 않은 걸림돌이다. 게다가 공급기관들이 이용자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반드시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인이용자의 선택의 권리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혼자 서비스 선택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공정하고 자세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는 서비스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계약의 일 주체로서 공급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급기관들은 명백하게 공적으로 조성된 재원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경제적 동기만으로 서비스의 질과 계약내용의 이행이 준수된다거나 서비스이용자의 ‘소비자 파워’로 견제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경쟁이 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향해서만 진행되리라는 법은 없다.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노인 이용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공급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이용자 권리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다.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제도와는 상이한 범위와 규칙을 가진 돌봄서비스의 제도화를 이루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도입된 시장기제의 효율성 혹은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글에서는 노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관계의 공식성과 평등성이라는 면에서 노인 이용자의 권리성이 증진되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계약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권리가 사회권 실현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인 인권으로서의 사회권이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혜규(2007). “사회서비스 확대전략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35.
- 김미숙, 변용찬, 강혜규, 박태영, 이상일, 임유경 (2003)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비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50:209-233.

- 김용득(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시장기제와 반시장기제의 통합-.” 『사회복지연구』, 36:5-28.
- 김용득(2009).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2년의 평가와 과제-선택, 공적 책임, 일자리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방향』사회서비스 바우처 시행 2주년 기념 심포지움자료집, 5-46.
- 김원중(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및 전북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9-125.
- 노대명(2009)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화의 방향과 조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의 방향과 과제”. 2009. 11. 17.
- 조형·강인순·정진주(2003). 『여성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한울아카데미.
- 양난주(2009) 『바우처 정책집행연구: 노인돌보미바우처 사례』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가옥(1997)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재가노인복지사업』제3장.
- 이봉주, 김용득, 김문근(2007).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쟁점과 대안』. EM커뮤니티.
- 이혜경(1998).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징.” 『동서연구』, 10(2) 41-75.
- 최 현(2008) 『인권』, 책세상
- 프레드먼, 샌드라(2009) Human Rights Transformed,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 Bahle, T.(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3, no. 1, pp. 5-20.
- Bettio, F. and Plantenga, J.(2004). Comparing Care Regimes in Europe. *Feminist Economics*. vol. 10, no. 1, pp. 85-113.
- Le Grand, Julian.(2003) *Motivation, Agency, and Public Policy: of Knaves, Pawns and Queens*. Oxford University Press.
- Le Grand, Julian.(2007) *The Other Invisible han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ndall, J. T Matosevic, J Foeder, M Knapp, B Hardy, P Ware.(2003) The Motivation of Domiciliary Providers in England: New Concepts, New Finding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2, no. 4, pp. 489-511.
- Standing, G.(2001) Care Work: Overcoming Insecurity and Neglect. In Daly, M.(ed.), *Care Work: the Quest for Security*. ILO.
- Ungerson, C.(2000). The Commodification of Care : Current Policies and Future

Politics. in Hopson, B.(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New York: Routledge. pp.173-200.

노인인권정책 수립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 : 정책가적 관점에서

신 영 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모두들 노년에 도달하기를 바라면서도 일단 도달하고 나면 비난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되고 이치에 어긋나는가!”

(Cicero, BC 104-43)

1. 노인인권과 노인인권정책

A. 노인인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노령화와 이와 관련한 사회, 경제, 정책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의 속도, 그간 노인의 주요 부양자였던 가족의 전통적인 역할 약화, 사회 경제적 부담의 증가, 노인학대와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고정관념의 확대 등과 관련이 있다.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그 내용이 노인에게 우호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의 흐름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타깃으로 하는 산업에 대한 관심이다. 즉, 최근 노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는 노인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 증진보다는 어떻게 하면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것인지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구매력을 가진 노인들에게 집중되며, 반대로 사회적 부담에 대한 논의에서조차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 노인에 대한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다. 사회 부담이라는 관점의 접근은 흔히 노인의 인권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는 결국 노령화를 전체 사회에 대해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암묵적인 견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논의 속에서 노인은 ‘대상화’되고 더 나아가 ‘문제아’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은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령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노인 정책은 충분히 인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까? 더욱이 노령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노인관련정책이 노인의 인권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보호 증진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B. 노인인권정책

노인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1982년 비엔나 회의이다. 선진국의 고령화 문제를 다루었던 이 회의에서는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n Action on Aging)을 채택한다. 1991년 유엔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였고, 2002년 마드리드 회의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로서의 고령화를 다루고 <고령화에 대한 마드리드 정치 선언과 행동계획>(Madrid Political Declaration an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인인권은 노인들의 인권이다. 하지만 노인인권 역시 일반적인 인권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노인에 관한 명문화된 권리는 존엄(dignity)와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을 더욱 강조한다.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노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기구의 많은 규정들이 동등한 기회와 노인의 완전한 참여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은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독립 -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노인에게 적합한 생활 조건의 확보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자아실현 -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의 제공
참여 - 정치적, 사회적 참여조건의 확보	존엄성 - 차별 없는 존엄과 안전 - 신체적 정신적 학대 금지
돌봄 - 보호받고 재활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	

한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ICESCR Committee)는 <일반 논평 6>에서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일반 논평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했다.

- 1) 수급 자격 확인 절차에서 흔히 제외되는 여성 노인에게 특별히 주의하여 노령연금(old-age pension)을 지불할 것
- 2) 고용과 취업에서 연령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 3) 의무 노령보험(compulsory old-age insurance)의 보편적 제도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 4) 노인이 있는 모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를 수립할 것
- 5) 가정에 머물고자 하는 독거노인 혹은 노령부부에 대해서 노령연금(elderly pension)을 제공할 것

현재 국내 노인관련 주요정책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ICESCR Committee)가 <일반 논평 6>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일부 영역(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형식적인 틀은 대체로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문제는 늘 그 보장 수준과 질이다.

<표 2> 한국 노인관련 주요 정책

안정적인 노후소득	고령자 인력활용
- 퇴직/국민/경로연금	-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지원
- 개인연금활성화	-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노후건강관리/요양	- 노인적합형 일자리창출
- 장기요양보험	- 고령근무자 직무수행환경개선
- 치매관리사업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의 개선
활동적인 노후생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 저소득고령자배려 주택공급	고령사회금융기반조성
- 고령자배려 교통체계	고령친화산업육성
- 고령자배려 주거환경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 노인복지정책이 그 형식적 틀에 비해 보장수준이나 질적인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일반적으로 1) 충분하지 못한 재정, 2) 재정배분 우선순위의 문제, 3) 노인 돌봄 문화(경로효친 등)의 쇠퇴, 4) 가족(주관적, 객관적) 부양부담 증가 등의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보장수준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장애물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 강력한 추진세력의 존재, 2) 효과적인 설득논리, 3) 효과적인 정책수단, 4) 리더십과 집행능력, 5)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사회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가에서는 이 중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노인인권향상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충분한 설득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1) 노인인권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제도 면에서 상당부분 노인복지정책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

2. 노인인권정책 수립과 관련한 질문들

노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물어질 수 있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A.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약한가?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약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주로 신체적인 힘 또는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한다. 노인들이 긴 인생과 작업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능력은 청장년에 비해 월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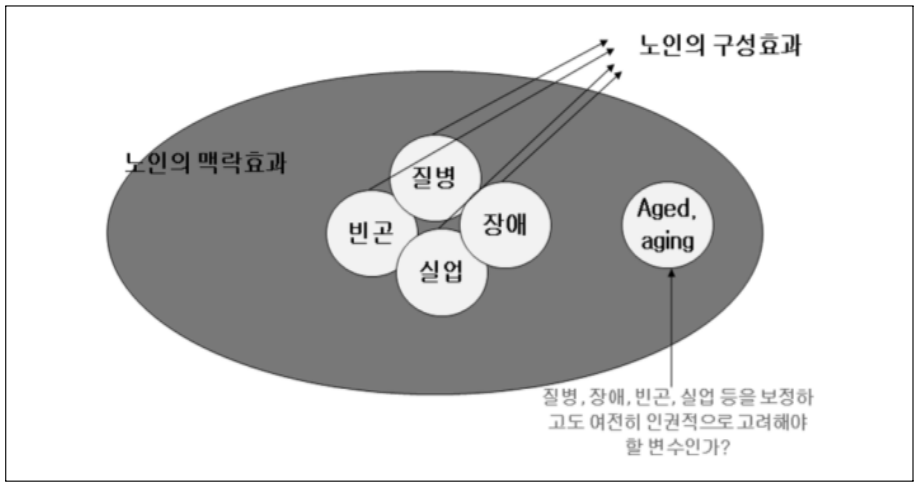
정치적으로는 어떨까? 이미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노인들은 투표를 통해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유권자 중 50세 이상 비율은 38%에 달하며, 2020년에는 무려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 선거관리위원회 2004). 또한 노인들은 가장 적극적인 투표참여자이기도 하다. 이는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와 같은 정치적 소수자가 가지는 정치적 파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인 인권을 인권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할까? 이는 노인의 정치적 때문은 아닐까?

B. 노인인권은 특별히 다루어야 할 인권인가?

노인은 아프고 장애를 가지며 사망할 확률이 청장년에 비해 높다. 더욱이 복합적인 질병과 장애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질병과 장애에는 인지기능 역시 포함된다. 또한 노인은 직업을 갖기 어렵고 충분한 사회보장이 제공 되지 않을 경우 가난할 확률도 높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인권, 빈곤층의 인권과 같이 개별 요소와 관련된 인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75년 12월9일 유엔 총회 결의문 3447로 채택한 <장애인 인권선언>의 내용은 유엔이 표명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과 내용면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 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12월9일 유엔 총회 결의문 3447)

- 차별금지	- 가족과 함께 생활, 모든 사회적 창의적 활동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
- 존엄	- 차별, 모욕 등 모든 착취와 규제, 처우로부터의 보호
-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인격, 재산보호를 위한 도움
- 자립	- 관련 권리에 대한 유효한 협의권리
- 사회통합 촉진 서비스 지원	-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지
- 경제적, 사회적 보장	
- 특별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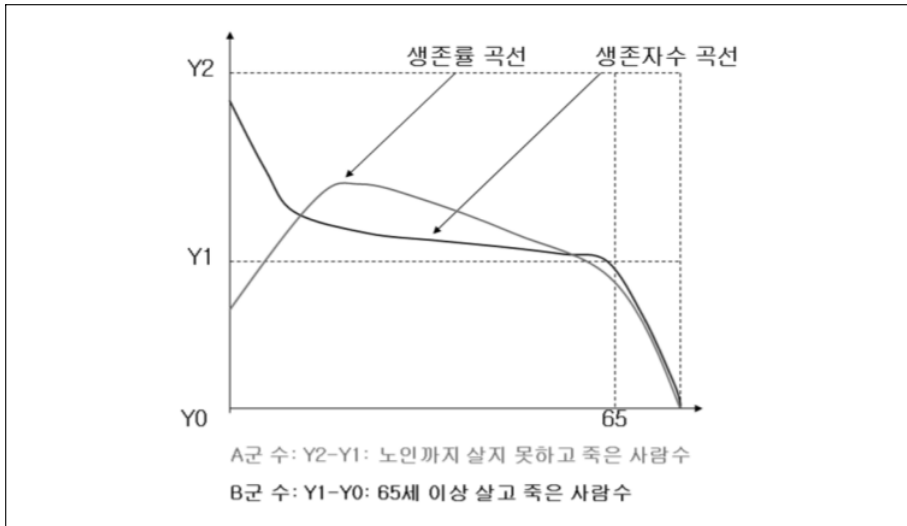
<그림 1> 노인관련 구성효과와 맥락효과

노인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는 노령(aged), 노령화(aging)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특정한 구성효과를 가지는 것일까? 또 질병, 빈곤, 장애, 실업과 같은 요인들은 각각의 구성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들은 함께 모여 (노령, 노령화까지를 포함하여) 구성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노인만의 특별한 맥락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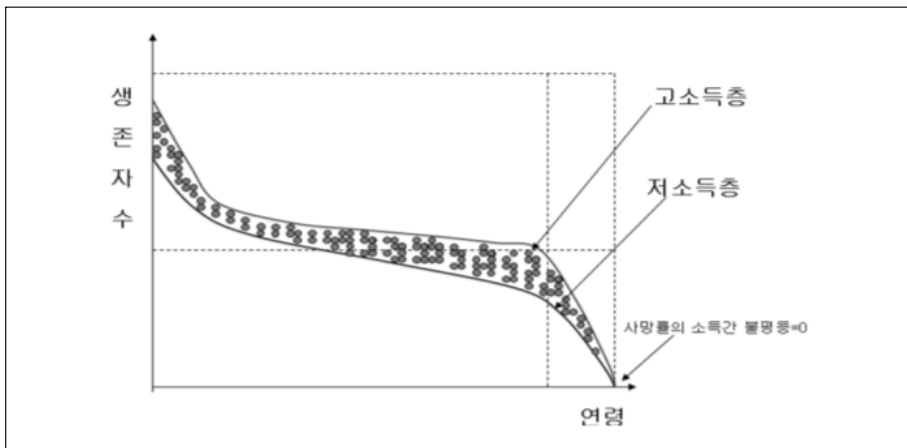
C. 노인의 인권이 다른 이들의 인권보다 우선적인가?

인권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할까? 노인인권은 다른 이들의 인권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인가?

기아, 질병, 사고, 전쟁 등 많은 이유로 많은 이들이 노인이 되지 못하고 죽는다. 오래 생존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노인이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비인권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더 높다. 그렇다면 더 절박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제한된 인력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은 아닐까?



<그림 2> 생존률 곡선과 생존자수 곡선



<그림 3> 소득수준에 따른 연령별 생존자수 곡선

더욱이 전 생애를 걸쳐 볼 때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일찍 죽는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은 낮은 사망률은 노인에서 가장 높고 젊은 군에서 낮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세대간 불평등보다는 소득수준간 불평등이 더 큼을 보여준다. 더욱이 노인군에서 소득수준간 불평등은 오히려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동일해 진다(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사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에 관심을 집중하기 보다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에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존자집단이자 정치적 다수 집단이며 경제적으로는 소비집단인 노인집단의 권력 때문은 아닐까?

D. 구체적인 노인들의 이상향은 존재하는가?

“최소의 사회 단위는 사실상 가족과 동의어인 가정입니다....여자는 자라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가정에서 함께 살지만, 아들과 손자들은 그들의 가장 ‘나이 많은 남자 친척’의 감독(그가 노망들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인계합니다)을 받으며 집에 있습니다. ... 각 가정은 가장 나이 많은 남자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자식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위의 글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과연 오늘 날의 우리는 토마스 모어가 그린 세계를 이상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각 시대마다 ‘이상향’을 그리는 작업이 있어 왔고 당연히 그 시대의 이상향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내포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상향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상향은 젊은이들에게, 여성에게(특히 며느리에게 때로는 사위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일까?

얼마 전 한 공중파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의 예를 들어보자, 그 드라마에는 할아버지와 효성이 지극한 아들 내외, 네 명의 손자들, 그리고 드라마의 끝부분에서는 세 명의 손주 며느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을 배경으

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정하고 (때로 추인하며), 가족간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가족들은 이를 존중하고 그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노인들이 꿈꿀 수 있는 이상향의 한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한적이거나 일정한 수준 노인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1) 상당한 수준의 안정된 소득, 2) 별도의 주거공간의 존재, 3) 건강한 노년, 4) 아침마다 출근해 어울릴 수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공간의 존재, 5) 상담자, 갈등 조정자, 양육보조 등 가족 내에서 일정한 역할의 수행 6) 어느 정도 절제가 이루어진 유연한 노인의 권위 행사(아침마다 밖으로 나가주는 일, 가끔 결정을 양보하는 일)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7) 상당한 희생, 특히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한 효심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8) 또한 대가족 제도로 인한 구성원 모두의 개인적인 삶의 상당한 희생 또한 필요하다. 1)에서 4)까지 조건은 사회제도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고, 5), 6)과 같이 일정한 세대간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7), 8)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1)에서 8)까지 조건은 단독적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모두 충족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권친화적 노인의 삶의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특별히 노인들의 자식과 가족에 대한 애정, 함께 살고 싶어하는 바램 등을 고려할 때 노인들의 소득, 주거, 의료, 이동, 여가,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만으로 충분할까? 이러한 조건이 젊은 세대의 인권과 충돌하지 않는 모형이 과연 존재할까?

E. 그 밖의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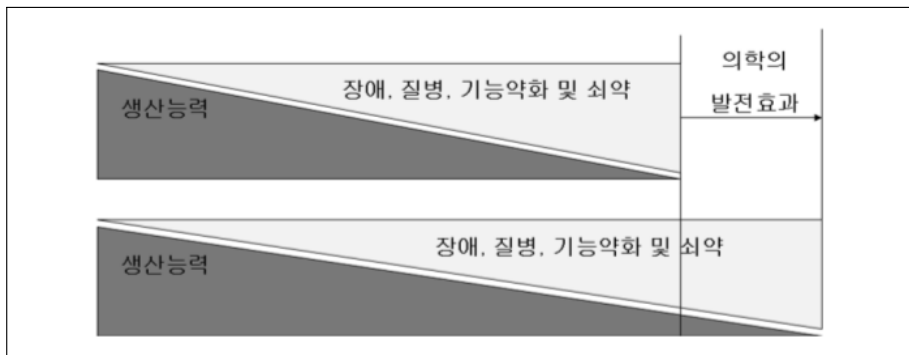
인권친화적인 노인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물어질 수 있는 질문들은 그 밖에도 많이 있다. 이들을 간단히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정책’은 근본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죽음이 삶의 결손이 아니라 축적이듯” 노년 역시 삶의 축적이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정책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노인정책은 출생부터(어떤 의미에서 출생 전부터)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과학기술의 발달은 노인문제를 해결할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하지만 ‘불로영생’의 약을 개발하지 않는 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 현대의 과학기술은 노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유발, 악화시켰던 주범은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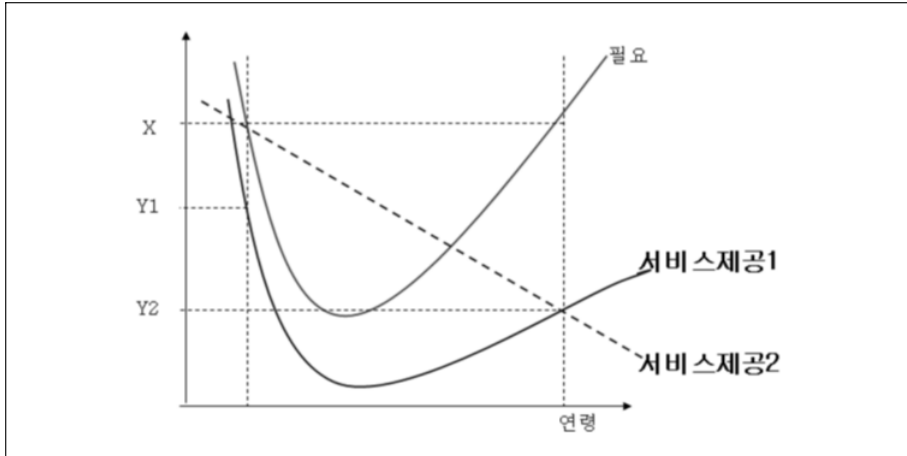


<그림 4> 의학의 발전과 노령화

필요기반인가 지원의 절대규모인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용이 다른 연령집단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보다 높은가? 하는 질문은 접어두고라도 우리 사회

가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과 내용은 다른 세대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부족한가?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절대규모는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으나 필요대비로 볼 때 낮은 것인가? 아니면 절대 규모와 상대적 규모 모두가 작은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림 5> 연령별 서비스 필요와 제공

‘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식 설득논리는 인권적인가?

노인인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동원되는 논리가 “너도 늙는다”식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인권적인가? 나에게 닥쳐올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일(예를 들어 인종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낮추어도 되는가?

노인의 노련함이 젊은이를 이길 수 있을까?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중에 하나는 노인의 노련함이 젊은이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는 일견 타당하고, 이러한 접근은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주된 논리로 삼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의 기반은 여전히 생산담론이며,

이러한 생산담론 하에서 젊은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노인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²⁾

가족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울 것인가?

정책적 측면에서 가족이 부담을 나누어주지 않으면 너무 많은 국가재원을 필요로 하여 어떠한 정책의 실현도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바람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한편 가족입장에서 부양부담은 노인-젊은 세대간의 호의적 관계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도 부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절충과 타협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논리로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그러한 논리와 타협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주의를 강화할 것인가? 연대를 강화할 것인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개인주의의 강화인데 개인주의의 강화는 초기에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람들은 개인차원의 대처보다는 집단적 대처가 개인적으로도 더 이익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국가기능의 확대와 이에 필요한 지원(재원 각출)에 동의하는 방식의 경로를 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로 효친, 사회적 연대 등의 강조를 통한 연대적 가치의 함양과 이에 기반한 제도의 확충을 통해 인권친화적 노인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경로가 우리 사회에 더 적절한 것인가?

2) 이와 관련한 논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황혼의 반란>을 연상시킨다. 안락사를 위해 <휴식, 평화, 안락센터(Centre de Dentente Paix et Douceur)>로 가는 버스에서 탈출한 노인들은 <흰 여우들>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오랜 경험을 동원하여 정부군과 맞서지만 끝내 소탕되고 만다(베르나르 베르베르, 나무, 이세욱 역, 열린책들, 2003).

3. 소결 :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현재 한국사회를 인권친화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그들의 혜택이 적은 것은 그들이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편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는 공리주의적 담론이다. 이러한 ‘정글담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권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인권친화적 노인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물어질 수 있는 많은 질문을 나열했다. 결론은 ‘공리주의에 입각한 생산담론의 극복’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의 나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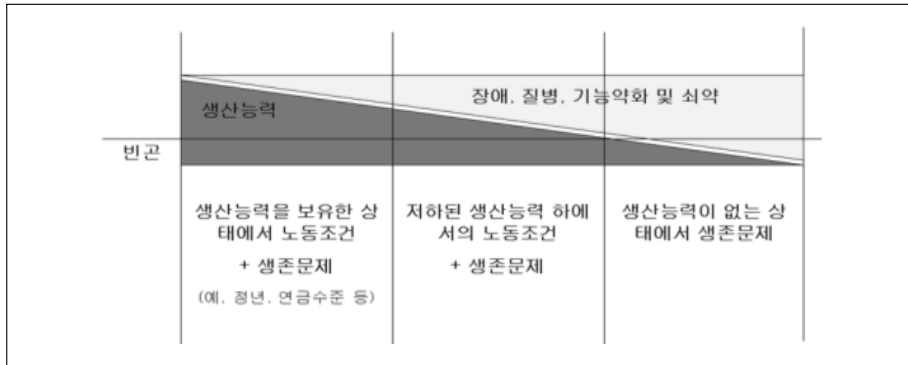
첫째, 노인의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어떤 노인의 인권인가?”하는 질문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대상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력에 기초한 분류방식이 적합한가?³⁾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노인은 나이에 따라 다른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 따라 주된 문제와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은 약하다”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기술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학대받는 노인, 복합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과 같이 심각한 인권문제에 봉착해 있는 노인들이 존재한다.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 대

3) 생산력에 기초한 분류는 또다른 인권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24일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자살사망자 수는 4천365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에는 4천99명, 2005년에는 4천346명, 2006년에는 4천6명, 2007년에는 4천351명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80대 이상의 자살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112.9명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으며, 20대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2009년 9월24일자).

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림 6> 생산력에 기초한 노년기구분 및 관련 사회문제

둘째, 노인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⁵⁾

셋째, 인권친화적 노인정책은 다수결에 입각한 대의정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인들이 차지하는 인구구성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젊은 층의 규모가 노인 층에 비해 절대 다수를 선점하는 상황에서 다수결에 입각한 대의정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인지기능에 장애를 가지는 노인(치매 등으로 사실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된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제도적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상태에서 노인인권 정책은 다수결에 입각한 대의정치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넷째, 인권이 가지는 ‘선언주의적’ 특성을 고집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나 인간복리를 폭넓게 규정하고 개인을 집단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권을 인정

5) 한편, 노인들이 상당한 사회, 정치,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일정 정도 자신들의 인권들을 스스로 지켜냄으로써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며, 효용의 극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를 지향하는 인권담론 등의 개발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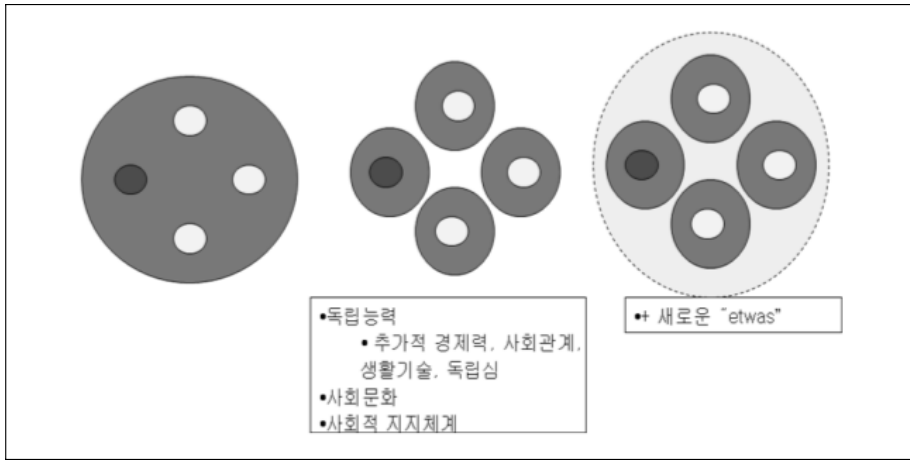
다섯째, 노인인권정책은 직접적인 노인대상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젊은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이 노인들의 복리 증진에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고령화 정책과 노인정책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목표와 방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낙인을 경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노인에 대한 가족들의 자발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

여덟째, 한편 노인에게 소득, 주거, 고용, 여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지 않는 한 완전할 수 없다. 반면에 이러한 노인들의 바램은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양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사회경제적 독립능력, 사회문화,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의 부담과 ‘피부양’의 기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효 또는 그 무엇(etwas)’ 개념의 개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6) Freedon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정공리주의’가 그러한 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노인정책의 기획, 시행은 많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질문에 따라서는 그 윤리적 기반의 차이로 영원히 그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윤리적 차이와 무관하게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들 (예를 들어 인권 취약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함께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현실적 작업 또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 인권 논문집

2010년 6월 인쇄

2010년 6월 발행

발행인 : 현 병 철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B/D 11층(을지로1가 16번지)

전화 / 02) 2125-9753

FAX / 02) 2125-9733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주)늘품플러스

전화 / 070-7090-1177

ISBN 978-89-6114-204-5 93330

노인 인권 논문집

